



2022.8.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NABO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B U D G E T O F F I C 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중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심성택 예산분석관
김소연 예산분석관
송은혜 예산분석관

지 원 | 김자영 행정실무원
주석진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02) 6788-3772 | a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2022.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8. 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2021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총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지원,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570.5조원, 총지출은 601.0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개선되어 90.6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2021년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20.6조원이 증가한 967.2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소비활성화지원 사업, 소상공인지원 사업, 주거안정지원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②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④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⑤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에 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의 상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I. 결산 개요

- 1. 현 황 5
-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8

[대통령경호처]

I. 결산 개요

- 1. 현 황 11
-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5
-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6

II. 개별 사업 분석

- 1. 타 부처 예산으로 집행되는 국외출장 경비 미편성 필요 17

[국회]

I. 결산 개요

- 1. 현 황 23
-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7
-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8

II. 개별 사업 분석

- 1. 원문DB 구축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9

[국가인권위원회]

I. 결산 개요

- 1. 현 황 37
-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41
-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42

II. 개별 사업 분석

- 1.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조직·기능 정비방안 마련 필요 43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55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62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63

II. 주요 현안 분석

1.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의 문제점	65
1-1. 대체역 소집적체 문제 해소 필요	67
1-2. 대체복무시설 개소 지연 문제 완화 필요	71
1-3. 장기적 관점에서 대체복무요원 정원의 적정규모 산정 필요	76
2. 개정된 형사사법제도 관련 예산의 집행 분석	79

III. 개별 사업 분석

1. 타 사업 예산을 활용한 신규 사업 추진 지양 필요	87
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제고 및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	94
3. 국립법무병원 의사 및 간호인력 충원을 제고 필요	105
4.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확대 필요	113



CONTENTS

5.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121
6. 국외여비의 연례적인 목적 외 사용 지양 필요	130
7. 국제마약퇴치 지원 사업 및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차별적 운영 필요	136
8.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1차년도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 필요	140
9. 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수용 미달 해소 필요	144

[법제처]

I. 결산 개요

1. 현 황	151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55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56

II. 개별 사업 분석

1.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의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수행 비율 제고 노력 필요	157
2. 법률안 제출계획 이행을 제고 필요	16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I. 결산 개요

- 1. 현 황 173
- 2.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76

II. 주요 현안 분석

- 1. 채용 지연에 따른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 177

III. 개별 사업 분석

-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구축 관련 타 기관과의 연계 필요 182
- 2. 비목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 문제 185

[감사원]

I. 결산 개요

- 1. 현 황 189
-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93
-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94

II. 주요 현안 분석

- 1. 적극행정 지원 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 195
 - 1-1.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96
 - 1-2. 모범 공직자 등에 대한 적정 수준의 포상 체계 마련 등 필요 202
 - 1-3.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205

[대법원]

I. 결산 개요 211

- 1. 현 황 211
-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17
-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18

II. 개별 사업 분석

- 1. 임차료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연례적 불용 219
-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222
- 3. 등기소 신축 시 관련 법령 등 면밀한 검토 필요 225
- 4. 비목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228
- 5. 예산배정 및 집행관리 노력 필요 230

[헌법재판소]

I. 결산 개요

1. 현 황	235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38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39

II. 개별 사업 분석

1. 성과지표 도전성과 타당성 확보 노력 필요	240
---------------------------------	-----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억 4,300만원이며, 7억 2,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억 2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 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43	243	243	724	702	22	0	97.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21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76억 700만원이며, 이 중 92.2%인 899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76억 5,900만원은 불용하였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1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97,607	97,607	97,607	89,948	0	7,659	92.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자산은 5,152억 4,200만원, 부채는 11억 5,600만원, 순자산은 5,140억 8,6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9억 1,900만원, 일반유형자산 5,084억 7,300만원, 무형자산 57억 3,0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1억 2,1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812억 2,900만원(18.7%) 증가하였다. 이는 공시지가 반영에 따른 토지 재평가 등으로 인한 일반유형자산 822억 3,600만원 증가, 감가상각 등으로 인한 무형자산 7억 1,600만원 감소, 장기임차보증금 상환 및 유동성 대체 등으로 인한 기타비유동자산 8억 2,0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5,000만원, 장기충당부채 11억 7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00만원(0.3%) 증가하였다. 이는 일용직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515,242	434,013	81,229	18.7
Ⅰ. 유동자산	919	388	531	136.9
Ⅱ. 일반유형자산	508,473	426,237	82,236	19.3
Ⅲ. 무형자산	5,730	6,446	△716	△11.1
Ⅳ. 기타비유동자산	121	941	△820	△87.1
부 채	1,156	1,152	4	0.3
Ⅰ. 유동부채	50	53	△3	△5.7
Ⅱ. 장기충당부채	1,107	1,099	8	0.7
순 자 산	514,086	432,861	81,225	18.8
Ⅰ. 기본순자산	323,523	323,523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54,649	32,153	22,496	70.0
Ⅲ. 순자산 조정	245,212	141,491	103,721	73.3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21년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171억 4,400만원(17.0%) 증가한 1,181억 7,700만원으로 프로그램 순원가 1,205억

2,900만원, 비배분수익 23억 5,2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순원가는 전기 대비 184억 3,200만원 증가하였고, 비배분비용은 전기 대비 동일하였으며, 비배분수익은 전기 대비 12억 8,700만원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20,529	102,097	18,432	18.1
가. 프로그램 총원가	120,529	102,097	18,432	18.1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0
Ⅱ. 관리운영비	0	0	0	0.0
Ⅲ. 비배분비용	0	0	0	0.0
Ⅳ. 비배분수익	2,352	1,065	1,287	120.8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18,177	101,033	17,144	17.0
Ⅵ.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18,177	101,033	17,144	17.0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21년도 기말순자산은 5,140억 8,60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812억 2,500만원(18.8%) 증가하였는데, 기초순자산 4,328억 6,100만 원에서 재정운영 결과로 인해 1,181억 7,700만원 감소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으로 인해 956억 8,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조정항목에서 1,037억 2,100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1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432,861	416,400	16,461	4.0
Ⅱ. 재정운영결과	118,177	101,033	17,144	17.0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95,680	104,479	△8,799	△8.4
Ⅳ. 조정항목	103,721	13,015	90,706	696.9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514,086	432,861	81,225	18.8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국정운영관리 사업** 등이 있다.

국정운영관리 사업은 청와대 기념품 단가 조정 등을 반영하여 4억 2,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 등이 있다.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은 노후화 등으로 인한 건물 및 시설 유지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



대통령경호처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000만원이며, 1억 2,1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를 전액 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0	80	80	121	121	0	0	100.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2021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28억 6,200만원이며, 이 중 90.9%인 844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2억 3,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1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92,687	92,687	92,862	84,457	175	8,230	90.9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대통령경호처 자산은 5,717억 2,100만원, 부채는 없으며, 순자산은 5,717억 2,1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400만원, 투자자산 4억 3,300만원, 일반유형자산 5,672억 2,800만원, 무형자산 38억 9,3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95억 6,600만원(11.6%)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유형자산 593억 2,900만원 증가, 무형자산 2억 3,1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571,721	512,155	59,566	11.6
Ⅰ. 유동자산	24	17	7	41.2
Ⅱ. 투자자산	433	433	0	0.0
Ⅲ. 일반유형자산	567,228	507,899	59,329	11.7
Ⅴ.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Ⅵ. 무형자산	3,893	3,662	231	6.3
부 채	0	0	0	0
Ⅰ. 유동부채	0	0	0	0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571,721	512,155	59,566	10.4
Ⅰ. 기본순자산	311,683	311,683	0	0.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50,708	△31,669	△19,039	37.5
Ⅲ. 순자산 조정	310,746	232,141	78,605	25.3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는 2021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133억 1,6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158억 3,700원, 비배분비용 0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25억 2,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77억 9,500만원(18.6%) 증가한 1,133억 1,600만원이며, 프로그램순원가 증가에 기인한다.

총 2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대통령경호처 운영프로그램(656억 6,200만원)과 대통령 및 국가요인 경호프로그램(501억 7,400만원)이다.

[2021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15,837	95,617	20,220	21.1
가. 프로그램 총원가	115,837	95,617	20,220	21.1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
Ⅱ. 관리운영비	0	0	0	0
Ⅲ. 비배분비용	0	0	0	0
Ⅳ. 비배분수익	2,521	96	2,425	2,526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13,316	95,521	17,795	18.6
Ⅵ. 비교환수익 등	0	0	0	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13,316	95,521	17,795	18.6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의 2021년도 기초순자산은 5,121억 5,5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5,717억 2,100만원으로 기초 대비 595억 1,600만원(11.6%)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 942억 7,700만원 증가와 조정항목 786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과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898억 4,6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억 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786억 5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512,155	484,078	28,077	5.8
Ⅱ. 재정운영결과	113,316	95,521	17,795	18.6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94,277	89,740	4,487	5
Ⅳ. 조정항목	78,605	33,858	44,747	132.1
Ⅴ. 기말순자산(Ⅰ - Ⅱ + Ⅲ + Ⅳ)	571,721	512,155	59,516	11.6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사업** 등이 있다.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의 지속 및 과거 국내여비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1억원을 감액하게 되었다.

대통령경호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정부기조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기관운영과 관련된 기본경비 및 사업비에 대해 연초 집행계획수립하고 분기별 집행액을 점검하여 상반기 예산 집행하였으며, 미래 경호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첨단 경호장비 도입 등 경호·경비역량 강화를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사업의 경우 국외 출장 보험 경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해외행사 출동 국외여비는 외교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국외 출장 보험 경비를 편성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타 부처 예산으로 집행되는 국외출장 경비 미편성 필요

가. 현 황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사업¹⁾은 대통령 및 국가요인 등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수행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150억 3,100만원 중 138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1,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15,031	15,031	0	0	15,031	13,818	0	1,213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분석의견

대통령경호처는 직원의 해외행사 출동 국외여비가 외교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국외출장 보험 경비를 편성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2021년도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사업에서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²⁾ 예산현액 7억 7,500만원 중 6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8,8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불용액 중 1,000만원은 국외출장보험료로 편성한 1,000만원을 전액 불용하여 발생하였다.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동 사업에 편성된 국외출장보험료는 대통령 등 경호대상요인의 해외행사 시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여행자 보험가입을 위한 예산으로, 대통령경호처 출장 인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부상에 대비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신규 편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2020년 및 2021년에 편성된 국외출장보험료 1,000만원은 집행되지 않았으며, 2022년 편성된 예산 또한 현재까지 집행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대통령경호처 국외출장보험료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예산액	1,000	1,000	1,000
집행액	0	0	0

자료: 대통령경호처

2) 대통령경호처의 공공요금및제세(210-02) 비목의 결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사업 공공요금및제세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공공요금및제세 (210-02목)	778	778	△3	775	687	0	88	827

자료: 대통령경호처

이는 현재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해외행사 출동 국외여비³⁾가 외교부 예산⁴⁾에 편성되어 있고, 외교부는 현재 동 예산을 통해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해외행사 경호 출장에 대하여 여행자보험 경비가 외교부와 대통령경호처에서 중복 계상되는 경우, 외교부 예산 혹은 대통령경호처 예산 중 하나는 집행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경호처는 외교부와 협의하여 이와 같이 불필요한 경비 편성에 따른 예산 불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3)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외준비금은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예방약 구입비에 한하여 지급하되, 직급·여행일수·직전 3년 이내 지급여부와 관계 없이 실비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2021회계연도 외교부의 정상 및 총리외교 국외업무여비 결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외교부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정상 및 총리외교	22,502	0	0	22,502	19,283	709	2,510	20,472
국외업무여비 (220-02목)	5,643	0	△2	5,641	4,758	0	883	5,469

자료: 외교부



국회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6억 8,800만원이며, 36억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9.6%인 32억 3,000만원을 수납하고, 3억 6,5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1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688	3,688	3,688	3,606	3,230	365	11	89.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회

2021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181억 6,700만원이며, 이 중 89.4%인 6,418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206억 8,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56억 3,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국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1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705,318	705,318	718,167	641,844	20,688	55,636	89.4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회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국회의 자산은 5조 9,755억 9,800만원, 부채는 289억 1,600만원으로 순자산은 5조 9,466억 8,2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30억 3,500만원, 일반유형자산 5조 9,210억 6,500만원, 무형자산 512억 2,8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2억 7,0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조 534억 1,600만원(21.4%)이 증가하였다. 이는 토지 자산재평가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1조 444억 1,600만원 증가, 소프트웨어 구입과 시스템구축 등에 따른 무형자산 76억 3,2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01억 9,400만원, 장기차입부채 178억 1,000만원, 장기충당부채 4억 1,9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4억 9,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1억 200만원(21.4%)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리스부채 증가 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34억 1,600만원 증가, 유동부채 20억 9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국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5,975,598	4,922,182	1,053,416	21.4
Ⅰ. 유동자산	3,035	1,773	1,262	71.2
Ⅱ. 투자자산	0	0	0	0.0
Ⅲ. 일반유형자산	5,921,065	4,876,649	1,044,416	21.4
Ⅳ. 무형자산	51,228	43,596	7,632	17.5
Ⅳ. 기타비유동자산	270	164	106	64.6
부 채	28,916	23,814	5,102	21.4
Ⅰ. 유동부채	10,194	8,185	2,009	24.5
Ⅱ. 장기차입부채	17,810	14,394	3,416	23.7
Ⅲ. 장기충당부채	419	252	167	66.3
Ⅳ. 기타비유동부채	494	983	△489	△49.7
순 자 산	5,946,682	4,898,368	1,048,314	21.4

자료: 국회

국회는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6,738억 4,0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순원가 2,621억 4,400만원, 관리운영비 4,508억 1,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391억 1,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63억 4,200만원(4.1%) 증가한 6,738억 4,000만원이다.

프로그램별 순원가는 의정지원활동(863억 6,000만원)과 국회사무처운영(1,423억 2,000만원), 국회도서관운영(266억 3,200만원), 예산정책처운영(41억 200만원), 입법조사처운영(27억 3,000만원)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801억 5,100만원과 기본경비 706억 6,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국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62,144	210,047	52,097	24.8
II. 관리운영비	450,811	440,885	9,926	2.3
III. 비배분비용	0	0	0	0.0
IV. 비배분수익	39,114	3,434	35,680	1,039.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673,840	647,498	26,342	4.1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673,840	647,498	26,342	4.1

자료: 국회

국회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4조 8,983억 6,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5조 9,466억 8,2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조 483억 1,400만원(21.4%)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를 기초 대비 6,738억 4,0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조 300억 6,3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6,920억 9,1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등 재원의 조달 6,953억 2,1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32억 3,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조 300억 6,3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국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4,898,368	4,876,289	22,079	0.5
Ⅱ. 재정운영결과	673,840	647,498	26,342	4.1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92,091	668,821	23,270	3.5
Ⅳ. 조정항목	1,030,063	757	1,029,306	135,971.7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5,946,682	4,898,368	1,048,314	21.4

자료: 국회

국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현정기념관 전시공간 개편**이 있다.

현정기념관 전시공간 개편 사업은 낙찰차액 등 불용예상액 12억원을 감액하게 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의원외교활동 사업**, ②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 등이 있다.

의원외교활동 사업은 국제정세 및 코로나19 호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의원외교 강화를 위하여 20억원이 증액(75억원→95억원)되었고,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1억원이 증액(138억원→139억원)되었다.

국회는 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 ②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국회 구현, ③ 국제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④ 국회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 등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국회도서관은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신규 및 소급 자료에 대해 원문구축 대상자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소급 자료에 대한 미구축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소급자료 원문구축을 마무리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일 원문에 대해 국회도서관 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타 기관에서도 DB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원문 DB 구축률 제고 및 예산 절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원문DB 구축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원문DB 구축 사업¹⁾은 공공정책자료, 학위논문 등을 국가 데이터 자산으로 구축하여 국민 정보격차 해소 및 국회 입법활동 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자도서관운영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국회도서관은 원문DB 구축 사업의 2021년 예산현액 115억 4,200만원 중 92.5%인 106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6,000만원을 불용하였다.

전자도서관DB 구축 사업 중 일반연구비(260-01)로 원문DB 구축, 국회기록물DB 구축, 법률정보DB 구축 사업 등을 집행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 원문DB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전자도서관운영	26,512	26,512	0	0	26,512	25,199	95.0	0	1313
전자도서관 DB 구축	15,000	15,000	0	0	15,000	14,084	93.9	0	916
일반연구비(260-01)	14,232	14,232	0	0	14,232	13,338	93.7	0	894
원문DB 구축	11,542	11,542	0	0	11,542	10,682	92.5	0	860
메타데이터 입력	640	640	0	0	640	639	99.8	0	1
데이터셋 구축	850	850	0	0	850	841	98.9	0	9
국회입법정보DB 구축	101	101	0	0	101	101	100	0	0
국회기록물DB 구축	473	473	0	0	473	458	96.8	0	15
공공정책정보DB 구축	453	453	0	0	453	447	98.7	0	6
전문가정보DB 구축	58	58	0	0	58	58	100	0	0
시소러스DB 유지관리	60	60	0	0	60	57	95	0	3
법률정보DB 구축	55	55	0	0	55	55	1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회도서관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3035-500의 내내역사업

국회도서관은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의 책임수행기관으로서, 1997년부터 원문 DB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국회도서관은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신규 및 소급 자료에 대해 원문구축 대상자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소급 자료에 대한 미구축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소급자료 원문구축을 마무리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원문DB 구축 사업은 1997년 첫 시행되어, 정부·공공기관 및 대학에서 생산되는 공공정책자료, 학위논문 등을 국가 데이터 자산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쇄자료의 물리적인 손상을 방지하고,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매년 신규 수집자료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이 증액된 2019년부터 소급자료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구축 잔여물량을 해소하고 있다.

우선, 전체 구축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말 기준 지난 25년간 구축된 자료 총량은 약 678만 건이다. 이는 전체 소장 목록 정보량²⁾의 56.4%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³⁾

그러나 추가 구축 필요량 즉, 구축대상 자료 중 구축되지 않고 잔존하는 자료의 누적량을 보면, 매년 비슷한 수준(약 520만~590만여 건)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회도서관은 전체 소장목록 정보의 약 40%가 원문구축 대상자료가 아니며, 대상자료는 관련 지침⁴⁾에 근거하여 선정한 후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소급 잔여물량은 약 40만 건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 원문DB 구축 제외 자료인 국내외 일반단행본, 국외학술기사, 비도서자료 등을 포함하였다.

3) 2018년 이후 예산액 대비 구축량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2019년부터 증액된 예산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소급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쇄자료의 구축단가가 높은 데 기인하여 예산 대비 구축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국회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자료 선정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구축 대상자료는 의회자료, 공공정책자료, 학술자료, 지식공유자료, 산화도서 등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자도서관DB 구축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A) ¹⁾	2,570	2,575	7,535	14,232	14,232
전체 소장목록 정보(B) ²⁾	10,124,466	10,425,877	11,071,897	11,574,286	12,022,874
연간 구축량(C)	149,919	224,299	527,957	855,310	769,025
누적 구축량(D) ³⁾	4,400,658	4,624,957	5,152,914	6,008,224	6,777,249
추가 구축 필요량(B-D) ⁴⁾	5,723,808	5,800,920	5,918,983	5,566,062	5,245,625
예산액 대비 구축량(C/A)	58.3	87.1	70.1	60.1	54.0
구축률(D/B)	43.5	44.4	46.5	51.9	56.4

주: 1) 예산은 전자도서관 DB 구축사업의 일반연구비(260-01)임

2) 원문DB 구축 제외 자료인 국내외 일반단행본, 외국학술기사, 비도서자료 등을 포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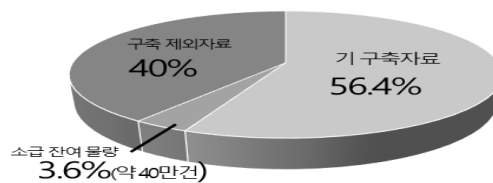
3) 멀티미디어자료, 국회자료, 특허자료 등을 포함한 전자도서관 DB 전체 통계임

4) 전체 소장목록 정보에서 누적 구축량을 제외한 단순 통계임

자료: 국회도서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현재 국회도서관이 소급 잔여물량을 약 40만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위 표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자도서관DB 구축 현황]의 2021년 기준 구축률 56.4%에 소급 잔여물량 3.6%(약 40만 건)를 구축하여 약 60%에 도달하면 아래 [전체 소장목록 정보의 원문DB 구축 대상 현황]과 같이 소급자료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향후 소급자료 원문구축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체 소장목록 정보의 원문DB 구축 대상 현황]



자료: 국회도서관

한편, 동 사업의 경우 예산 소요에 따른 정확한 구축대상 자료량, 누적구축량 등 원문DB 자료 구축현황 파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상기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자도서관DB 구축 현황] 각주 설명과 같이, 원문DB 구축 대상자료의

포괄범위에 따른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회도서관은 구축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소급 구축대상 자료에 대한 구축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자료구축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일 원문에 대해 국회도서관 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타 기관에서도 DB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원문 DB 구축률 제고 및 예산 절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서관법」 제7조제4항⁵⁾ 및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르면,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학위논문 인쇄본과 디지털 파일을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석·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학위논문 인쇄본과 디지털 파일을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각각 납본하고 있으며, 양 도서관은 디지털 파일을 검증한 뒤 각각의 전자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학위논문 관리·유통을 위한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을 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논문 작성자가 소속 대학 내 dCollection 시스템에 접속하여 논문 원문 파일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논문이 디지털화되어 학술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으며, dCollection 시스템으로 구축된 자료는 자관 dCollection 사이트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도서관은 2014년 7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학술정보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구축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정보(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 등)를 이

5) 「국회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④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그 학위논문이 간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위논문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고, dCollection 원문 URL을 활용하여 학위 논문 디지털 파일을 다운받는 등 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도서관은 여전히 개별 대학도서관으로부터 학위논문을 납본받고, dCollection과는 별개로 DB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원문 DB 구축률 제고 및 예산 절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억 2백만원이며, 2,8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년도 미수납 100만원을 포함하여 2,900만원을 전액 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02	102	102	28	29	0	0	100.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21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82억 4,800만원이며, 이 중 94.1%인 359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6천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7,931	37,931	38,248	35,982	406	1,860	94.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산은 226억 8,800만원, 부채는 3,400만원으로 순자산은 226억 5,400만원이다.

자산은 일반유형자산 174억 6,600만원, 무형자산 23억 5,7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28억 6,6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44억 1,800만원 증가하였다. 이는 당기 본부 및 인권사무소 물품 구매와 인권교육원 인수, 재평가로 인한 일반유형자산 147억 6,3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2,688	8,270	14,418	173.3
Ⅰ. 유동자산	0	71	△71	△100.0
Ⅱ. 투자자산	0	0	0	0.0
Ⅲ. 일반유형자산	17,466	2,703	14,763	546.2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2,357	2,630	△273	△10.4
Ⅵ. 기타비유동자산	2,866	2,866	0	0.0
부 채	34	0	34	0.0
Ⅰ. 유동부채	34	0	34	순증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0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22,654	8,270	14,384	173.9
Ⅰ. 기본순자산	5,748	5,748	0	0.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13,003	2,130	10,873	5.1
Ⅲ. 순자산 조정	3,903	392	3,511	9.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95억 4,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95억 5,100만원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0억 7,300만원(2.8%) 증가한 395억 4,9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10억 7,4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9,551	38,477	1,074	2.8
가. 프로그램 총원가	39,551	38,477	1,074	2.8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0
II. 관리운영비	0	0	0	0.0
III. 비배분비용	0	0	0	0.0
IV. 비배분수익	1	1	0	0.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9,549	38,476	1,073	2.8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VI)	39,549	38,476	1,073	2.8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82억 7,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26억 5,4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43억 8,400만원(173.9%)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10억 7,3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증감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기 대비 114억 3,500만원 증가하고 조정항목이 35억 1,1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증감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기 대비 국고수입,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114억 6,7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3,200만원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8,270	7,758	512	6.6
Ⅱ. 재정운영결과	39,549	38,476	1,073	2.8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0,423	38,988	11,435	29.3
Ⅳ. 조정항목	3,511	0	3,511	순증
Ⅴ. 기말순자산(Ⅰ - Ⅱ + Ⅲ + Ⅳ)	22,654	8,270	14,384	173.9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 ② **북한인권 개선 사업**이 있다.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은 내역사업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과 ‘스포츠분야 인권증진’이 통합되며 300백만원이 감액(400백만원 → 100백만원)되었다. 북한인권 개선 사업은 내역사업 북한인권 정책개발에서 55백만원 감액(110백만원 → 55백만원)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인권침해·차별예방 활동 강화 및 적극적 피해 구제, ②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한 인권보장체계 보완, ③ 취약계층의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④ 인권교육 내실화,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 구축, ⑤ 인권교육 내실화, 사이버 인권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윤리센터’와 역할 중복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권리구제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조직·기능 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2019년에 최초 설립된 이후 1년 단위로 운영 기간을 연장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기간과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아 사업계획의 변경과 이에 따른 예산조정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일부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조직·기능 정비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¹⁾은 스포츠인권의 현 실태를 파악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권고를 통해 스포츠 분야 인권증진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의 2021년 예산현액 1억 4,300원 중 80.4%인 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취약분야 인권개선	1,270	1,270	17	0	1,287	1,162	90.3	0	125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126	126	17	0	143	115	80.4	0	28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²⁾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초 스포츠 분야 '미투(me too)'를 계기³⁾로 폭력·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기 위해 특조단을 설립하였다. 「스포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731-405의 내역사업

2) 2020년까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 사업으로 운영된 후, 2021년부터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3) 특조단은 2019년 빙상계를 통해 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남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같은 해 1월 22일 국가인권위원장 긴급성명을 통해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2월 25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출범하였다.

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⁴⁾ 특조단의 운영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9년에 최초 설립된 이후 1년 단위로 운영 기간을 연장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특조단이 임시기구로 신설되어 예비비 18억 5,300만원을 배정받았으며, 2020년 예산편성 시에는 장기적 운영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운영비 2,800만원만 반영한 뒤 예비비 14억 7,800만원을 배정받아 운영하였다. 2021년에는 본예산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비비	집행액
2019	0	1,853	1,691
2020	28	1,478	1,241
2021	126	0	115
2022	179	0	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4)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운영기간) 특조단의 운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윤리센터’와 역할 중복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권리구제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조직·기능 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9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신설하여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2020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⁵⁾에 근거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였는데, 동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기관 내 다원화되어 있던⁶⁾ 스포츠 인권 신고 및 상담창구를 통합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조사기관의 역할을 비교해보면, 스포츠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하거나, 접수사건 조사 혹은 직권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업무나 조사 권한상 큰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사후적 조치 측면에서, 특조단의 경우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체육단체나 교육청 등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스포츠윤리센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기관으로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한다는 점, 그리고 특조단은 정책권고 기

5)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6)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와 ‘스포츠인권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인지원센터’ 등

능이 있으나 스포츠윤리센터는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제안 정도만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양 기관은 일부 조치 과정 및 권고 기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나, 업무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분야 조사기관 비교]

부처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성격	독립적 국가기관(법정부 기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
주요 업무	1.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3.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등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실태 조사 4.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스포츠 분야 인권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6.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정비, 실행지침 수립	1.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6.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조사 권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및 직권조사	인권침해·비리 사건조사, 직권조사 등
조사에 따른 조치	인권위에서 직접 체육단체, 교육청 등 징계 요구 ¹⁾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문체부장관에게 징계 요구
정책권고	정책권고, 의견표명 등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정책제안

주: 1)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거부방해 등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자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가인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최초 추진된 2019년에는 진정 123건이 접수되어 14건을 권고 조치하였으나, 2021년에는 진정접수 92건 중 권고 8건 등으로 진정접수 건수 감소에 따라 권리구제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1 회계연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주요 활동 내역]

연도	사건조사	직원조사,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2019	- 진정접수 123건 - 권고 14건, 조사중해결 13건	- 실태조사 (운동선수 및 체육체계 인권상황 실태조사, 유도, 빙상종목 인권 특별조사 등) - 경기대회 모니터링(4대회)
2020	- 진정접수 107건 - 권고 18건, 고발 1건, 의견표명 3건, 합의종결 1건, 조사중 해결 3건	-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등에 대한 직원조사 - 실태조사 (스포츠분야 해외선진 제도 및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 경기대회 모니터링(4대회)
2021	- 진정접수 92건 - 권고 8건, 조사중해결 2건	- 대학 운동부 폭력 문화·관습 직원조사 - 정책권고 이행상황 점검 (유도 선수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3개기관), 빙상종목 운동선수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19개 기관)) - 경기대회 모니터링(10대회)
2022.6	- 진정접수 24건 - 권고 1건, 의견표명 1건, 조사중해결 3건	- 정책권고 이행상황 점검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20개 기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242개 기관),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4개 기관),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2개 기관)) - 경기대회 모니터링(8대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러한 운영 실적 감소 원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미투 등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추세 속에서 특조단이 설립되어 다양한 진정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되면서 각종 경기대회 중단, 운동선수 집합 훈련 금지 등 체육계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 또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특조단의 인권증진 노력으로 인해 운동선수 및 지도자들이 스포츠인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대형사건 또한 감소되는 추세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 비리 등은 경기대회만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 일상 속 잠재되어 계속 노정되는 문제라는 점, 2020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윤리센터’가 설립되어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⁷⁾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상황이 특조단의 운영 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인권 보장을 위해 설립된 점을 감안하여 양 기관 간 역할 분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2019년에 최초 설립된 이후 1년 단위로 운영 기간을 연장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기간과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아 사업계획의 변경과 이에 따른 예산조정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일부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조단의 경우 2019년 임시기구로 출범한 이후 1년 단위로 운영 기간을 연장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특조단의 운영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기간 연장을 요구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7) 2022년 상반기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도 동기간(1~6월)에 비해 상담 건수는 36%, 신고 건수는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상담 486건, 신고 158건, 2022년: 상담 661건, 신고 208건)

[스포츠윤리센터 상담신고 접수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상 담			신 고		
	2020 ¹⁾	2021	2022.6	2020 ¹⁾	2021	2022.6
총 건수	296	1,029	661	101	371	208

주: 1) 2020. 9월~12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연장 신청 및 승인 흐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별도정원기구 기간 연장 요구 → 관계부처(인권위, 행안부) 협의
→ 행정안전부 검토 후 확정(행정안전부에서 정원 및 승인기간 포함 공문 통보)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사실, 특조단의 경우 임시기구로서 조직 상설화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보면, 행정안전부와 정원 및 승인기간 등 존치여부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연장 승인 과정 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⁸⁾과의 기능상 협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장 신청·승인 일자를 보면 대체로 전년도 말에 연장을 신청하고 해당 회계연도 초에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어 운영 기간과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연장시기 및 운영기간]

구분	연장신청	연장승인	운영기간
2019	(신규) '19.1.28.	'19.2.7.	'19.2.~'20.2.
2020	'19.12.27.	'20.1.3.	'20.3.~'21.2.
2021	'21.1.19.	'21.2.15.	'21.3.~'22.2.
2022	'21.12.14.	'22.1.27.	'22.3.~'23.2.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처럼 1년 단위로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과 이에 따른 예산조정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일부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다.

일례로, 2021년 2월 특조단의 연장이 결정된 이후 4월에 홍보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수용비 6,300만원 중 1,4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 변경하였다. 이후 5월에 특조단 기한 연장이 불승인될 경우 모니터링 사업을 위탁하기 위해 편성한 일반용역비를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명목 하에 국내여비로 4,000만원 전용하였다.

8)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주도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개선방안(2021.2.24.)' 발표 등 스포츠인권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1회계연도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 예산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예산조정 사유
	내역사업명	목-세목 코드		내역사업명	목-세목 코드	
세목 조정 (4.7)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일반수용비 (210-01)	14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일반용역비 (210-14)	스포츠분야 인식 개선 홍보업무 추진을 위해 세목조정
전용 (5.13)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일반용역비 (210-14)	40	스포츠 분야 인권증진	국내여비 (220-01)	'21.3.18. 제10차 및 '21.4.8. 제13차 상임위에서 스포츠분야 정책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요구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렇게 확보된 여비 예산현액 4,500만원 중 1,800만원만 집행되었다.9)

[2021회계연도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부진 사유
국내여비	4,500	1,800	0	2,700	코로나19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취소로 인한 현장모니터링 축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처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예산확정일과 연장승인일 간 간극에서 예산 집행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운영기간 확보, 관계부처 간 상설조직 여부 협의 등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9)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그간 개최되지 못한 체육계 각종 경기대회에서의 인권 친화적 문화 정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대규모 계획(스포츠분야 정책권고 이행모니터링 기본계획(2021. 4.))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였으나,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피권고기관 및 현장 직장운동경기부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스포츠분야 정책권고 이행모니터링 기본계획' 결과를 보면, 예산편성 당시 289개소의 모니터링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12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스포츠분야 정책권고 이행모니터링 기본계획(2021. 4.)]

(단위: 개소)

대상기관	초중고 학생선수	직장운동 경기부	유도선수	빙상	합계
계획	20	242	3	24	289
결과	20	83	3	19	12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조 689억 9,500만원이며, 1조 4,012억 6,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9%인 1조 3,857억 2,800만원을 수납하고 153억 8,0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930,623	1,930,623	1,930,623	1,286,669	1,271,358	15,154	156	98.8
교도작업특별회계	138,372	138,372	138,372	114,596	114,370	226	-	99.8
합계	2,068,995	2,068,995	2,068,995	1,401,265	1,385,728	15,380	156	98.9

자료: 법무부

2021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조 1,620억 5,400만원이며, 이 중 94.6%인 3조 9,361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337억 7,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20억 9,9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989,341	3,989,341	4,022,685	3,829,420	30,559	162,705	95.2
교도작업특별회계	138,372	138,372	139,369	106,756	3,219	29,394	76.6
합계	4,127,713	4,127,713	4,162,054	3,936,176	33,778	192,099	94.6

자료: 법무부

나.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099억 8,500만원이며, 1,185억 8,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4%인 1,178억 7,300만원을 수납하고 7억 7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9,985	109,985	109,985	118,580	117,873	707	0	99.4

자료: 법무부

2021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1,099억 8,500만원이며, 이 중 105.5%인 1,178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60억 9,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9,985	109,985	111,732	117,873	0	6,094	105.5

자료: 법무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1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823억 1,500만원(△33.7%)이 감소한 1조 3,419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763억 6,500만원(△5.4%)이 감소하였다.

[2021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결산 (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414,087	2,020,365	2,020,365	1,337,156	△683,209	△76,931
기금	4,259	3,931	3,931	4,824	893	565
합계	1,418,346	2,024,296	2,024,296	1,341,981	△682,315	△76,365

자료: 법무부

2021회계연도 법무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690억 5,100만원(△4.2%)이 감소한 3조 8,891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011억 7,800만원(5.5%)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결산 (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3,590,699	3,952,920	3,952,920	3,788,123	△164,798	197,424
기금	97,323	105,329	105,329	101,076	△4,253	3,753
합계	3,688,021	4,058,249	4,058,249	3,889,199	△169,051	201,178

자료: 법무부

라.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법무부의 자산은 12조 4,947억 1,700만원, 부채는 1,595억 6,600만원으로 순자산은 12조 3,351억 1,5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339억 6,300만원, 투자자산 90억원, 일반유형자산 12조 2,443억 2,900만원, 무형자산 664억 1,8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조 6,769억 800만원(15.5%) 증가하였다. 이는 국유재산 재평가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1조 6,655억 2,3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349억 900만원, 장기차입부채 474억 7,300만원, 장기충당부채 771억 8,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50억 100만원(△18.0%) 감소하였다. 이는 소송관련 충당부채 감소 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273억 8,5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20회계연도 법무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2,494,717	10,817,809	1,676,908	15.5
Ⅰ. 유동자산	133,963	122,749	11,214	9.1
Ⅱ. 투자자산	9,000	12,000	△3,000	△25.0
Ⅲ. 일반유형자산	12,244,329	10,578,806	1,665,523	15.7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66,418	62,001	4,417	7.1
Ⅵ. 기타비유동자산	41,006	42,253	△1,247	△3.0
부 채	159,566	194,567	△35,001	△18.0
Ⅰ. 유동부채	34,909	35,824	-915	△-2.6
Ⅱ. 장기차입부채	47,473	54,174	△6,701	△12.4
Ⅲ. 장기충당부채	77,184	104,569	△27,385	△26.2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12,335,150	10,623,242	1,711,908	16.1
Ⅰ. 기본순자산	5,685,180	5,685,180	0	0.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1,078,017	1,158,873	△80,856	△7.0
Ⅲ. 순자산 조정	5,571,953	3,779,188	1,792,765	47.4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2021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조 6,603억 3,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조 7,187억 2,000만원, 관리운영비 3조 337억 300만원, 비배분비용 177억 7,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583억 8,100만원, 비배분수익 2,260억 8,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4,475억 9,200만원(11.1%) 증가한 4조 4,857억 3,000만원이며, 이는 국가배상금 지급액을 포함한 프로그램순원가가 4,569억 9,800만원 증가하였고, 관리운영비가 1,705억 7,900만원 증가한 데에 주로 기인한다.

총 8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교정활동 프로그램(5,967억 5,400만원)과 검찰활동 프로그램(4,093억 9,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조 3,646억 8,700만원과 경비 6,690억 1,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평가손실 159억 9,300만원과 대손상각비 5억 6,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법무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660,339	1,203,341	456,998	38.0
가. 프로그램 총원가	1,718,720	1,259,495	459,225	36.5
나. 프로그램 수익	58,381	56,154	2,227	4.0
II. 관리운영비	3,033,703	2,863,124	170,579	6.0
III. 비배분비용	17,771	25,479	△7,708	△30.3
IV. 비배분수익	226,084	53,805	172,279	320.2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485,730	4,038,138	447,592	11.1
VI. 비교환수익 등	58	3	55	1,833.3
VII. 재정운영결과(V-VI)	4,485,672	4,038,135	447,537	11.1

자료: 법무부

법무부의 2021년도 기초순자산은 10조 6,232억 4,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2조 3,351억 5,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조 7,119억 800만원(16.1%)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자산 차감 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4조 4,856억 7,200만원이나, 가산 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4조 4,048억 1,600만원, 조정항목이 1조 7,927억 6,400만원으로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5조 8,165억 4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조 4,116억 8,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조 7,927억 6,4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법무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10,623,242	10,237,960	385,282	3.8
Ⅱ. 재정운영결과	4,485,672	4,038,135	447,537	11.1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404,816	4,133,867	270,949	6.6
Ⅳ. 조정항목	1,792,764	289,550	1,503,214	519.2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2,335,150	10,623,242	1,711,908	16.1

자료: 법무부

마. 재정 구조

2021회계연도 법무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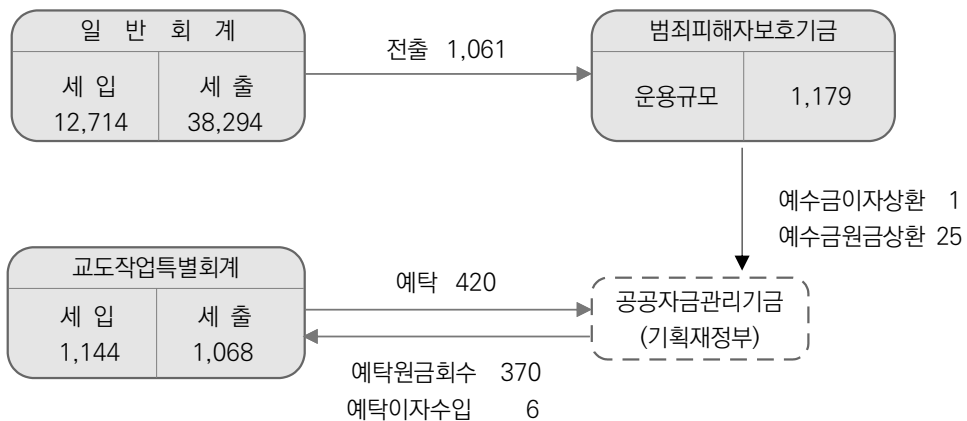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1,060억5,400만원 전출되었다.

한편 교도작업특별회계는 공자기금에 420억원을 예탁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회수 370억원, 예탁이자수입 6억원을 받았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1억 4,600만원을, 예수금 원금상환을 위해 25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납부하였다.

[2021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법무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국가배상금지급**, ②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③ **형집행 및 범죄수의 환수** 등이 있다.

국가배상금지급 사업은 1,000억원이 감액(2,500억원 → 1,500억원)되었고,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은 10억 5,600만원이 감액(220억 3,600만원 → 209억 8,000만원)되었으며, 형집행 및 범죄수의 환수 사업은 4억 6,700만원이 감액(45억 2,300만원 → 40억 5,6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② **기타법무시설개보수 및 확충**, ③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등이 있다.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은 13억 7,400만원 증액(2,278억 8,100만원 → 2,292억 5,500만원)되었고, 기타법무시설개보수 및 확충 사업은 9억 6,700만원이 증액(119억 200만원 → 128억 6,900만원)되었으며,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은 5억 4,700만원이 증액(791억 800만원 → 796억 5,500만원)되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검찰청 사업(총괄)**이 있다. “검찰청 소관 특수활동비가 수사와 관련 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특정업무경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투명하게 집행할 것”과 “검찰청 예산 편성 주체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의 2건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법무부는 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지속적 개혁 추진, ②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③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④ 존중과 포용의 인권사회 등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2021년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경우 소집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략 1년 2개월에서 3년 정도로 길게 나타나 소집적체가 존재하고 장기대기와 관련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타 역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체복무교육센터 수용한계의 문제와 대체복무시설 공사의 지연 문제로 인하여 대체복무시설 개소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관련 사업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대체복무시설 개소의 지연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형사사법제도 개정 후 처음 시행한 검찰 예산 재구조화 내역과 2021년도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의 집행내역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와 같은 차이에 더하여 2021년도 이후의 검찰 수사 관련 현황, 법령 및 직제 개정사항, 코로나19 상황 변동 등에 따른 검찰 업무량 변화 등을 지속적·다각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형사사법제도의 개정이 검찰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스타트업 법률지원 관련 사업은 타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신규 추진되었는데, 동 사업은 사실상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행위는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동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경우

에도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해결률이 타 기관의 조정위원회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접수 건수 및 분쟁 해결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법무부는 조정위원회의 조정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1년도에는 타 기관 소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관 조정위원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조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조정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원율은 2021년도 기준 63.3%에 이르므로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원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법무병원의 병동을 관리하기 위한 간호인력 부족으로 유희병동이 발생하고 있어 실제 보유 병상 수가 치료감호자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간호인력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의 문제점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¹⁾은 대체복무 인원에 대한 급식비, 피복비, 일반수용비 등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대체복무 시행을 위한 합숙시설 조성 및 기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270억 7,300만원 중 82.4%인 223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600만원을 이월하고 46억 2,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19,786	19,786	8,308	△1,021	27,073	22,318	82.4	126	4,629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체역’을 신설하도록 「병역법」 제5조제1항을 개정²⁾(2020.1.1. 시행)하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을 제정(2020.1.1. 시행)하면서,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531-304

2)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제1항 제6호가 신설되었다. 동 조항은 대체역을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이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역법」 제3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대체역 편입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되는 경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되어 36개월 동안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근무 형태로 복무를 하고, 대체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8년까지 교정분야에서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군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대체복무제도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법률	「병역법」 제5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복무기간	36개월
복무기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복무관리 주체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총괄 지휘·감독) • 대체복무기관의 장(소속 대체복무요원 지휘·감독) • 병무청장(합동 실태조사)
복무형태	합숙근무
신청자격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예비역, 복무만료 보충역
대체역 편입절차	① 대체역 편입 신청, ② 심사대상 여부 판단, ③ 사실조사, ④ 사전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 ⑤ 위원회 심사·의결, ⑥ 대체역 편입
대체복무요원 병역이행 과정	<pre> graph LR A[19세 병역판정 검사] --> B[편입 신청] B --> C[위원회 심사] C --> D[편입] D --> E[소집 대기] E --> F[소집] F --> G[합숙 36개월] G --> H[복무 만료] H --> I[예비군 대체 복무] I --> J[8년까지] J --> K[40세 면역] subgraph "대체복무기간" F G H end subgraph "대체역" A B C D E F G H I J K end </pre>

자료: 병무청, 「대체복무제도 안내 리플렛」

1-1. 대체역 소집적체 문제 해소 필요

가. 현 황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하여 법무부는 제도 시행 전에 대체복무시설 개소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에 따르면 2020년부터 대체복무시설을 신축·리모델링하여 순차적으로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고, 2022년에는 총 32개의 기관을 개소하여 정원 1,620명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체복무시설 개소가 계획 대비 지연되면서, 2025년까지 대체복무시설 총 34개 기관을 개소하여 정원 1,680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651명을 소집하였고, 개소 계획에 맞춰 2025년까지 2,700명을 소집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시설 개소·복무 현황 및 계획]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정원
당초계획	인원 수	543	539	650	-	-	-	1,620
	누계 인원	543	1,082	1,732	1,732	1,732	1,732	
개소현황 (변경계획)	인원 수	202	568	322	287	285	195	1,680
	누계 인원	202	770	1,092	1,379	1,664	1,859	
복무현황 (복무계획)	복무(A-B)	106	647	1,046	1,377	1,458	1,646	-
	소집(A)	106	651	1,054	1,483	2,109	2,700	
	해제(B)	-	4	8	106	651	1,054	

주: 1. 복무현황은 연말 누계 기준
 2. 당초 계획은 대체복무제 시행 전에 수립
 3. 개소 현황 및 변경 계획은 2022년 5월 19일 기준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2021년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경우 소집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략 1년 2개월에서 3년 정도로 길게 나타나 소집적체가 존재하고 장기대기와 관련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타 역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체복무시설 개소가 순연됨에 따라 대체역 소집도 지연되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두 번의 소집으로 106명이 소집되었으며, 2021년의 경우 열한 번의 소집으로 548명이 소집되었다. 이에 따라 대체역 편입 후 소집을 기다리는 대기자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도 연말 기준 대기자 624명에서 2021년도 연말 기준 대기자 1,381명으로 두 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2021년에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소집되기까지 대략 1년 2개월~3년 정도의 대기기간³⁾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대체역 편입·소집 및 대기자 현황]

(단위: 명)

연	월	편입		소집		대기자 (C=A-B)
		당월편입	누적편입(A)	당월 소집	누적소집(B)	
2020	6	-	0	-	0	0
	7	224	224	-	0	224
	8	224	448	-	0	448
	9	-	448	-	0	448
	10	178	626	63	63	563
	11	104	730	43	106	624
	12	-	730	-	106	624
2021	1	165	895	54	160	735
	2	89	984	48	208	776
	3	117	1,101	46	254	847
	4	107	1,208	40	294	914
	5	108	1,316	86	380	936
	6	103	1,419	45	425	994
	7	101	1,520	38	463	1,057
	8	108	1,628	46	509	1,119
	9	107	1,735	43	552	1,183
	10	104	1,839	48	600	1,239
	11	102	1,941	54	654	1,287
	12	81	2,022	-	654	1,368

3)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대체역 편입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2021년 1월에 편입된 731번째 편입자가 소집되는 것은 2022년도 2월 정도로 약 1년 2개월의 대기기간을 가진다. 또한 2021년 12월에 편입된 2,022번째 편입자가 소집되는 것은 복무계획을 고려하였을 때, 대략 2024년말 정도로 약 3년의 대기기간을 가진다. 대체역 편입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소집일자가 빠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이상으로 대기하는 사람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단위: 명)

연	월	편입		소집		대기자 (C=A-B)
		당월편입	누적편입(A)	당월 소집	누적소집(B)	
2022	1	59	2,081	46	700	1,381
	2	67	2,148	49	749	1,399
	3	62	2,210	31	780	1,430
	4	50	2,260	44	824	1,436

자료: 법무부

병무청에 따르면 역종별 대기 현상에 대하여 현역의 경우 2018년 이후 해소되었으며, 보충역의 경우에는 소집대기 인원이 2017년 7.5만명 수준에서 2019년 8.9만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소집체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등을 통하여 2021년에는 소집대기 인원이 7.6만명 수준으로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보충역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역법」 제65조제9항⁴⁾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10항⁵⁾에 근거하여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회복지무요원 소집대상자로 3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시근로역⁶⁾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역의 경우, 현역과 달리 소집체제가 존재하면서도 보충역과 달리 소집대기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역에 편입된 인원의 대부분은 20대 청년층으로 학업 및 취업 등을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 여부 및 군복무시기에 관한 예측성

4)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⑨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지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5)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⑩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6) 전시근로역이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는 위와 같은 소집적체를 해소하고 대체역 편입 후 대기하는 인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⁷⁾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아래 '1-3. 장기적 관점에서 대체복무요원 정원의 적정규모 산정 필요'에서도 논의하겠지만, 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복무분야를 교정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 의료기관, 소방기관 등으로 다양화하고, ② 장기간의 합숙복무 기간을 줄이거나 일정기간 합숙복무 후 나머지 기간은 출퇴근 복무로 전환하는 혼합복무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대체복무시설 개소 지연 문제 완화 필요

가. 현 황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의 건설비의 경우 교정시설 내의 대체복무교육센터 및 대체복무 생활관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이다. 법무부는 건설비의 2021년도 예산 131억 4,600만원과 전연도 이월액 83억 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14억 5,400만원 중 172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0억 5,4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 건설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건설비	13,146	13,146	8,308	0	21,454	17,273	126	4,054
· 실시설계비(420-02)	441	441	1	0	442	400	0	42
· 공사비(420-03)	12,579	12,579	8,203	0	20,782	16,820	126	3,836
· 감리비(420-04)	126	126	104	0	230	53	0	17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대체복무교육센터 수용한계의 문제와 대체복무시설 공사의 지연 문제로 인하여 대체복무시설 개소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관련 사업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대체복무시설 개소의 지연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체복무시설 개소가 지연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① 대체복무교육센터 수용한계의 문제이며, 두 번째는 ② 대체복무시설 공사의 지연 문제이다.

① 대체복무교육센터 수용한계의 문제를 살펴보면, 법무부는 현재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면 최초 3주간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체복무요

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 영월교도소 대체복무교육센터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따라서 현재는 대전교도소 시설에서 임시로 대체복무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교도소 임시 대체복무교육센터의 교육인원 수용한계는 50명으로 약 1개 대체복무시설의 정원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1개의 대체복무시설 개소에 맞춰 1회의 대체복무교육센터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⁸⁾ 이에 따라 한 번에 소집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의 수가 50명 이하로 정해졌고, 최초의 계획과 같이 2020년 6월~12월간 대체복무시설 10개를 개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계획이 순연되었다.⁹⁾

다만, 대체복무교육센터와 관련된 문제의 경우 법무부에서 임시로 대체복무교육센터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완화될 수 있다는 점¹⁰⁾에서, 대체복무시설 개소 지연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대체복무시설 공사의 지연 문제를 살펴보면, 대체복무교육센터 및 영월(교)생활관 신축 공사¹¹⁾의 경우 영월교도소에 대체복무교육센터 겸 대체복무 생활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신축사업 설계용역 유사사례¹²⁾를 감안하면 약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법무부는 2020년도 공사비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기간을 8개월(2020.4.22.~2020.10.18.)로 단축하여 발주하였다. 그러나 공사면적이 기존 계획에 비하여 늘어나게 되면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예비인증이 필요하게 되어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되었다.

8) 법무부는 현재 공사 중인 영월 대체복무교육센터가 완공되는 경우 정원이 70명으로 늘어나, 한번에 약 1.5개 기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9) 예컨대, 포항교도소의 대체복무시설은 2020년 10월 31일에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소 일자는 2021년 5월 10일이며, 김천소년교도소의 대체복무시설은 2021년 10월 28일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소 일자는 2022년 5월 9일이다. 이 외에도 여러 시설들이 준공 후 개소까지 시일이 소요되었다.

10)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대체복무교육센터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은 관리인력 및 예산제약의 문제가 있으며, 대체복무교육센터를 여러 개 운영한다 하더라도 배치할 수 있는 대체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소집적체를 해소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부 대체복무 시설(각주9)의 경우 준공 후 개소까지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교육센터를 일시적으로라도 여러 개 운영하였다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1) 아래는 대체복무교육센터 및 영월(교) 생활관 신축 공사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이다.

[대체복무교육센터 및 영월(교) 생활관 신축 공사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구분	세부 내용	
대체복무 교육센터 및 영월(교) 생활관	예산 현액 (집행)	•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일반회계)	
		2020년	• 설계비 290 (284) • 공사비 8,218 (15) • 감리비 104 (0)
		2021년	• 설계비 29 (29) • 공사비 8,329 (4,562) • 감리비 104 (0)
	사업 계획	• 설계: 2020.4.22. ~ 2020.10.18. • 공사: 2020.10.18. ~ 2021.10.17.	
	실제 진행	• 설계: 2020.4.22. ~ 2021.12.16. • 공사: 2020.12.25. ~ 2022.8.15.	
	지연 사유	2020년도: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예비인증 등 각종 인증 실소요기간 반영 및 관련 업체 및 기관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되어 공사비 집행 부진 2021년도: 무연고 분묘(3기)의 발견에 의한 불가피한 공사 중단(약 4개월)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공사비 등 3,745백만원 불용(재이월 불가), 관급자재 공사비 126백만원 이월	

자료: 법무부

[대체복무교육센터 및 영월(교) 생활관 신축 공사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설계비	284	283	1	1	28	29	29	0	0
공사비	8,218	15	8,203	8,203	126	8,329	4,562	126	3,641
감리비	104	0	104	104	0	104	0	0	104
합계	8,606	298	8,308	8,308	154	8,462	4,591	126	3,745

자료: 법무부

12) 유사사례(용역기간): 속초합동청사 신축 11개월, 서울서부지검(별) 증축 15개월

이에 따라 공사비 및 감리비 약 83억원이 이월되었으나, 2021년도의 경우 공사 중 무연고 분묘(3기)가 발견되어 불가피한 공사 중단(약 4개월)으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공사비 및 감리비 약 37억원(2020년도 이월예산 중 일부)이 불용되었다.

현재 2022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무부는 다른 대체복무 생활관 공사 예산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을 2022년 내에 계획대로 완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된 것은 2021년 1월 7일로 동 시설 공사의 공사비 불용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공사비 예산을 2022년도 예산안에 새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전용을 전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는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서울남부구치소 및 서울남부교도소 생활관 증축 공사와 광주교도소 생활관 증축 공사의 경우, 당초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에 해당함에도 이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고려하지 못하여 2021년도에 GB변경 용역을 추가로 진행하고 이를 위하여 기재부와 총사업비 변경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어 2022년도 공사비도 이월·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대체복무시설 관련 공사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구분	세부 내용	
서울남부 구치소 및 서울남부 교도소 생활관	예산 현액 (집행)	•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취득(국유재산관리기금)	
		2021년	• 설계비 304 (127)
		2022년	• 공사비 3,221 • 감리비 34 • 시설부대비 10
	사업 계획	• 설계: 2021.2. ~ 2022.4. • 공사: 2022.6. ~ 2023.6.	
	실제 진행	• 설계: 2021.11. ~ 2022.12. • 공사: 2023.3. ~ 2024.4.	
	지연 사유	• 2021년도: GB변경 용역 및 총사업비 변경 조정으로 설계 및 착공 지연으로 설계비 6천만원 이월, 1억 1,700만원 불용	
광주 교도소 생활관	예산 현액 (집행)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취득(국유재산관리기금)	
		2021년	• 설계비 164 (97)
		2022년	• 공사비 1,676 • 감리비 19 • 시설부대비 7
	사업 계획	• 설계: 2021.2. ~ 2022.4. • 공사: 2022.6. ~ 2023.6.	
	실제 진행	• 설계: 2021.12.27. ~ 2023.2.19. • 공사: 2023.4. ~ 2024.4.	
	지연 사유	• 2021년도: GB변경 용역 및 총사업비 변경 조정으로 설계 및 착공 지연으로 설계비 4,200만원 이월, 2,500만원 불용	

자료: 법무부

대체복무시설 개소가 지연되는 것은 대체역 소집을 지연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체복무시설이 계획대로 개소할 수 있도록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월교도소 대체복무교육센터 및 생활관이 완공되는 경우 충분한 교육정원 확보를 통하여 대체역 소집 지연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계획대로 동 시설을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 장기적 관점에서 대체복무요원 정원의 적정규모 산정 필요

가. 현 황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병역거부자는 평균 557명으로, 이를 반영하여 법무부는 매년 발생하는 대체역 편입인원 및 대체복무요원 수를 평균 540명으로 보고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인 3년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시설의 대체복무요원 정원은 1,620명으로, 대체복무시설 공사 및 운영 등의 사업도 이를 기준으로 수행된다.

[최근 10년간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 발생 현황]

(단위: 명)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계	연평균
429	485	461	557	493	565	623	598	633	721	5,565	557

주: 1. 2010년~2017년의 경우 종교적 사유로 병역의무부와 통지서를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의 수

2. 2018년~2019년의 경우 종교적 사유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연기한 사람의 수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대체복무제도의 장기적인 운영계획에 따르면 대체역 편입자의 소집 대기기간을 2.6년으로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대체역 소집적체의 적정한 수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체복무요원 정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시설 34개 기관이 모두 개소하고 소집 및 소집해제 인원이 꾸준하게 발생하게 되는 장기적인 상황에서, 국방부와 법무부 간에 최초로 협의된 대체복무시설 정원은 3년간 매년 540명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총 1,620명이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시행초기에는 대체역 편입 후 소집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많다(1,300~1,600명)는 점을 고려한 국방부의 소집인원 확대 요청을 반영하여 1,680명으로 정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대기인원이 다소 감소되는 시점인 2031년부

터 정원을 1,620명으로 조정하여 10개 생활실(60명)을 예비군 대체복무자들이 합
숙(3박 4일)하는 생활실로 변경하여 운영¹³⁾할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복무현황 추계]

(단위: 명)

년도	편입(예정)		소집(예정)		소집해제(예정)		현복무인원 (B-C)	대기자 (A-B)
	인원	누계(A)	인원	누계(B)	인원	누계(C)		
2020	730	730	106	106	-	-	106	624
2021	1292	2022	545	651	4	4	647	1371
2022	540	2562	403	1054	4	8	1046	1508
2023	540	3102	429	1483	98	106	1377	1619
2024	540	3642	626	2109	545	651	1458	1533
2025	540	4182	591	2700	403	1054	1646	1482
2026	540	4722	463	3163	429	1483	1680	1559
2027	540	5262	626	3789	626	2109	1680	1473
2028	540	5802	591	4380	591	2700	1680	1422
2029	540	6342	463	4843	463	3163	1680	1499
2030	540	6882	626	5469	626	3789	1680	1413
2031	540	7422	540	6009	591	4380	1629	1413
2032	540	7962	463	6472	463	4843	1629	1490
2033	540	8502	617	7089	626	5469	1620	1413
2034	540	9042	540	7629	540	6009	1620	1413
2035	540	9582	463	8092	463	6472	1620	1490
2036	540	10122	617	8709	617	7089	1620	1413
2037	540	10662	540	9249	540	7629	1620	1413
2038	540	11202	463	9712	463	8092	1620	1490

주: 1. 2022년 5월 19일 기준

2. 최근 10년간 병역거부자 평균 인원이 556명을 감안하여 2022년부터는 편입 예정인원을 540명(국방부·병무청과 협의된 인원 1,620명/3년)으로 산정

3. 2034년부터는 그해 소집해제 되는 인원 만큼만 소집을 하므로 복무인원은 1,620명으로 유지

자료: 법무부

13) 대체복무요원이 신규로 소집되어 3년간 복무를 한 후 소집해제 된 다음 해부터 6년간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이행해야하며(대체역법 제26조), 34개 대체복무기관에 분산되어 매년 3박 4일 간 합숙복무를 해야한다. 따라서 각 기관에 예비군대체복무자들이 합숙하는 생활실을 운영해야하므로 2031년부터는 정원을 1,620명으로 조정하여 생활실을 추가 확보하려는 계획이다.

다만, 이를 바탕으로 2031년도 이후 정원을 1,620명으로 조정하는 경우, 매년 편입 예정인원 540명과 연평균 소집인원 540명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기인원 규모는 1,400여명으로 유지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매년 대체역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2.6년간 대기¹⁴⁾ 후에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게 된다. 이는 전술¹⁵⁾한 바와 같이 타 병역과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대체복무제 시행 초기에 편입신청이 집중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던 소집적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속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는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대체역 소집적체의 적정한 수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체복무요원 정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체역법」 개정을 통하여 교정시설 외 복무분야를 다양화 하거나 복무형태를 변경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2.6년 = 1400명 ÷ 540명

15) 이와 관련하여 1-1에서 상세히 분석하였다.

가. 현 황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¹⁾은 검찰의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으로 검찰수사지원 사업, 수사일반 사업, 공공수사 사업,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사업, 마약수사 사업, 성범죄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단속 사업, 민관유착비리 등 사회 공정성 저해 사범 단속 사업 등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청은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의 2021년도 예산액 1,511억 7,000만원 중 93.6%인 1,415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100만원을 이월하고, 34억 5,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추경(A)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151,170	△6,031	145,139	141,558	93.6	131	3,450
검찰수사지원	28,416	△800	27,616	27,080	95.3	45	491
수사일반	88,508	△3,929	84,578	82,830	93.6	86	1,662
공공수사	4,899	△87	4,812	4,712	96.2	0	100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13,912	△600	13,312	12,967	93.2	0	345
마약수사	4,876	△95	4,781	4,190	85.9	0	591
성범죄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단속	3,410	0	3,410	3,302	96.8	0	108
민관유착비리 등 사회 공정성 저해 사범 단속	7,150	△520	6,630	6,475	90.6	0	15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335

나. 분석의견

형사사법제도 개정 후 처음 시행한 검찰 예산 재구조화 내역²⁾과 2021년도 수사 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의 집행내역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와 같은 차이에 더하여 2021년도 이후의 검찰 수사 관련 현황, 법령 및 직제 개정사항, 코로나19 상황 변동 등에 따른 검찰 업무량 변화 등을 지속적·다각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형사사법제도의 개정이 검찰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월 개정된 형사사법제도 시행으로 사법경찰관에 대한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되는 등의 수사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검사의 수사 대상 범위가 변경되었다. 수사 대상 범위의 변경은 수사에 소요되는 예산 변경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법제도 개정 전 후 수사 대상 범위 변경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형사사법제도 개정 전 후 사법경찰관이 송치(혹은 송부)하는 사건 중에서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의 수를 살펴보았다. 형사사법제도 개정 전에는 검사가 송치 전에도 수사지휘가 가능하였으므로, 송치된 모든 사건이 수사 대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도의 경우에는 기소의견 송치, 불기소의견 송치, 기타의견 송치 건수의 합인 총 송치 건수 112만 4,617건의 전부(100%)가 검사의 수사 대상에 속하게 된다.

[연도별 사법경찰관 송치 건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송치 건수	1,367,807	1,248,284	1,260,020	1,124,617
기소의견 송치	836,543	741,835	721,282	686,219
불기소의견 송치	402,593	383,344	395,650	377,796
기타의견 송치	128,671	123,105	143,088	160,602

주: 기타의견 송치는 기소유예·기소중지·가정보호사건·소년보호사건·타관이송 등 기타의견 송치한 경우

자료: 법무부

2)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수행하였으며, 202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재구조화를 진행하였다.

반면, 2021년 개정된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으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³⁾,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⁴⁾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 송부를 한 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수사의 주체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다.⁵⁾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 순송치 및 송부 건수⁶⁾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의 순송치 및 송부 건수는 116만 8,159건으로 2020년도의 112만 4,617건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불송치 기록송부 사건의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검토한 후 재수사요청 등 여부를 결정할 뿐, 직접 보완수사하지는 못한다.⁷⁾⁸⁾ 다만, 불송치 기록송부 사건 중 고소인 등이 이의

3) 개정된 형사사법제도에 의하면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4) 개정된 형사사법제도에 의하면 검사는 송치된 사건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불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권을 가진다.

5)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

6) 순송치 및 송부 건수의 개념은 형사사법제도 개정 전 사법경찰관의 송치 건수와 대응하여 만든 개념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는 사법경찰관이 전 건에 대해 송치하였는데, 송치 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더라도 검찰 사건번호가 유지되어서, 한번 송치된 사건이 통계상 다시 송치 건수로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형사사법제도 개정 후에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하는 경우 검찰 사건번호가 사라지고, 보완수사 이후 사법경찰관이 같은 사건을 다시 송치하게 되었고,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경우에도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법경찰관이 송부하였던 같은 사건을 다시 송치하게 되었다. 이처럼 통계상 중복되는 사건을 배제하고자 순송치 개념이 만들어 진 것이다.

7) 다만, 법무부는 형사사법제도 개정 전 후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집중하고 있고, 종전과 달리 이러한 부분에서는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1년에 기소의 건으로 송치된 사건(692,606건) 중 85,325건(12.3%)에 대하여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2020년에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통해 보완을 요구한 건수(40,90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에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28,893건 중 2,326건(8.1%)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 재신청 지휘를 하였는데, 2021년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26,559건 중 2,964건(11.2%)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보완수사요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입장이다.

신청을 제기한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직접 보완수사의 대상이 된다. 이를 고려하여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대상이 되는 건수는 71만 7,654건으로 순송치 및 송부 건수 116만 8,159건 중 61.4%인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 사법경찰관 순송치 및 송부 건수]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중
순송치 건수(A-B-C)	692,606	59.3
사법경찰관 송치 건수(A)	787,008	67.4
보완수사 후 송치 건수(B)	69,354	5.9
이의신청 송치 건수(C)	25,048	2.1
총 송부 건수(D)	475,553	40.7
불송치 송부 건수	389,132	33.3
수사중지 송부 건수	86,421	7.4
순송치 및 송부 건수	1,168,159	100.0
검사의 수사 대상 건수(A-B)	717,654	61.4
검사의 수사 대상 제외 건수(D-C)	450,505	38.6

- 주: 1. 보완수사 후 송치 건수는 사법경찰관 송치 건수에 중복해서 계상되므로 순송치 건수에서는 제외됨
 2. 이의신청 송치 건수는 불송치 송부 건수에 포함되어 있는 동시에 사법경찰관 송치 건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송치를 결정한 건수를 의미하는 순송치 건수를 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 송치 건수에서 포함된 부분을 제외함

자료: 법무부

다음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정 전 후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의 변경에 따른 직접 수사 건수 변동을 살펴보았다. 형사사법제도 개정 후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사법경찰관 신청 영장 건수]

구 분	사법경찰관 신청 영장 건수	보완수사요구 건수(재신청지휘)	비율
2020	28,893건	2,326건	8.1%
2021	26,559건	2,964건	11.2%

자료: 법무부

- 8) 또한, 법무부는 형사사법제도 개정 전 후에 사법경찰관이 송치 또는 기록송부한 사건을 검사가 개입하여 달리 처분한 사건의 비율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사건 대비 8~9% 유지)

필요한 분야에 한정되는데,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에 대하여는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의 처리건수는 2020년도 4만 3,487건에서 2021년도 3만 2,173건으로 26.0% 감소하였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 중 기소중지, 이송, 법원송부 등으로 처리된 기타 건수를 제외한 기소·불기소 처리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3만 5,438건 대비 2021년 1만 7,917건으로 49.4% 감소하였는데, 이는 각각 검찰 직접접수 고소·고발 사건 1만 5,454건 감소(△53.0%) 및 검사인지 사건 2,067건 감소(△32.9%)의 영향이 있었다.⁹⁾

[연도별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 처리건수]

(단위: 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A+B)	기소·불기소	38,811	35,849	36,102	35,438	17,917
	기 타	10,706	9,324	10,741	8,049	14,256
	합 계	49,517	45,173	46,843	43,487	32,173
검찰 직접접수 고소·고발 사건(A)	기소·불기소	28,021	27,147	28,711	29,147	13,693
	기 타	10,201	8,912	10,408	7,798	14,033
	합 계	38,222	36,059	39,119	36,945	27,726
검사인지 사건(B)	기소·불기소	10,790	8,702	7,391	6,291	4,224
	기 타	505	412	333	251	223
	합 계	11,295	9,114	7,724	6,542	4,447

주: '기타'는 기소중지, 이송(사법경찰관 이송은 제외), 법원송부, 보호사건처분, 보완수사요구(2021년 이후) 등이 포함됨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은 형사사법제도 개정은 2021년도 법무부 예산 편성 시에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부터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검찰 예산 재구조화'(이하 "검찰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예산에 반영되었다. 검찰 예산 재구조화는

9) 이는 검찰청 직제규정 개정(「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021.7.2. 시행)에 따라 검찰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약 41개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검찰 직접수사가 일시적으로 축소된 점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직접수사를 제한한 해당 직제규정 조항은 재차 개정(2022.7.4. 시행)되어 삭제되었다.

2021년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정부안 편성 시 직접수사 관련 5개 사업(공공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마약수사, 사회적약자 대상범죄단속, 사회공정성저해사범단속)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찰 예산 재구조화 결과 5개 세부사업에서 합계 43.3억원(△12.6%)을 감액하고, 이후 추가 감액·증액 소요를 반영하여 2022년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시 검찰 예산 재구조화 현황 등]

(단위: 백만원)

사업별	2021년 예산(A)	검찰예산 재구조화 ¹⁾ (B)	기타 증감액 (C)	2022년 예산안 (A+B+C)	2022년 확정 예산
공공수사	4,899	△619	161	4,441	-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13,912	△1,759	18	12,171	△50
마약수사	4,876	△616	125	4,385	-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3,410	△431	642	3,621	228
사회공정성저해사범수사	7,150	△905	△25	6,220	-

주: 1)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검찰 예산 재구조화(12.6% 감액)를 의미
자료: 법무부

이를 비목별로 정리하면, 감액규모 43억 3,000만원 중 43.0%(18억 6,200만원)는 일반수용비 감액이, 29.7%(12억 8,500만원)는 특정업무경비 감액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찰 예산 재구조화의 비목별 감액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일반 수용비	특정업무 경비	공사비	국내 여비	자산 취득비	특근 매식비	업무 추진비	포상금
금액	1,862	1,285	221	215	206	200	177	164
비중	43.0	29.7	5.1	5.0	4.8	4.6	4.1	3.8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검찰 예산 재구조화는 2021년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2021년도 형사사법제도의 개정이 실제로 예산의 집행에 미친 영향과 비교하기 위하여 2021년도 예산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만, 검찰의 경우 직접수사와 관련된 5개만을 검찰예산 재구조화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형사사법제도의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뿐만 아니라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범위도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 내 7개 세부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집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검찰 예산 재구조화 내역을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의 집행내역과 비목별로 비교하면, 2021년도 추경 예산과 집행액을 비교했을 때 미집행된 부분은 상용임금, 국내여비, 임차료, 특근매식비, 유류비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 예산 재구조화 감액 내역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¹⁰⁾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 집행내역 및 검찰 예산 재구조화 내역]

(단위: 백만원)

비 목	2021		A-B	검찰 예산 재구조화 감액규모
	추경예산(A)	집행액(B)		
상용임금	27,346	23,105	4,241	-
국내여비	3,878	2,050	1,828	215
임차료	2,662	1,360	1,302	-
특근매식비	2,532	1,875	657	200
유류비	865	503	362	-
특정업무경비	45,398	45,395	3	1,285
일반수용비	23,531	24,179	△648	1,862
기타	44,959	43,089	1,870	768
합 계	151,171	141,556	9,615	4,330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다만, 법무부는 상용임금, 국내여비, 특근매식비, 유류비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대면조사 및 압수·수색 등의 일시적 감소로 인하여 미집행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0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1년도는 전년 대비 해당 비목에 대한 집행이 더욱 부진했었다는 점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021년도는 형사사법제도 개정 후 시행 첫 연도이므로,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형사사법제도 개정에 따른 실제 소요를 반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라 대면조사, 압수·수색 및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가 축소되는 경향으로 인한 영향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2021년 이후에도 형사사법제도의 개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형사사법제도 개정으로 인한 검찰 업무의 변동량을 명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에 2021년도의 검찰 수사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이후의 검찰 수사 관련 현황, 법령 및 직제 개정사항, 코로나19 상황 변동 등에 따른 검찰 업무량 변화를 지속적·다각적으로 모니터링 하여,¹¹⁾ 형사사법제도의 개정이 검찰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 예컨대, 검찰의 업무량 및 수사량을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인 '검찰 생산기록 쪽수'를 살펴보면, 사법경찰관 불송치 사건(475,553건)에 대하여 검찰 생산기록 제외,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등으로 전체 검찰 생산기록 쪽수는 2021년에 5,800,118쪽(17.4%)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량을 측정하는 척도인 검찰 생산기록 쪽수는 2021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전체 건당 평균 검찰 생산기록 쪽수는 2021년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와 같은 측면에서는 형사법령 개정 이후 검찰 수사 업무량이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검찰 생산기록 쪽수]

구 분		처리 건수(건)	검찰 생산기록 쪽수(쪽)	건당 평균 검찰 생산기록 쪽수(쪽)
전체 사건	2020	1,525,936	33,440,103	21.9
	2021	1,035,143	27,639,985	26.7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	2020	1,171,135	12,130,505	10.4
	2021	795,436	12,620,538	15.9

주: 2021년 사건에서 사법경찰관 불송치 사건 제외
자료: 법무부

III

개별 사업 분석

1

타 사업 예산을 활용한 신규 사업 추진 지양 필요

가. 현 황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¹⁾은 상사 관계 법령의 체계적 정비
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성장동력 기반 확충 및 경제 활
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34억 5,900만원 중 33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²⁾은 국제거래 규범 성안·도입, 국제 법무
교류·협력, FTA 등 통상협상 참가, 법률시장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법무부는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8억 9,200만원 중 8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스타트업 법률지원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3,409	3,409	50	3,459	3,348	96	14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1,022	1,022	△130	892	878	0	14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033-304

2) 코드: 일반회계 1032-300

법무부는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 예산 및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 예산을 통하여 당초에 편성하지 않았던 ‘스타트업 법률지원 관련 사업’을 비공식적으로 신설·추진하였다.

스타트업 법률 지원 관련 사업은 스타트업 창업·사업, 해외진출 과정 등에서 겪는 법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 법률지원을 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온라인 법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률상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무실의 상사법무과 및 국제법무과에서 공동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의 경우 ‘스타트업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중재 및 기업법제 선진화 연구 내역사업 예산에서 1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홍보영상 및 교육강의 제작을 위하여 8,300만 원을 집행하였다.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의 경우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 명목으로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상담·강의료, 인쇄비, 행사비, 영상 및 교육강의 제작비, 광고료 등 총 1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다. 따라서 스타트업 법률지원 관련되어 집행된 예산액은 총 3억 2,500만원이다.

[스타트업 법률지원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집행내역	집행액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스타트업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	123
	스타트업 법률지원 홍보영상, 교육강의 제작	83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스타트업 법률상담·강의료	26
	인쇄비	9
	스타트업 법률지원 행사	20
	스타트업 법률지원 홍보영상, 교육강의 제작	32
	스타트업 법률지원 광고료	31
	기타	1
합 계		325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스타트업 법률지원 관련 사업 추진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스타트업 법률지원 관련 사업은 타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신규 추진되었는데, 동 사업은 사실상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행위는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동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도 면밀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률지원 관련 사업은 크게 ① 스타트업 법률지원 행사 진행, ② 스타트업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이하 “스타트LAW”) 구축, ③ 스타트업 법률지원 교육강의 등 제작, ④ 스타트업 법률지원 광고 등의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① 스타트업 법률지원 행사는 스타트업 창업·사업, 해외진출 과정 등에서 겪는 법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정책현장에서 법무부 장관 간담회 및 1:1 법률상담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 2일 상사법무과 및 국제법무과의 공동 개최로 진행되었다.

② 스타트LAW 구축 사업은 스타트업의 창업·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대응하여 비용·접근 기회의 제약 없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신생기업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관련 법률정보를 총망라한 스타트업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창업 준비자 및 창업경영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방문만으로 ‘원스톱’으로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지향하며, 창업단계별, 운영·자금조달·지식재산 등 분야별, 업무 내용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스타트업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 '스타트LAW' 개요]

구 분	내 용			
개요	- 창업 준비자·창업경영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방문만으로 '원스톱'으로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지향			
구성	- 변호사 등 전문가가 감수한 창업 가이드 게재 및 창업 준비자 등 정보 수요자와 변호사·경험자 등 정보공급자 사이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적절한 다수의 정보가 상시로 제공·교류될 수 있도록 구성			
	실무서	운영 가이드	교육자료	법률지원 신청
	•창업Map-Book •법무 Check-List •분쟁대응 Manual	•기업금융 Guide •지식재산 Guide •세무회계 Guide	•기업법무 사례강의 •동영상 법률강의 •블랙보드 게시판	•9988 법률지원 •혁신센터 법률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내용	창업단계별, 운영·자금조달·지식재산 등 분야별, 업무 내용별 정보 제공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③ 스타트업 법률지원 교육강의 등 제작은 중소기업·스타트업들이 사업 및 해외 진출에서 법적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나 해당 지식의 부재로 문제가 심화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경영진·실무자들이 창업·사업 및 해외진출에서 겪는 법적 이슈별 기초 강의를 촬영하고 스타트LAW 등에 배포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법률지원 광고는 법무부에서 수행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툼'에 배너광고를 진행하였다.

스타트업 법률지원 관련 사업은 2021년도에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법무부는 2021년도 예산에 동 사업을 반영하지 않고 회계연도 중 타 사업 예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³⁾하였다.

스타트LAW 구축의 경우 법무부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사업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동일한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을 서

3) 2021년도의 경우 ①~④ 사업 모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 예산^②과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 예산^{①, ③, ④}을 통해 집행되었다.

로 다른 세부사업을 통하여 집행하는 것은 사업 운영 및 성과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의 경우 구축된 이후에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필요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법무부는 2022년에는 관련 사업을 편성·추진한 바 없으나 2023년에는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사업에서 플랫폼(스타트LAW) 유지·보수를 위한 1,800만원 및 콘텐츠 확보를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국제법무과에서 제작한 홍보영상과 교육강의의 경우 당초의 계획과 달리 스타트LAW 플랫폼에 게재되지 않아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사실상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이 요구되는 신규사업을 국회의 심의 없이 타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행위는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동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도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 사업과 중재 및 기업법제 선진화 연구 사업은 자문 수요 및 연구 수요에 대한 면밀한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서 집행 부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는 향후 동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 예산을 통해 스타트업 법률지원 관련 사업을 집행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료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스타트업 법률지원 행사 개최 및 홍보영상·교육강의 제작을 위하여 집행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등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성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자문료 예산의 집행률이 2021년 기준 43.4%로 낮아 불용이 예상되자, 해당 예산을 이용하여 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료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연도	예산		집행	
	금액	내역	금액	내역
2019	41,990	840건 × 50	71,503	149건 × 480
2020	159,600	462건 × 345	63,866	210건 × 304
2021	159,600	462건 × 345	69,297	185건 × 375

자료: 법무부

다음으로,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 예산을 통해 스타트업 법률지원 관련 사업을 집행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법무부는 중재 및 기업법제 선진화 연구 내역사업 예산을 스타트업 LAW 구축을 위하여 집행하였는데, 중재 및 기업법제 선진화 연구 사업은 선제적 연구로 상사관계 법령의 체계적 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와 무관한 스타트업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을 집행하게 되면서 당초 계획한 중재 및 기업법제 선진화 연구는 일부 집행되지 못하였다.⁴⁾

[2021년도 중재 및 기업법제 선진화 연구 내역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	금액	집행	금액
중재 및 기업법제 선진화 연구	130	기업경영효율화를 위한 법률 개선 방안 연구	20
기업법제 선진화 관련 연구	100	기업구조조정제도 통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연구	20
신탁 등 금융법제 관련 연구	30	상법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단계별 연구	20
동 세부사업 일반수용비를 전용	28	전자어음입법 방안 연구	35
동 세부사업 임차료를 전용	10	스타트업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	123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국외여비를 전용	50	-	-
계	218	계	218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동 세부사업의 홍보영상 및 교육강의 제작을 위하여 동 세부사업에 편성된 여러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 일부를 모아 집행하였는데, 기존 사업의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법무부는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하여야 할 홍보영상·교육강의 제작비 3,2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영상자료 제작비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점,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 집행지침]

비목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일반수용비 (210-01)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소송 및 법률자문 비용, 위원회 참석비,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 등 규정 - 자산취득비, 공사비,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안됨
일반용역비 (210-14)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용,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따라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 사업과 중재 및 기업법제 선진화 연구 사업은 자문 수요 및 연구 수요에 대한 면밀한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서 집행 부진이 나타났으며, 일부 예산의 경우 적절하지 않은 비목으로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는 향후 동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 및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를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법률구조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액 515억 6,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률구조	53,516	53,516	0	0	53,516	53,516	0	0
대한법률구조공단	51,560	51,560	0	0	51,560	51,56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²⁾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³⁾에 따라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지부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의 내역사업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에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쌍방이 수긍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정위원회 지원을 위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도 예산은 33억 4,300만원이 편성되어, 31억 2,800만원(93.6%)이 집행되었다.

[2021회계연도 임대차분쟁조정 관련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 세부 내역
	예산액	결산액	
인건비	2,451	2,451 ¹⁾	42명(사무국장 6명, 심사관 12명, 조사관 18명 등)
경상비	139	56 ¹⁾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비	753	621	조정활동비, 청사취득 및 관리, 업무전산화비, 기관운영 경비, 조정제도 조사연구, 법계몽 활동비 등
합계	3,343	3,128	-

주: 1) 2019년부터 법률구조 사업과 통합 운영으로 일부 경비 구분 산출 곤란

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사업은 2017~2018년에 별도 세부사업이었으며, 2019년부터 법률구조 사업에 통합 편성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해결률이 타 기관의 조정위원회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경우 접수 건수 및 분쟁 해결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법무부는 조정위원회의 조정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2017년에 접수된 1,088건의 사건을 시작으로 2018년도에는 2,515건이 접수되었고, 이후에는 접수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2021년도에는 1,635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분쟁 해결 실적도 2018년 1,235건에서 2021년 606건(299건은 조정 성립, 307건은 화해 취하⁴⁾)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며, 분쟁 해결률도 2018년 48.6%에서 2021년 37.6%로 1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단위: 건, %)

연도	접수 건수 (A)	처리 건수							분쟁 해결률 (C/B)
		소계 (B)	분쟁 해결(C)			조정 불성립	각하	기타	
			조정 성립	화해 취하					
2017 (설립)	1,088	892	435	266	169	37	284	136	48.8
2018	2,515	2,541	1,235	653	582	63	799	444	48.6
2019	2,192	2,243	937	458	479	41	925	340	41.8
2020	1,536	1,491	542	272	270	27	778	144	36.4
2021	1,635	1,611	606	299	307	133	693	179	37.6

- 주: 1. 접수 건수는 당해연도에 신규 접수된 건수만을 대상으로 함
 2. 처리 건수는 구수사건(전년도 접수되어서 당해연도에 종결된 사건) 건수 포함
 3. 각하는 중복신청, 임대차 분쟁이 아닌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불응의사 통지 등의 사유
 4. 기타는 취하, 미조정결정, 이송의 경우
 5.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중앙 2017년 5월 30일,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2017년 7월 1일 설립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또한, 2019년 4월 설립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을 살펴보면,

4) 화해 취하란 취하된 사건 중에서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된 경우를 의미한다. 임대차분쟁에 조정위원회가 개입한 후 당사자의 자발적인 화해로 분쟁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조정 성립과 다름 없다고 볼 수 있어, 분쟁 해결 실적으로 보고 있다.

접수 건수는 2019년 499건, 2020년 482건, 2021년 493건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분쟁 해결률 또한 2019년 30.0%(136건), 2020년 27.5%(133건), 2021년 30.4%(154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단위: 건, %)

연도	접수 건수 (A)	처리 건수							분쟁 해결률 (C/B)
		소계 (B)	분쟁 해결(C)			조정 불성립	각하	기타	
				조정 성립	화해 취하				
2019 (설립)	499	454	136	75	61	14	247	57	30.0
2020	482	483	133	69	64	11	300	39	27.5
2021	493	506	154	74	80	32	258	62	30.4

- 주: 1. 접수 건수는 당해연도에 신규 접수된 건수만을 대상으로 함
 2. 처리 건수는 구수사건(전년도 접수되어서 당해연도에 종결된 사건) 건수 포함
 3. 각하는 중복신청, 임대차 분쟁이 아닌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불응의사 통지 등의 사유
 4. 기타는 취하, 미조정결정, 이송의 경우
 5.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4월 설립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관 조정위원회와의 비교⁵⁾를 위하여 서울시⁶⁾에서 운영하는 조정위원회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2016년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다. 동 조정위원회의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분쟁 해결률은 50% 안팎으로 나와, 2021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해결률 37.6%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해결률 30.4%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참고로, 임대차 및 임대인이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임대차분쟁조정을 진행하는 중에 타 기관 소관 조정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혹은 조정위원회를 통한 임대차분쟁조정이 종결된 후에 타 기관 소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하하거나 미접수 처리한다.

6)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관 조정위원회와 타 기관 소관 조정위원회를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것은 두 기관의 조정위원회는 2020년 11월부터 도입한 바, 제도 초기 단계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 소관 조정위원회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관 조정위원회 보다 이르게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관 조정위원회와의 비교가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단위: 건, %)

연도	접수 건수 (A)	처리 건수				분쟁 해결률 (C/B)
		소계 (B)	분쟁 해결 (C)	조정 불성립	각하	
2017	71	71	38	6	27	53.5
2018	97	97	56	6	35	57.7
2019	114	114	67	7	40	58.8
2020	66	66	35	7	24	53.0
2021	69	69	39	12	18	56.5

- 주: 1. 접수 건수는 당해연도에 신규 접수된 건수만을 대상으로 함
 2. 처리 건수는 구수사건(전년도 접수되어서 당해연도에 종결된 사건) 건수 포함
 3. 분쟁 해결 건수는 조정 성립 건수와 화해 취하 건수를 포함
 4. 각하는 임대차 분쟁이 아닌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불응의사 통지 등의 사유
 자료: 서울시

[서울시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단위: 건, %)

연도	접수 건수 (A)	처리 건수				분쟁 해결률 (C/B)
		소계 (B)	분쟁 해결 (C)	조정 불성립	각하	
2017	77	77	36	8	33	46.8
2018	154	154	83	4	67	53.9
2019	180	180	91	17	72	50.6
2020	192	192	92	15	85	47.9
2021	185	185	93	12	80	50.3

- 주: 1. 접수 건수는 당해연도에 신규 접수된 건수만을 대상으로 함
 2. 처리 건수는 구수사건(전년도 접수되어서 당해연도에 종결된 사건) 건수 포함
 3. 분쟁 해결 건수는 조정 성립 건수와 화해 취하 건수를 포함
 4. 각하는 임대차 분쟁이 아닌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불응의사 통지 등의 사유
 자료: 서울시

이와 같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조정위원회의 경우 분쟁 해결률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조정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향후 당사자 간에 임대차분쟁에 대한 조정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관 조정위원회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분쟁 당사자들에게 위원회 참석 편의를 제공하고 당사자 생업에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분쟁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소재 자치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요 상권 임대료, 권리금, 임대차 기간, 매출액 등 임대차 정보를 수집하여 분쟁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관 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시 등에서 실시하는 제도와 같이 임대차분쟁조정 접수건수를 늘리고 조정에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21년도에는 타 기관 소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관 조정위원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조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조정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20. 7. 31.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뿐만 아니라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③ 한국부동산원⁷⁾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각 소관별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전국 12개 지역(한국토지주택공사 지부 6개, 한국부동산원 지사 6개)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에 조정위원회를 추가 개소하였으며, 서울, 강원, 인천, 경기, 세종, 충북, 경북, 울산,

7) 근거법률에는 “한국감정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한국감정원은 근거법률인 「한국감정원법」이 2020년 6월 9일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로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경남, 전북,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첩적으로 관할하게 되었다.

[시·도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위원회 관할 현황]

구 분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서울	서울중앙지부		서울동부지사
강원			춘천지사
인천	수원지부	인천지역본부	
경기		경기지역본부	경기서부지사
대전	대전지부		
세종	대전지부		대전지사
충북		충북지역본부	
충남			
대구	대구지부		
경북			포항지사
부산	부산지부		
울산		부산울산지역본부	
경남		경남지역본부	
전북	광주지부		전주지사
전남			
광주			
제주		제주지역본부	

주: 음영은 관할이 중첩되는 지역임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액 85억 3,800만원 중 58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 9,400만원을 불용하였다.⁸⁾

8) 국토교통부는 12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예산으로 85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법무부는 6개의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예산으로 33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토교통부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8,538	8,538	8,538	5,844	68.4	2,694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 소관 12개 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사무국장 12명, 심사관 12명, 조사관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관 6개 조정위원회의 구성인 사무국장 6명, 심사관 12명, 조사관 18명, 실무관 6명에 비하여 1개 기관 당 인원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인적 구성 현황]

소 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인적 구성
대한법률구조공단	(42명) 사무국장 6명, 심사관 12명, 조사관 18명, 실무관 6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	(66명) 사무국장 12명, 심사관 12명, 조사관 42명

자료: 법무부, 국토교통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조정위원회의 조정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 접수된 조정 접수 총 건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인 경우 1,988건이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인 경우 623건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모두 약 80%의 조정 사건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접수가 이루어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합 계	
	주택	상가	주택	상가	주택	상가	주택	상가
2017	1,088	-	-	-	-	-	1,088	-
2018	2,515	-	-	-	-	-	2,515	-
2019	2,192	499	-	-	-	-	2,192	499
2020 ¹⁾	1,536	482	34	11	10	2	1,580	495
2021	1,635	493	166	62	187	68	1,988	623
(비중)	(82.2)	(79.1)	(8.4)	(10.0)	(9.4)	(10.9)	(100.0)	(100.0)

주: 1)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도 11월부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

1. 비중은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조정위원회의 설치 기관을 다양화하고 설치 지역을 확대한 것은, 조정위원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조정위원회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며, 설치 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 조정위원회에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조정위원회에 대한 접근성이 일정 부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2021년도 법무부 및 국토교통부 편성 예산 기준 약 33억에서 119억으로 약 3.6배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적 제고 정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 소관별 조정위원회 관할이 중첩되기 때문에 조정 접수 건수의 구축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나, 조정위원회 설치 기관의 다양화를 통해 조정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조정위원회 운영이 안정화되는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의 조정위원회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관 조정위원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조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임대차분

쟁 조정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조정사례 및 업무 노하우 공유, 조정위원 교환·파견, 임대차 정보 수집 및 교환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무부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방식이 아닌 법정민간대행사업비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한 경우,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조정서 정본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56조⁹⁾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집행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공증인의 공정증서¹⁰⁾의 경우에도 해당 증서의 작성에 대해서 국가사무로 관리되고 있는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정본을 작성하는 직무도 국가사무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¹¹⁾도 ‘공증

9)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10) 집행권원은 본래 「민사집행법」 제28조에 따라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부여되는 것이나,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그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그 중 제4호는 ‘공증인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것’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확정판결의 효력 없이도 집행권원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공증인은 「공증인법」 제2조에 따라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제10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활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증사무는 국가사무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 공증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공증인 인가·임명행위는 국가가 사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공증인 인가·임명행위는 국가가 사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로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정본 작성 등의 조정 업무의 경우 국가 사무로, 국가사무를 법령에 의해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320-01목)가 아닌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의 경우에도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동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할 사업으로서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민간에 대행시키는 경우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증인법령은 공증인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절차를 자세하게 규율하지 않은 채 법무부장관에게 맡겨두고 있다. 위와 같은 공증인법령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공증사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에게는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공증업무의 수요, 주민들의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12.13. 선고 2018두41907판결)

가. 현 황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사업¹⁾은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 등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교육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무부는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액 86억 4,100만원 중 85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8,641	8,641	0	0	8,641	8,508	0	133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원율은 2021년도 기준 63.3%이며, 이에 따라 정신과 의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170명으로 적법한 기준(60명)의 약 2.8배에 이르므로,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원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634-300

강구할 필요가 있다.

치료감호시설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²⁾(이하 “치료감호법”)에 따른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입원치료시설로서 형사재판에서 치료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의 치료와 형사절차 진행 중인 자의 정신장애 유무 및 정도를 판별하는 형사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현재 충청남도 공주에 소재한 국립법무병원³⁾과 경상남도 창원 소재 부곡법무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국립법무병원은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정신재활치료과 등의 8개 과로 이루어진 의료부와, 약물중독재활센터, 행정지원과 및 감호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은 병동 121,543m²(17개 병동, 1200병상), 사무실 및 가정관 등 19,430m², 비상대기소 4,45m²(4동 69세대) 등이 있다.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과 의사의 경우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업무와, 형사정신감정 업무, 정신과 전공의 수련 지도전문의 역할, 피치료감호자 가종료(종료 포함)를 위한 심사 서류 작성,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명령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5년간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자 수용 현원은 약 1,000명 내외로, 이와 같은 치료감호자를 담당하는 정신과 의사의 수는 5.5명~8.5명 사이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21년도의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의 정원은 15명임에도 현원은 5.5명으로 결원은 9.5명인 바, 결원율이 정원 대비 63.3%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과 의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1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의 치료감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립법무병원

2.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3) 2022년 7월 5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이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교정시설로만 인식되어 온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대외적 인식을 제고하고, 외부 의료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의료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5년간 국립법무병원 의사 정·현원 및 1인당 담당 환자 수]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
정원	계	20	20	20	20	20
	정신과	14	15	15	15	15
	일반진료과	6	5	5	5	5
현원	계	8	11	11.5	8.5	10.5
	정신과	6	8	8.5	5.5	7
	일반진료과	2	3	3	3	3.5
수용인원		1,086	1,022	1,038	935	820
정신과 의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181	128	122	170	117

자료: 법무부

「치료감호법」⁴⁾ 및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⁵⁾에 따르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립법무병원장은 피감호자가 입소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인을 담당의사로 지정하고, 그 담당의사는 피감호자의 출소시까지 모든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⁶⁾(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⁷⁾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입원환자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피치료감호자의 처우)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5)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6조(담당의사) ① 원장은 피감호자가 입소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인을 담당의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의사는 피감호자의 출소시까지 모든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담당한다.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다. 이 경우 「의료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60명당 1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 등의 시정명령 및 사업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⁸⁾

이를 종합하면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과 의사 1인당 적절한 담당 환자수 기준은 60명인 바, 2021년도 국립법무병원의 경우 담당 환자수가 정신과 의사 1인당 170명으로 적절한 기준의 약 2.8배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준연봉의 200~232% 수준으로 급여를 조정하여, 민간 정신과 의사 급여의 약 59~83%로 상향 개선하였음에도 여전히 민간 병원 대비 처우가 열악하고, 국립법무병원이 읍·면지역(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소재하여 근무여건 및 정주여건이 좋지 못하며, 일반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에 의한 정신과 의사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범죄성향이 있는 범법정신질환자 진료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여 정신과 의사의 결원율이 높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원율을 낮추기 위하여, 동 직위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보수 외에도 의사의 채용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경감⁹⁾, 연구·교육기능 강화 등의 업무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0.5명으로 본다.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9)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과 의사 정원 15명이 모두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국립법무병원의 피치료감호자의 정원이 1200명임을 고려할 때 1인당 담당하는 피치료감호자 수는 80명이다. 이는 여전히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관련 종사자 수 기준(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을 것으로 보인다.¹⁰⁾

둘째, 국립법무병원은 병동을 관리하기 위한 간호인력 부족으로 유후병동이 발생하고 있어 실제 보유 병상 수가 치료감호자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간호인력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립법무병원의 허가병상 수¹¹⁾는 국립법무병원의 치료감호자 정원과 동일하게 1200명이지만, 실제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는 보유 병상 수는 941명이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021.3.5.)에 따른 입원실 당 병상 수 단계별 축소(10인실→8인실) 및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1m) 등을 위해 운영 병상 수를 감소시킬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법무병원 병동별 치료감호자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명)

병동명	치료감호자		병동명	치료감호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검사	50	15	53	113	103
11	48	37	54	107	98
12	48	46	55	107	105
22	37	35	56	112	107
23	37	43	61	44	41
32	37	25	62	44	37
52	113	94	63	44	38
14개 병동 합계				941	824

주: 1. 치료감호자 정원 및 현원 현황은 2022년 6월 기준

2. 유후병동은 병동 13, 병동 31, 병동 64로 총 3개이며, 동 병동들의 정원은 129명임

자료: 법무부

10) 법무부는 보수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2022.7.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의무직 6명에 대한 보수인상을 실시하였으며, 형사정신감정 수당 인상(40만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 중에 있다.

또한 법무부는 현재 업무혁신 T/F 운영을 통해 의사들이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진료업무에 전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으로, 2023년 소요정원 요구 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0명 및 사회복지사 15명을 증원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연구·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제 개정을 통해 기존 약물중독재활센터를 중독재활정신의학연구센터로 기능전환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중독재활정신의학연구센터를 국내 유일의 범법정신질환자 치료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불모지인 국내 '법정신의학'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기능을 추가하여 치료기법 개발, 전문가 양성, 외부 공동연구 등을 통한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11) 허가병상 수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고 상의 병상 수를 의미한다.

국립법무병원은 3개의 유희병동이 존재하므로 동 유희병동을 활용하는 경우 운영 가능 병상 수는 1,070개로 늘어나게 되는데, 국립법무병원은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유희병동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와 같은 병상 수의 감소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의 치료감호 현원이 병상 수 대비 과도해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감호 가종료 인원을 확대하여 치료감호 현원을 줄이게 되면서 치료감호자 과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립법무병원 입·출소자 및 가종료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입소 인원	241	224	233	192	124
출소 인원	238	282	259	188	278
가종료 인원	226	252	235	172	263
치료감호 현원	1,137	1,086	1,022	1,038	935

주: 입소 인원엔 정신감정 의뢰는 제외함
자료: 법무부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가종료 인원을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2023년의 경우에는 입원실 병상 수 기준(8인실→6인실) 및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1m→1.5m)이 추가로 확대되므로, 국립법무병원은 이에 대비하여 유희병동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법무병원의 일반병동(50명 정원) 기준 1개 병동 최소 운영 인력은 15명이며, 확장 병동(120명 정원) 최소 운영 인력은 23명이다. 병동 최소 운영 인력은 2018년도에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교대 근무를 3교대로 전환 하면서 늘어난 것이다.

[국립법무병원 일반병동 기준 필요 간호인력 수]

(단위: 명)

합계	일근 (09:00~18:00)	낮번 (07:00~15:00)	초번 (15:00~23:00)	밤번 (23:00~07:00)	휴무
15	2	3	3	2	5

자료: 법무부

이를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14개 병동에 필요한 최소 간호인력을 산출해보면 일반병동 9개 및 확장 병동 5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간호인력의 수는 250명¹²⁾이며, 5급 이상 중간관리자 간호사 3명과 간호업무 외에 병동업무 지원을 위한 과서무, 병동 수용사고 관련 업무, 외부병원 호송 및 입원환자 감호 등에 배치된 17명의 간호인력을 고려하면 270명 정도의 간호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2021년도 간호인력 수는 현원 기준으로 279명, 2021년도 6월 기준으로는 271.5명으로, 유휴병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7년 이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충원율은 매년 약 93% 부근에 머무르고 있으며, 2022년도의 경우 87.3%로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법무병원 간호인력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간호		간호조무사		간호인력 합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충원율
2018	129	117.5	147	142	276	259.5	94.0
2019	129	115	147	141	276	256	92.8
2020	141	124.5	158	155	299	279.5	93.5
2021	141	130.5	158	148.5	299	279	93.3
2022	148	122.5	163	149	311	271.5	87.3

자료: 법무부

12) 일반병동 9개(검사병동, 병동 11, 병동 12, 병동 22, 병동 23, 병동 32, 병동 61, 병동 62, 병동 63)에 대하여 각각 간호인력은 15명이 필요하여, 총 135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확장병동 5개(병동 52, 병동 53, 병동 54, 병동 55, 병동 56)에 대하여 각각 간호인력은 23명이 필요하여, 총 115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합하면 병동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 간호인력 수 250명이 도출된다.

법무부는 유희병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개 병동 운영에 필요한 최소 간호사 수 15명을 고려하여 45명(3개 병동)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2023년 이후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¹³⁾에 따라 강화된 시설기준에 따라 병동을 운영하기 위하여 신규 병동(400병상, 현재 건설 중) 운영에 따른 123명의 간호인력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인력 정원을 확대한다고 하여도, 현재와 같이 결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규병동 운영 및 유희병동 운영 재개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간호인력 충원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 2021년 3월 5일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내용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고
		'21. 3. 5. ~ '22.12.31.	'23. 1. 1. ~	
입원실 면적	1인실 6.3㎡ 다인실 4.3㎡	1인실 6.3㎡ 다인실 4.3㎡	1인실 6.3㎡ 다인실 4.3㎡	현행 유지
입원실 병상 수	10병상 이하	8병상 이하	6병상 이하	
병상 간 이격거리	〈신 설〉	1m 이상	1.5m 이상	
입원실 손씻기 · 환기시설	〈신 설〉	즉시 시행	~	창문도 환기 시설에 포함
격리병실 설치	〈신 설〉	-	설치	화장실 및 세면시설
비상경보장치	〈신 설〉	즉시 시행	~	
화재감지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신 설〉	즉시 시행	~	
보안 전담인력	〈신 설〉	'21. 6. 5. 배치	~	

자료: 법무부

가. 현 황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¹⁾은 진술조력인을 양성 및 배치하여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증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액 15억 2,000만원 중 15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106	1,520	0	1,520	1,514	0	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진술조력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진술조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상근 진술조력인에 대한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근 진술조력인으로 근무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참고인, 증인 중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증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을 의미한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632-300의 내역사업

동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로 피해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하는 것은 2차 피해가 될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의 진술은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증거임에도 아동·장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으로 인해 실제 진실의 발견이 어려움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3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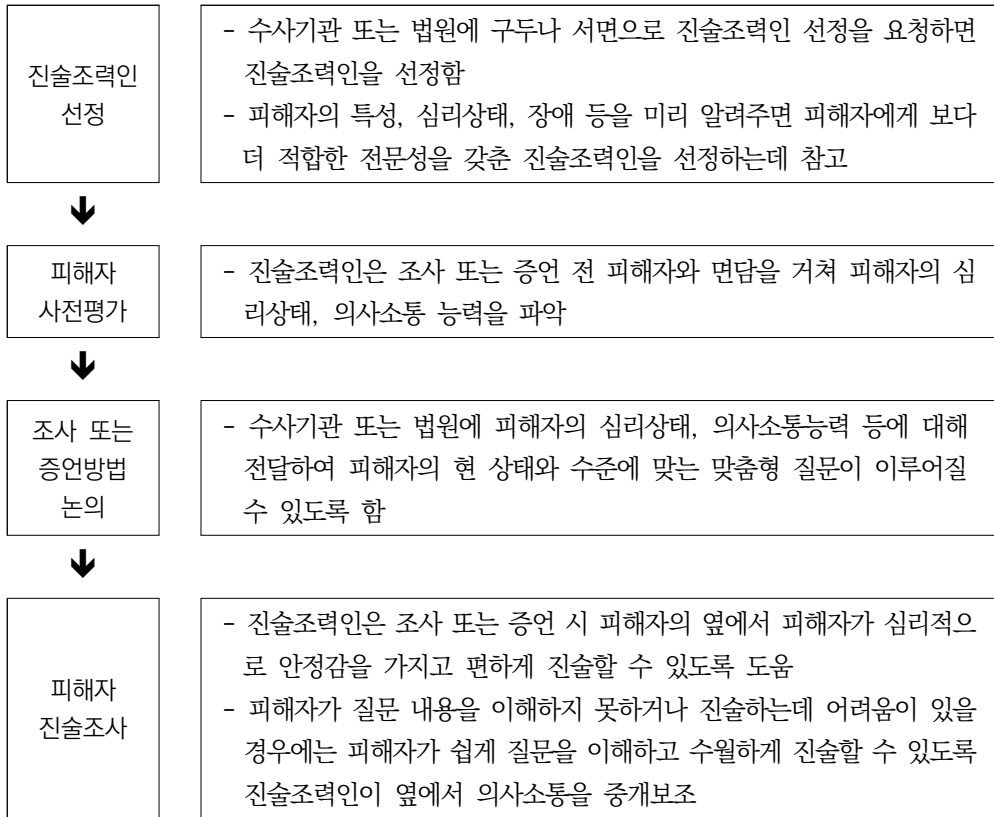
[진술조력인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개 요	- 진술조력인 제도는 수사나 재판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임 -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인력임
지원대상	-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참고인, 증인 중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풍부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 맞춤형 조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방법 등을 조언함
법적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39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현황	- 2022년 6월 현재까지 151명 양성, 14명을 전국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근 배치

자료: 법무부

진술조력인 지원 절차는 ① 진술조력인 선정, ② 피해자 사전평가, ③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④ 피해자 진술조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진술조력인 지원 절차]



자료: 법무부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은 ① 진술조력인 양성 사업, ② 진술조력인 수당 사업, ③ 진술조력인 배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술조력인 제도를 시행한 2013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술조력인 151명을 양성하였고, 14명을 전국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근 배치하고 있다.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 내용]

사업구분	내 용
진술조력인 양성	-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기존 진술조력인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등으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및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 도모
진술조력인 수당	-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피해자가 수사·재판절차에서 의사를 원활히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 장애인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을 지원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실현, 2차 피해를 방지함 ※ 해당 사업을 통해 양성한 진술조력인은 수사·재판절차에 모두 참여 가능하며, 지급 주체만 이원화되어 수사기관 활용 시 법무부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법원 활용 시 법원에서 수당을 지급함
진술조력인 배치	-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피해자에게 수도권과 같은 양질의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에 상근 진술조력인을 배치 ※ 수사·재판절차 참여 시 상근 진술조력인은 급여를 지급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활동 내역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음

자료: 법무부

동 사업의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술조력인 양성 사업의 경우 2021년 당초 계획액 1억 1,000만원 중 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진술조력인 수당 사업의 경우 기금의 자체변경을 통해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 지급 예산을 4억 1,400만원 증액하였다. 진술조력인 배치 사업의 경우에는 상근 진술조력인 인건비 및 운영비 계획액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900만원을 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계획액 및 집행액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당초계획액	2021년도 집행액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106	1,514
■ 진술조력인 양성	101	95
- 진술조력인 신규 선발 및 양성	63	63
-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26	26
- 진술조력인 간담회, 지도점검 등	12	6
■ 진술조력인 수당	231	645
-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 지급	231	645
■ 진술조력인 배치	774	774
- 상근 진술조력인 인건비 등(18명X12개월X3,170천원)	686	686
- 상근 배치 운영비(18명X12개월X419천원)	88	88

자료: 법무부

진술조력인 제도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술조력인의 조력 건수는 2017년 1,381건에서 2021년도 4,18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되는 조력 건수의 상당 부분을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7년도의 경우 조력 건수 중 상근 진술조력인이 처리한 건수의 비중은 69.0%로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비중보다 높았으나, 2021년도의 경우 상근 진술조력인의 처리 건수 비중은 38.5%로 감소(△30.5%p)하였다.

[연도별 진술조력인 조력 건수]

(단위: 건, %)

연도	상 근		비상근		합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017	953	69.0	428	31.0	1,381
2018	1,017	59.1	705	40.9	1,722
2019	1,396	62.7	830	37.3	2,226
2020	1,326	49.4	1,358	50.6	2,684
2021	1,611	38.5	2,573	61.5	4,184

자료: 법무부

이처럼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진술 조력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상근 진술조력인의 수가 진술 조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으로, 2017년에는 상근 진술조력인이 12명에서 2021년 14명으로 16.7% 증가하였는데, 동 기간동안 진술조력인의 조력 건수는 약 3배 증가하였다. 한편,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경우 2017년 70명에서 2021년 122명으로 74.3% 증가하였다.

[연도별 상근·비상근 진술조력인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상근 진술조력인의 수	12	12	13	14	14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수	70	82	94	108	122

주: 상근·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연말 기준

자료: 법무부

이에 따라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비상근 진술조력인 조력 건수 894건²⁾의 2.9배에 달하는 2,573건을 조력하였으며, 비상근 진술조력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진술조력인 수당’ 사업의 경우 기금 자체변경을 통하여 4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다.

[2021회계연도 진술조력인 수당 관련 기금 자체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21.9.28.)	210	01	진술조력인 수당	267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 지급 예산 증액
자체변경 (‘21.12.14.)	210	01	진술조력인 수당	147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 지급 예산 증액
합 계				414	-

자료: 법무부

반면, 상근 진술조력인의 경우 18명을 배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배치된 상근 진술조력인은 2021년 연말 기준 15명으로 이에 따라

2) 지원 예상건수: $894 = 654\text{건(최근 3년 평균 지원 건수)} \times 1.169^2(19\text{년 증가율}^2)$

‘진술조력인 배치’ 사업의 경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지급한 보조금 7억 7,400만원 중 실집행액은 6억 1,500만원으로 미집행된 1억 5,900만원은 반납되었다.

[2021회계연도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A)	실집행액(B)	A-B	반납금액
774	615	159	159

자료: 법무부

진술조력인 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피해자가 수사·재판절차에서 의사를 원활히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 장애인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을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피해자와 진술조력인 간의 신뢰가 중요하므로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한 명의 진술조력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담할 필요가 있다. 특히, 2차 피해 방지 측면에서 진술조력인의 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황을 다시 진술해야하는 경우는 방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술조력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처음 조력 업무를 담당한 진술조력인이 추가적인 조력 업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만, 상근 진술조력인과 달리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겸직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조력 업무의 지속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바,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에 대한 신뢰 제고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상근 진술조력인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1년의 경우 상근 진술조력인의 월 급여가 260만원이며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조력 건당 수당이 25.8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매월 11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 상근 진술조력인의 월 급여 이상의 수당을 받게 된다.

실제로 경기, 대구지역의 상근 진술조력인의 경우 월 평균 조력건수는 각각 11.4건, 12.6건으로 비상근 진술조력인으로 동일한 일을 처리했다면 월 평균 수당은 각각 293만원, 325만원으로 상근 진술조력인의 월 급여 이상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인천, 울산지역의 상근 진술조력인도 비상근 진술조력인으로 활동했을 때, 급여상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지역별 진술조력인 배치 및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충남	충북	울산	
상근	조력건수	107	681	120	51	20	-	-	114	
	인원	2	5	1	1		-	-	1	
비상근	조력건수	856	511	291	34	-	136	166	-	
	인원	27	26	7	4	4	7	2	2	
구 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광주	전남	제주	합계
상근	조력건수	260	14	151	-	-	93	-	-	1,611
	인원	3		1	-	-	1	-	-	15
비상근	조력건수	88	298	48	24	53	-	11	57	2,573
	인원	6	5	8	6	3	3	7	4	121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2021년 7월부터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1인 월 선정건수를 11건으로 제한하고, 2022년 상근 진술조력인의 월 급여를 26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조력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12건 초과 건당 10만원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근 진술조력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월 선정건수를 제한하는 것은 상근 진술조력인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로 볼 수 없고, 2022년 상근 진술조력인의 월 급여 인상 및 인센티브 조치에도 2022년 6월 상근 진술조력인 수는 14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근 진술조력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무부는 진술조력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상근 진술조력인에 대한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근 진술조력인으로 근무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사업¹⁾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 「공익신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탁 제도의 인지도를 높여서 공익신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법무부는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1억 7,500만원 중 1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3,409	3,409	-	50	3,459	3,348	96	14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203	203	-	△28	175	166	-	9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매년 공익신탁 위탁액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동 제도가 기부자 입장에서 타 기부방법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지 않다는 점, 법무부가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는 공익신탁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탁이란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운용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사업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본래 「신탁법」에 공익신탁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금을 보다 편리하고 투명·공정하게 모집·관리하기 위해 2014년 3월 「공익신탁법」을 제정하고 2015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공익신탁은 공익재단 설립에 비하여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신탁 계약만으로 설정이 가능하므로 간편하고 시간·비용이 절약되며, 공익신탁의 운영·회계를 법무부 및 외부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익신탁 공시시스템(www.trust.go.kr)에 공시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

2015년 7월 최초 인가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33건의 공익신탁이 인가되었고, 이 중 5개의 사업은 종료되어 현재 28개가 운영 중이며, 어린이(아동학대 피해·난치성 질환 어린이 지원), 범죄피해자, 청소년(초·중·고교 학생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급식비·수학 여행비 지원), 장애인(발달장애인 취업 지원, 장애 청소년 문화 체육활동 지원 등), 독립유공자(후손 생계비·교육비 지원), 체육 분야(아이스하키 지원, 유소년야구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다.

[공익신탁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제도 개요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운용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사업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제도
제도 연혁	본래 「신탁법」에 공익신탁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금을 보다 편리하고 투명·공정하게 모집·관리하기 위해 2014년 「공익신탁법」을 제정하고 2015년 3월부터 시행
장점	- 공익재단 설립에 비해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신탁 계약만으로 설정이 가능하므로,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공익신탁의 운영·회계를 법무부 및 외부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익신탁 공시시스템(www.trust.go.kr)에 공시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가능
운영 실적	- 2015년 7월 최초 인가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33건 인가 - 총 33건 중 5개 사업은 종료되어 현재 28개 운영 중 - 어린이(아동학대 피해·난치성 질환 어린이 지원), 범죄피해자, 청소년(초·중·고교 학생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급식비·수학 여행비 지원), 장애인(발달장애인 취업 지원, 장애 청소년 문화 체육활동 지원 등), 독립유공자(후손 생계비·교육비 지원), 체육 분야(아이스하키 지원, 유소년야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

자료: 법무부

공익신탁 업무절차를 살펴보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공익신탁법」 제3조), 법무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로 알려야 하며(「공익신탁법」 제5조),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익신탁법」 제16조).

또한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공익신탁법」 제10조), 「신탁법」 제98조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신탁이 합병된 경우,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등에는 해당 신탁은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탁의 업무절차]



자료: 법무부

공익신탁 인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13개의 공익신탁이 인가받았으며,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도에 6개의 공익신탁이 인가를 받았고, 2021년도의 경우에는 1개의 공익신탁이 인가를 받았다.

[공익신탁 인가 현황]

인가연도	공익신탁명
2015 (13개)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 가족 파랑새 공익신탁, 광복 70주년 나라 사랑 공익신탁, 한비야의 세계 시민학교 공익신탁, 난치성 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 법무부 천사 공익신탁, 하나 이웃사랑 나눔 공익신탁, 하나 꿈나무 육영 공익신탁, 신동방장학 공익신탁, 하나 체육진흥 공익신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일기금 공익신탁, 이승철의 리앤차드 공익신탁, 혁신기업가 기금 공익신탁,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2018.9.종료)

인가연도	공익신탁명
2016 (6개)	암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을 위한 공익신탁, 코리아 아이스 하키 사랑 공익신탁, 허구연의 야구사랑 공익신탁,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학교 생활지원 공익신탁, 어린이 희망 공익신탁
2017 (5개)	유안타증권 장애아동 디딤돌 공익신탁, 한부모가족 일·생활 균형 지원 공익신탁(2019.6.종료), 발달장애인 취업 지원 공익신탁, 이상현의 장애 청소년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공익신탁, KB 만천하 공익신탁
2018 (2개)	산업재해 피해자지원 공익신탁(2020.3.종료), KB 맑은 하늘 공익신탁(2019.9.종료)
2020 (6개)	KB The맑은 하늘 공익신탁, KB 맑은 바다 공익신탁(2021.1. 종료), KB은평 愛 생활 SOC 공익신탁, KB창원愛 생활 SOC 공익신탁, KB순천愛 생활 SOC 공익신탁, 장애 청소년의 복리를 위한 공익신탁
2021 (1개)	KB Green Wave 1.5℃

자료: 법무부

최근 5년간 공익신탁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공익신탁 사업에 집행한 금액은 2018년도에 259억 5,900만원으로 이 때 위탁계좌 잔액이 346억 2,300만원에서 2019년 94억 1,2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공익신탁 사업에 대한 집행액은 2019년의 경우에는 51억원, 2020년 11억원, 2021년 11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공익신탁 집행액이 감소하는 것은 공익신탁이 처음 시행된 2015년도에 약 800억원대의 대규모 위탁이 있었고, 위탁액 규모가 점차 감소하여 위탁계좌 잔액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다만, 2021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당해연도 위탁액 규모가 27억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신탁 사업에 집행한 금액이 위탁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익신탁 사업의 적극적인 집행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공익신탁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초 위탁계좌 잔액(A)	34,123	34,623	9,412	7,112	6,936
당해연도 위탁액(B)	450	840	2,814	858	2,712
당해연도 운용수익(C)	524	226	163	52	43
당해연도 공익신탁 사업에 집행한 금액(D)	435	25,959	5,096	1,058	1,092
당해연도 운영비용(E)	39	317	181	27	182
연말 위탁계좌 잔액(F)	34,623	9,412	7,112	6,936	8,417

주: 1. A+B+C = D+E+F 성립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지속적인 공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운용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일정 부분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공익신탁 위탁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익신탁 사업을 위한 집행을 늘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입장²⁾이다. 또한 공익신탁은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다양한 세제혜택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인식 부족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⁴⁾

2) 추가적으로, 일부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탁액이 모집되기 전까지 사업현황 및 집행 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을 연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탁액의 증가가 집행액의 증가로 바로 연결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입장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음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 등 규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 세법에서 공익신탁에 대하여 다양한 조세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① 「소득세법」에 따라 공익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익신탁에 지출한 기부금의 일정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② 「법인세법」에 따라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공익신탁에 신탁하여 기부한 기부금의 일정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이는 국내 기부금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신탁을 통한 기부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재구성한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부금 총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 기부금과 법인 기부금(기업 기부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2011년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익신탁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부자 입장에서 공익신탁을 통한 기부가 다른 기부와 비교했을 때 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많은 기부단체들이 기부자들에게 기부 내역 및 결과를 문자메시지, 메일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음에 반해, 공익신탁을 통해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 공시시스템(www.trust.go.kr)을 통해 공시하는 것 외에는 기부자에게 기부내역을 통지하지 않고 있다.

기부자들이 기부단체를 선택할 때 기부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을 위탁한 사람이 위탁액의 사용·관리 내역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법무부는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공익신탁에 관한 업무와 제도의 개선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 기부금 총액 11.2조원에서 2015년도 기부금 총액은 12.7조원으로, 2020년도 기부금 총액은 14.4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기부금 총액]

(단위: 조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1.2	11.9	12.5	12.6	12.7	12.9	13.0	13.9	14.5	14.4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 기부문화연구소 재구성

- 5) 「개인 기부 실태조사 결과 분석(2016)」에 따르면, 기부자들이 기부단체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과반수를 넘는 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부자들이 기부단체를 그만큼 잘 모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기부단체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기부한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며 관리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부자의 우려가 반영되어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기부단체를 선호한다는 해석이다. (송헌재, 「개인 기부 실태조사 결과 분석, 2016」.)

[기부단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요건]

(단위: %)

인지도	투명성과 신뢰성	지인소개 권유	활동분야나 수혜자에 대한 관심	모름/무응답
8.2	51.0	8.8	27.1	5.0

자료: 송헌재, 「개인 기부 실태조사 결과 분석」, 2016.

처음 공익신탁자문위원을 위촉한 2019년 이후, 매년 7회의 공익신탁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년 1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공익신탁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 수당을 위원 1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명만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은 매년 집행률이 0~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예 산	집 행
2019년	• 위원회 참석수당 : 7 • 전문가 자문료 : 17.5	• 위원회 참석수당: 0.6 • 전문가 자문료: 0.3
2020년	• 위원회 참석수당 : 7 • 전문가 자문료 : 17.5	• 위원회 참석수당: 0.6 • 전문가 자문료: 0.6
2021년	• 위원회 참석수당 : 7 • 전문가 자문료 : 17.5	• 위원회 참석수당: 0 • 전문가 자문료: 0

자료: 법무부

다음으로 2021년도 공익신탁 홍보비 집행현황을 보면, 1억 5,500만원을 초과하여 1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홍보기간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고 홍보 수단 또한 대부분이 라디오 광고가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특정 매체를 통해 특정 기간에만 홍보하는 것은 해당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광고 효과가 없으며, 특정 기간에만 광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6)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위촉식(2019.12.6.)을 통해 6인으로 구성된 공익신탁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매년 1회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2019.12.6., 2020.11.24., 2021.10.20.) 법무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워 연 1회 진행하였다는 입장이다.

[2021년도 공익신탁 홍보비 집행 상세내역]

(단위: 만원)

광고기간		집행 내용	금액	업체
2021 (예산: 15,500)	5. 31. ~	웹툰	0	법무부 대변인실
	10. 13. ~ 11. 12.	인터넷 포털	6,050	네이버
	12. 01. ~ 12. 31.	라디오 광고	3,000	KBS 1R
	12. 01. ~ 12. 31.	라디오 광고	3,000	MBC R
	12. 01. ~ 12. 31.	라디오 광고	3,000	SBS R
	12. 01. ~ 12. 31.	라디오 광고	2,500	CBS R
	12. 01. ~ 12. 31.	라디오 광고	1,500	TBS R
	12. 01. ~ 12. 31.	제작/기타-방송캠페인	150	케이에프엔에드컴
합 계			19,200	-

자료: 법무부

공익신탁 홍보 방향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웹툰, 인터넷 포털, 라디오 광고 등 광고를 통하여 공익신탁 제도 자체를 홍보하고 있으나, 기부자들은 공익신탁 제도 자체보다는 위탁하는 기부금이 어떤 사업에 활용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각 공익신탁의 사업 내용을 홍보하는 등의 홍보방향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익신탁 제도는 간편하고 시간·비용이 절약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기부 방법을 통해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공익신탁 위탁액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동 제도가 기부자 입장에서 타 기부방법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지 않다는 점, 법무부가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는 공익신탁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¹⁾은 해외 법무요인과 국제법무교류협력 강화, 해외주재 법무협력관 업무보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 관련 중앙당국인 법무부의 행정지원 시스템 정비 및 각국 중앙당국과 네트워크를 하는 사업으로 국제 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법무부는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9,200만원 중 1억 7,200만원을 집행하여 8,000만원을 과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1,022	1,022	0	△130	892	878	0	14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104	104	0	△13	92	172	0	△8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수행 사업을 위해 국외여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특정 목적으로 편성된 국외여비를 연례적으로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매년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국제협력·교류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032-300의 내역사업

하기 위하여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에 국외여비를 편성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동 내역사업 국외여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해외방문이 어려웠던 2020년을 제외하고 집행률이 매년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348.5%로 나타났다.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내역사업 국외여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예산액	27,893	25,011	45,547	45,101	37,256
	집행액	38,571	71,089	52,203	0	129,820
	집행률	138.3	284.2	114.6	0.0	348.5

자료: 법무부

동 내역사업에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수행 사업이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국제결혼에서 부모 일방이 하는 아동탈취 문제에 있어 해외로 무단 이동되거나 불법 유치되어 있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중앙당국은 아동의 소재파악, 우호적 해결 유도, 법률자문 제공, 중앙당국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역할을 수행²⁾하고 있다.

2) 중앙당국은 아동을 탈취당한 부모를 지원하며, 모든 지원은 외국 중앙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중앙당국은 아동 소재파악, 임시조치를 통한 아동에 대한 추가적 피해나 이행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아동의 자발적 반환 확보 및 문제의 우호적 해결 도모, 아동의 반환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의 개시 또는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개요]

구 분	내 용																												
명칭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아동탈취협약)																												
의의	국제결혼에서 부모 일방이 하는 아동탈취 문제에 있어 해외로 무단 이동되거나 불법 유치되어 있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																												
가입 및 이행	○ 2012년 협약 가입 ○ 2013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시행(중앙당국인 법무부의 역할과 아동반환청구 등 법원 재판 절차 규정)																												
중앙당국 역할	아동의 소재파악, 우호적 해결 유도, 법률자문 제공, 중앙당국 간 네트워크 강화																												
적용	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탈취 시점에 아동의 상거소(常居所)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약이 발효된 국가여야 하며, 아동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어야 함																												
업무실적	○ 아동반환지원신청 접수 건수 및 진행 현황 (단위: 건) <table><tr><th>연도</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r><tr><td>접수</td><td>6</td><td>7</td><td>9</td><td>13</td><td>6</td><td>6</td></tr><tr><td>완료</td><td>6</td><td>7</td><td>8</td><td>9</td><td>1</td><td>2</td></tr><tr><td>진행중</td><td>0</td><td>0</td><td>1</td><td>4</td><td>5</td><td>4</td></tr></table>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6	7	9	13	6	6	완료	6	7	8	9	1	2	진행중	0	0	1	4	5	4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6	7	9	13	6	6																							
완료	6	7	8	9	1	2																							
진행중	0	0	1	4	5	4																							

자료: 법무부

따라서 법무부는 아동탈취 사건 수행을 위해 외국 중앙당국과의 공조를 위하여 해외를 방문³⁾하거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제도 개선을 위해 선진국의 외국 중앙당국을 방문(공조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에 국외여비를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 내역사업의 국외여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수행 사업이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분리 편성되어 있었던 2017년의 경우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국

3) 신청인이 아동반환 사건에서 승소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반발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 중앙당국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때 외국 중앙당국에 방문하여 사건 협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외여비는 집행률 138.3%로 집행되었으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수행 내역사업은 101.9%로 집행되었다. 그러나 2018년의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수행 내역사업의 국외여비는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내역사업 등 국외여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예산액	27,893	25,011	45,547	45,101	37,256
	집행액	38,571	71,089	52,203	0	129,820
	집행률	138.3	284.2	114.6	0.0	348.5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중앙당국 수행	예산액	18,010	16,329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내역사업과 통합		
	집행액	18,361	0			
	집행률	101.9	0.0			

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수행 내역사업은 2019년부터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내역사업에 통합되어 수행

자료: 법무부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수행 내역사업이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통합된 2019년 이후에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수행 국외여비는 매년 집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에 통합되면서 동 국외여비 예산이 법무협력관 귀국 업무보고회의, 법무협력협정체결 등 해외 법무협력을 위해 집행⁴⁾된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따라 2019년도의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내역사업의 국외여비 집행률은 114.6%로 예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1년도의 경우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내역사업의 국외여비는 3,726만원이 편성되고 1억 2,982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348.5%로 나타났다.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내역사업 국외여비 예산 및 집행 세부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세부 내용(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금액
2018	예산액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25,011
		- 법무협력관 귀국 업무보고회의	14,546
		- 법무협력협정체결 등 해외 법무협력	10,465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수행	16,329
	집행액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71,089
		- 법무협력관 귀국 업무보고회의	36,282
		- WIPO와 업무협약 체결 등	33,176
		- 중국 연변대 한국법센터지원 등	1,631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수행	0
2019	예산액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45,547
		- 법무협력관 귀국 업무보고회의	17,092
		- 법무협력협정체결 등 해외 법무협력	10,485
		-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수행	17,970
	집행액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52,203
		- 법무협력관 귀국 업무보고회의	26,158
		- 업무협정체결 및 법무협력 강화 방안 논의 등	26,045
		-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수행 관련 출장	0
2020	예산액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45,101
		- 법무협력관 귀국 업무보고회의	17,092
		- 법무협력협정체결 등 해외 법무협력	10,474
		-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수행	17,535
	집행액	집행 내역 없음	0
2021	예산액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37,256
		- 법무협력관 귀국 업무보고회의	17,050
		- 법무협력협정체결 등 해외 법무협력	10,011
		-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수행	10,195
	집행액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129,820
		- 법무협력관 귀국 업무보고회의	46,192
		- 헝가리 및 오스트리아 법무협력 등 출장 건	15,223
		- UN OCT와의 업무협력 등 출장 건	68,406
		- 헤이그 아동탈취 협약 중앙당국 수행 관련 출장	0

주: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수행 내역사업은 2019년부터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내역 사업에 통합되어 수행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국제 법무협력 재개로 인한 출장 필요성이 증가하였다는 점,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내역사업은 매년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국제협력·교류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여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동일 단위사업 내 동일 비목 재원으로 집행되어 별도의 이·전용 절차 없이 집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매년 유사한 사유⁵⁾로 국제분야 법무협력 사업에서 국외여비의 편성 및 집행 간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편성 단계에서 국외여비 소요를 보다 정확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수행 사업 국외여비를 불용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타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의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법무부는 국외여비를 집행할 때, 특정 목적으로 편성한 국외여비를 연례적으로 해당 목적이 아닌 타 목적으로 집행하는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5) 아래는 동 사업의 국외여비 편성 내역 및 집행내역 간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이다.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 국외여비 초과집행 사유]

연도	사유
2017	- 법무협력관 귀국 업무보고회의 : 예산 대비 참석인원이 많고 (예산 8명 → 집행 9명) 및 항공권 액수가 큼(예산 2,074천원/명 → 집행 2,700천원/명) - 법무협력협정체결 등 해외 법무협력 : 예산 대비 참석 횟수 (예산 2회 → 집행 4회) 및 여비 지급액이 큼(예산 5,651천원/회 집행 9,643천원/회)
2018	- 법무협력관 귀국 업무보고회의 : 예산 대비 참석인원이 많고 (예산 8명 → 집행 9명) 및 항공권 액수가 큼(예산 1,818천원/명 → 집행 4,031천원/명) - 법무협력협정체결 등 해외 법무협력 : 출장자가 많고(예산 3명 → 7명) 출장당 여비 지급액이 큼(예산 5,233천원/회 → 집행 17,404천원/회)
2019	- 법무협력관 귀국 업무보고회의 : 예산 대비 참석인원이 많고 (예산 8명 → 집행 9명, 주오스트리아 법무협력관 추가) 및 항공권 액수가 큼(예산 2,137천원/명 → 집행 2,906천원/명) - 법무협력협정체결 등 해외 법무협력 : 출장자가 많고(예산 3명 → 6명) 출장당 여비 지급액이 큼(예산 3,495천원/회당 → 집행 26,045천원/회당)
2021	- 법무협력관 귀국 업무보고회의 : 항공권 액수가 큼(예산 2,131천원/명 → 집행 5,774천원/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권 가격이 상승하였고, 법무협력관 중 일부 (여비등급 제1호)가 비즈니스석으로 발권 - 법무협력협정체결 등 해외 법무협력 : 출장자가 많고(예산 3명 → 9명) 출장당 여비 지급액이 큼(예산 5,006천원/회당 → 집행 41,815천원/회당)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권 가격이 상승

주: 2020년도는 국외여비 미집행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제마약퇴치 지원 사업 및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차별적 운영 필요

가. 현 황

국제마약퇴치지원 사업¹⁾은 매년 ODA 수원국 중 1개국을 선정, 해당 국가의 마약 통제역량 및 국제공조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 마약퇴치 지원사업을 위해 협력 대상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제형사협력지원(ODA)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법무부는 국제마약퇴치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2억 2,200만원 중 1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을 불용하였다.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운영 지원 사업²⁾은 회원국 마약통제기관 간 마약류 불법거래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유·대응, 마약통제기법 및 정보공유 프로그램 운영, 마약퇴치 지원 사업을 실행하는 지역 간 마약통제 국제협력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약수사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법무부는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1억 6,200만원 중 1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마약 관련 국제협력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제형사협력지원(ODA)	2,641	2,641	-	△58	2,583	2,241	-	342
국제마약퇴치지원	222	222	-	-	222	174	-	47
마약수사	4,876	4,876	-	△95	4,781	4,190	-	591
아·태지역 마약조정 센터 운영 지원	162	162	-	-	162	135	-	2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333-303의 내역사업

2) 코드: 일반회계 1335-304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국제마약퇴치 지원 사업과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사업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상국가와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두 사업을 별도 편성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각 사업을 차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제마약퇴치 지원 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지원대상국에 대한 수사장비 지원과 사업수행관 파견, 마약관계관 국내 초청 연수 및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등 대상국의 전반적 마약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다. 외교부 선정 중점 협력국 중 국제사회 개발협력 의제 및 국내 마약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국을 선정³⁾한다.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APICC⁴⁾ 회원국 마약통제기관 간 수사관 상호 파견, 신속한 정보교환, 회원기관에 대한 수사·단속장비 지원 및 초청 연수를 실시하여 마약단속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유입 마약류 사전 차단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최근 두 사업의 5년간 사업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상국은 주로 동남아시아의 국가이며, 사업내용은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① 수사장비 혹은 의료장비 등 지원, ② 마약 관련 캠페인 등 실시, ③ 우리나라 마약수사관 파견, ④ 대상국 마약관계관 국내 초청·연수(근무)가 수행되고 있다.

3) 대검찰청은 2010년부터 법무부 ODA 예산을 활용하여 같은 해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2011년 라오스, 2012년 필리핀, 2013년 방글라데시, 2014년 우즈베키스탄, 2015년 타지키스탄, 2016년 키르기스스탄, 2017년 몽골, 2018년 라오스, 2019년 캄보디아, 2020년 필리핀, 2021년 라오스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4) APICC(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은 아세안(ASEAN) 10개국 마약단속기관 및 대한민국 검찰 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대응, 공조체제 구축 및 국제 마약퇴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간 국제협력체로서 현재 11개국 11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012년 9월 대검찰청 마약과 내 APICC 사무국에서 6개 회원국 주한 외교사절단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등 국내 유관기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PICC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현재 APICC 회원국은 대한민국과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다.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국제협력 사업 주요 실적]

연도	국제마약퇴치 지원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운영 지원
'17	- (대상국) 몽골 - (기간) 2017.5.10.~2017.11.15. - (내용) ① 수사장비 지원 ② 대상국 마약관계관 국내 초청·연수 ③ 마약수사관 2명 파견	- (대상국) 라오스 - (기간) 2017.5.29.~2017.6.30. - (내용) ① 수사장비 지원 ② 마약 폐해 홍보 캠페인 개최
'18	- (대상국) 라오스 - (기간) 2018.5.23.~2018.12.7. - (내용) ① 수사장비 및 의료장비 지원 ②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③ 마약수사관 1명 파견 ④ 대상국 마약관계관 국내 초청·연수	- (대상국) 베트남 - (기간) 2018.7.9.~2018.8.10. - (내용) ① 수사장비 지원 ②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③ 마약수사관 1명 파견 ④ 대상국 마약관계관 국내 초청·근무
'19	- (대상국) 캄보디아 - (기간) 2019.4.29.~2019.11.22. - (내용) ① 수사장비 지원 ②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③ 마약수사관 1명 파견 ④ 대상국 마약관계관 국내 초청·연수	- (대상국) 태국 - (기간) 2019.7.~2019.8. - (내용) ① 수사장비 지원 ② 마약수사관 1명 파견 ③ 대상국 마약관계관 국내 초청·근무
'20	- (대상국) 필리핀 - (내용) ① 수사장비 지원 ② 필리핀 마약청과 온라인 비대면 방식 화상 회의 개최	- 코로나19로 미 실시
'21	- (대상국) 라오스 - (기간) 2021.5.13.~2022.1.28. - (내용) ① 수사장비 및 의료장비 지원 ②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마약류 폐해 및 범죄 예방 동참 촉구 ③ 마약수사관 1명 파견	- (대상국) 태국 - (기간) 2021.6.~2021.10. - (내용) ① 수사장비 지원 ② 마약수사관 1명 파견 ③ 대상국 마약관계관 국내 초청·근무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제마약퇴치 지원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문화적 역량을 다차원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초국가적 마약범죄에 대한 회원국(대한민국 및 ASEAN 10개국) 간 국제공조수사 체제를 강화⁵⁾함으로써 국내 마약류 유입 사전 차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업의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사업의 대상국이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 한정되는 점, 사업 방식이 수사장비 지원, 마약 관련 캠페인 개최, 마약수사관 파견 및 현지 마약관계관 초청·연수(근무)로 유사하다는 점, 무상원조의 성격을 갖는 국제마약퇴치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운영 지원 사업 또한 APICC에 대한 비용은 우리나라가 지불하고 회원국에 대한 회비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⁶⁾에서 두 사업은 집행과정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사업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유사한 대상에 대한 유사한 방식의 사업 집행은 사업효과의 중복으로 인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법무부는 국제마약퇴치 지원 사업의 대상인 개발도상국 선정 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거나 사업 진행 방식을 두 사업 간에 달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APICC 출범 이후 회원기관 및 국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외로 도주한 한국인 마약사범의 신속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며 유관기관의 협조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국외 도피 중인 마약류 사범 34명을 강제송환하였다.

[※연도별 국내 송환: '13(3명)→'14(1명)→'15(5명)→'16(5명)→'17(4명)→'18(6명)→'19(3명)→'20(4명)→'21(3명)]

6)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APICC 운영으로 인하여 마약사범 검거 및 송환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비용은 전부 우리나라에서 지불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1차년도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¹⁾은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추진에 따라 현재 법무부·검찰·경찰·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이용 중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 기반의 사건처리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고자 2021년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액 196억 5,900만원 중 59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33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7,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차세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구축(정보화)	19,659	19,659	19,659	5,985	13,301	373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의 1차년도 사업은 당초 계획(2021년 5월 착수 계획) 대비 착수가 7개월가량 늦어진바, 법무부는 동 시스템 구축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연간 약 180만 건에 달하는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7038-301

형사사건을 종이 기반으로 처리함에 따른 종이 기록 관리 부담이 과중되고 업무 비효율이 발생²⁾하게 되자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추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KICS”)은 2010년 서비스 개통 후 현재까지 형사사법업무 처리의 근간이 되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실현에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동 사업은 법무부, 검찰, 경찰, 해양경찰 등 본 사업 참여기관 간 협의를 통해 법무부에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동 추진단의 역할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총괄, 총사업비 관리 및 연차별 예산 확보, 계약 추진, 세부사업 및 진행상황 등 관리·감독, 각 기관 공통 적용 기술 검토 및 표준 수립 등이 있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추진 체계]



자료: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³⁾는 시스템 구축비 1,505억원, 감리 17억 5,400만원, PMO 38억 3,900만원, 조달수수료 6억 1,300만원,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 1,372억 7,100만원 등 총 2,939억 7,700만원이 책정되었다.

2) 민사, 행정, 가사 등의 분야에서는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되었으나, 형사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아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연도별 총사업비이다.

동 사업의 연차별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1차년도 사업은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분석·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며 체결일로부터 8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며, 2차년도 사업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 1차 등을 내용으로 하며 1차년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차년도 사업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 2차 및 시범운영·서비스 개통 등을 내용으로 하며 2차년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차별 주요 사업 내용]

1차년도 (체결일 ~ 8개월)	2차년도 (전년차 종료일~12개월)	3차년도 (전년차 종료일~16개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분석·설계 •클라우드 인프라 구조 설계 •개발환경 구축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1차)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1차)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2차) 및 시험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2차)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시범운영 및 서비스 개통

자료: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도별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 ~2028년	합계
총사업비 대상사업	시스템 구축비	SW개발비	18,022	10,208	15,127	17,222	0	60,579
		장비비	0	49,449	31,121	10,681	0	91,251
		계	18,022	59,657	46,248	27,903	0	151,830
	부대비	감리비	139	861	807	385	0	2,192
		PMO	1,173	797	940	940	0	3,850
		조달수수료	0	313	191	109	0	613
	운영·유지관리비		0	0	0	0	137,271	137,271
	계		19,334	61,628	48,186	29,337	137,271	295,756
일반사업	추진단 운영비	325	320	323	0	0	968	
합계			19,659	61,948	48,509	29,337	137,271	296,724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2021년에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1차년도 사업을 완료(사업 기간 2021.5.~2021.12.)하는 것을 목표로 1차년도 사업 예산 전액(총 19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지연(2021.7. 완료), 조달청과의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협의(2021.7.) 및 행정안전부와의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2021.8.), 그리고 2021년 9월 및 11월의 두 차례에 걸친 입찰공고의 유찰(1차 무응찰, 2차 단독응찰)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21년 12월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사업 착수가 당초 계획보다 7개월 가량 지연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선금 지급 및 잔금 이월로 인하여 2021년도 예산액 196억 5,900만원 중 59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33억 100만원은 이월되었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의 법적 근거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어 2024년 10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법무부는 동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⁴⁾

4)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8485호) 제1조(시행일)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현 황

출원생 자립지원 사업¹⁾은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출원생 자립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액 31억 8,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출원생 자립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년원생수용	21,796	21,796	-	21,796	20,762	-	1,034
출원생 자립지원	3,187	3,187	-	3,187	3,187	-	-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경우 소년원 출원생 등의 활용이 저조하므로, 법무부는 소년원 등의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센터를 홍보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창업비전센터에 대한 소년원 출원생 등의 선호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및 기숙 여부 선택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원생 자립지원 사업은 한국소년보호협회²⁾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창업비전센터와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의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³⁾을 지급하는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632-300의 내역사업

2) 보호소년 등의 선도·보호, 사회정착지원, 장학·원호, 연구활동 등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립(1998.12.)된 재단이다. 주요 사업은 전국 청소년자립생활관(8개)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2개) 운영, 희망드림사업 운영(주거, 창업, 취업, 장학, 원호 등), 창업보육기업 운영 및 지원이다.

사업으로, 청소년창업비전센터란 소년원 출원생 및 보호관찰 청소년 등 법원 소년 부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 16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하 ‘소년원 출원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술 교육,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기술교육센터이다.

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①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와 ②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가 있으며,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경우 남자인 소년원 출원생 등을 대상으로 5개 학과의 기숙형 종합기술교육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여자인 소년원 출원생 등을 대상으로 4개 학과의 비기숙형 미용 전문 기술 교육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화성·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현황]

구 분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개 원	2014년 12월	2020년 2월
설립목적	전문적인 기술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정착 유도	
대 상	- 소년원 출원생 등 학교 밖 남자 청소년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년보호기관 추천 여자 청소년
교육내용	① 직업훈련 기술교육, ② 인성교육, ③ 현장체험학습	① 바른 품성 인성교육, ② 현장 맞춤형응교육, ③ 전문기술 직업훈련
학 과	골프매니지먼트과, 용접과, 자동차정비과, 제과제빵과, 커피바리스타과	헤어미용반, 네일아트반, 피부미용반, 메이크업반
위 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석포로 5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54
기숙여부	기숙형	비기숙형

자료: 법무부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① 보호소년등을 선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② 소년보호협회의 설치, 조직,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법무부는 2021년도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을 위하여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13.9억원을 편성하고 11.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2.4억원을 편성하고 2.3억원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실집행액	반납액
■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1,390,534	1,188,439	202,095
- 인건비	791,396	589,930	201,466
- 주요사업비	599,138	598,509	629
■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240,000	226,129	13,871
- 인건비	113,976	100,105	13,871
- 주요사업비	126,024	126,024	-

자료: 법무부

각 센터의 소년원 출원생 등의 정원 및 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경우 센터 출범 후 2018년까지 현원이 정원(60명)에 미치지 못하자, 2019년부터는 정원을 40명으로 감소시켰다. 그러나 이후에도 센터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여 2021년의 경우 평균 현원은 11명으로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경우에도 2021년도 평균 현원 9명으로, 정원 20명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정원·현원 현황]

연도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정원	현원(평균)	정원	현원(평균)
2017	60명	43명	-	-
2018	60명	32명	-	-
2019	40명	27명	-	-
2020	40명	20명	20명	12명
2021	40명	11명	20명	9명
2022.6.	40명	6명	20명	12명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소년원 출원생 등의 현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의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전국 소년원 등 유관기관 출입이 통제되어 소년보호협회 사회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⁴⁾에 어려움이 있는 등 외부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법무부는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경우에는 IT과, 자동차정비과, 용접과, 커피바리스타과, 골프매니지먼트과의 5개 교육과정이 최근 청소년들의 욕구와는 괴리가 발생하여 입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화성 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2014년 12월 개청 후 교육과정의 변경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경우에는 기숙형으로 운영되는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와는 달리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되 교육 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개방형 시설로 운영되어 여자 소년원 출원생 등의 자발적 참여가 비교적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경우에도 남자 소년원 출원생 등의 선호를 고려하여 기숙 여부를 선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법무부는 소년원 출원생 등이 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소년원 등의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창업비전센터를 홍보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창업비전센터에 대한 소년원 출원생 등의 선호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및 기숙 여부 선택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동 사업의 경우 소년원 초기 입원 단계에서부터 협회 직원과 소년원 담당자가 협조하여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사전에 파악·접촉하고, 소년원 재원기간 중 라포(유대관계) 형성 등을 통해 출원 후 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대면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집단 수용 시설인 소년원 출입이 전면 통제되어 대면 홍보가 불가능해지면서, 협회에서 소년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안내홍보문 등을 통해 비대면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나,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법제처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8,34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00.0%인 8,347만원을 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 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0	0	0	83	83	0	0	100.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제처

2021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07억 3,700만원이며, 이 중 91.5%인 372억 9,055만원을 지출하고 34억 4,645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법제처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1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0,737	40,737	40,737	37,291	0	34,46	91.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제처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법제처의 자산은 183억 1,932만원, 부채는 0만원으로 순자산은 183억 1,932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5억 8,188만원, 일반유형자산 144억 5,904만원, 무형자산 32억 1,6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196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42억 5,341만원(30.2%) 증가하였다. 이는 기타비유동자산이 5억 194만원에서 196만원으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5억 7,026만원 증가하고 투자자산이 2,617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유형자산이 41억 3,036만원 증가, 무형자산이 2,660만원 증가한데 기인한다.

부채는 전년 대비 111만원 감소한 0원으로 유동부채 111만원의 감소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법제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산합계(a)	18,319	14,066	4,253	30.2
Ⅰ. 유동자산	582	12	570	4,750.0
Ⅱ. 투자자산	60	34	26	76.5
Ⅲ. 일반유형자산	14,459	10,329	4,130	40.0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3,216	3,189	27	0.8
Ⅵ. 기타비유동자산	2	502	△500	△99.6
부채합계(b)	0	1	△1	△100.0
Ⅰ. 유동부채	0	1	△1	△100.0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자산(a-b)	18,319	14,065	4,254	30.2

자료: 법제처

법제처는 2021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05억 7,873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406억 5,340만원, 관리운영비는 없으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7,473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1억 6,751만원(2.8%) 감소한 405억 7,873만원이며, 이는 주로 외주용역비 및 감가상각비 감소 등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11억 504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프로그램순원가는 정부입법총괄지원 프로그램(406억 5,34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법제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40,653	41,758	△1,105	△2.6
II. 관리운영비	0	0	0	0
III. 비배분비용	0	11	△11	△100.0
IV. 비배분수익	75	23	52	226.1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0,579	41,746	△1,167	△2.8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40,579	41,746	△1,167	△2.8

자료: 법제처

법제처의 2021년도 기초순자산은 140억 6,48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83억 1,932만원으로 기초 대비 42억 5,452만원(30.2%)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405억 7,873만원이고, 순자산 가산 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404억 4,740만원, 조정항목이 43억 8,585만원이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405억 3,087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8,347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43억 8,585만원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법제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14,065	14,045	20	0.1
Ⅱ. 재정운영결과	40,579	41,746	△1,167	△2.8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0,447	41,766	△1,319	△3.2
Ⅳ. 조정항목	4,386	0	4,386	0
Ⅴ. 기말순자산(Ⅰ - Ⅱ + Ⅲ + Ⅳ)	18,319	14,065	4,254	30.2

자료: 법제처

법제처의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 ② **법령 정보제공 사업**, ③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④ **법제정비 사업**, ⑤ **행정법제 혁신 사업** 등이 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은 의원입법지원 자문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3백만원이 감액(3,684백만원→3,681백만원)되었고, 법령정보제공 사업은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홍보 등과 관련하여 대변인실 정책홍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1백만원이 감액(1,946백만원→1,925백만원)되었으며,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은 남북법제 정책연구비 예산규모 조정 등으로 20백만원(789백만원→76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법제정비 사업은 국민법제관 예산규모 조정 등으로 20백만원(1,403백만원→1,38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법제 혁신 사업은 행정기본법 홍보예산 등 행정기본법 통과를 전제로 하는 예산은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355백만원(655백만원→300백만원)이 감액되었다.

법제처는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내에 검색되는 법령 중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사진·절차도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공하기 위한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과 ② 수요가 많은 중점 법령 번역본 제공 확대 및 국민·기업·정부기관 등 다양한 수요자의 맞춤형 법령정보 요구에 적시 대응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등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법제정비 사업에서 수행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의 경우 국민 시각을 반영한 정비안을 마련하기에는 국민참여단의 제출의견에 대한 채택률 및 반영률이 저조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 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제정비 사업의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사업에서 수행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의 경우 의뢰된 조례안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실시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자치법규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수행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가 국회에 연초 제출한 2021년도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은 48.6%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법제처는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을 제고하여 입법 추진의 효율성과 법안심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의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수행 비율 제고 노력 필요

가. 현 황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¹⁾은 국민의 법령 이해도 및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령안의 용어나 문장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법령안 및 조례안을 상시 검토하고,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제정비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법제처는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액 7억 5,700만원 중 7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을 불용하였다.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사업²⁾은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하여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자치법규가 상위법령과 조화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해석 및 정비에 대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법제정비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법제처는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액 2억 8,100만원 중 2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법제정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제정비	1,383	1,383	0	0	1,383	1,300	0	83
알기 쉬운 법제 구축	757	757	0	0	757	732	0	25
자치법규 입안 및 정 비사업	281	281	0	0	281	251	0	3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제처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032-301의 내역사업

2) 코드: 일반회계 1032-301의 내역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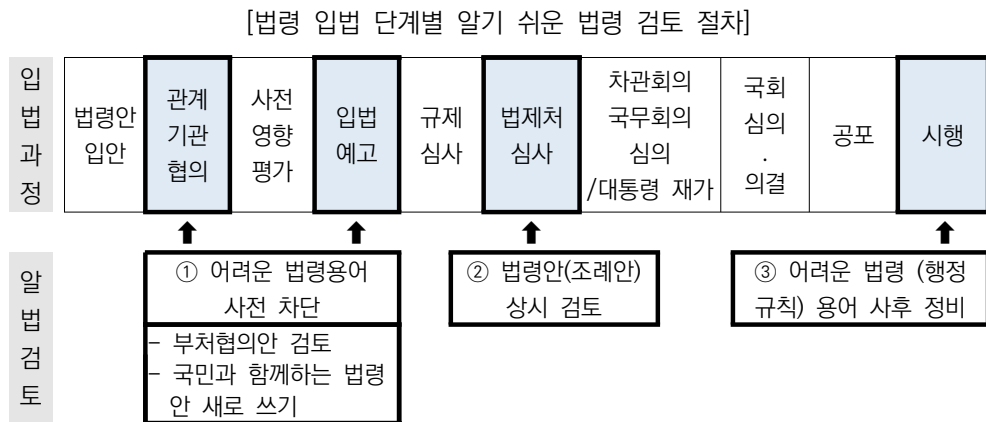
나. 분석의견

법제처는 법령 입법 각 단계에서 수행하는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의 경우 국민 시각을 반영한 정비안을 마련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 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위해서는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 심의·의결, 국무회의 상정, 공포, 시행 등의 일련을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①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② 법령안(조례안) 상시 검토를,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하여는 ③ 어려운 법령(행정규칙) 용어 사후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 법제처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은 법제처에서 직접 수행하는 ① 부처협의안 검토와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참여하는 ②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

기 사업으로 나누어 수행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은 국민참여 입법을 통해 입법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수행된 사업으로, 법제처 소관의 비영리법인인 '한국법령정보원'에서 위탁 수행³⁾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21년 예산 1억 2,400만원 중 1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300만원이 불용되었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주요목적	국민참여 입법을 통해 입법과정 실효성 확보 및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				
실시시기	2019년 이후				
수행기관	(재)한국법령정보원 (위탁사업)				
주요내용	-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입법예고안을 대상으로 쉬운 문장 및 용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제처는 그 의견을 심층 검토함. - 검토한 결과를 어려운 용어 사전 차단 목록에 반영하고 법령 심사 시 활용하여 어려운 용어가 법령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시각을 반영한 정비안을 마련함.				
'21예산 및 집행	-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쓰기 사업 위탁운영 관련 예산 및 집행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백만원)	297	199	124	153
	집행액(백만원)	290	190	121	-

자료: 법제처

법제처는 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문발송, 사업 블로그, SNS, 배너광고 및 지면광고 등을 활용하여 국민참여단 모집을 공고한 후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이 모집되면 위탁기관은 입법예고안을 선별하여 국민참여단에게 이를 편집·송부하고, 국민참여단은 송부 받은 입법예고안 중 어려운 용어·문장에 대한 의견을 작성 후 회신한다. 위탁기관은 회신된 의견 중

3) 한국법령정보원은 연구 및 개발업 등을 주요 사업분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며,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으로서 용역제안요청서에 따라 위탁사업을 운영한다. 국민참여단 모집·운영, 국민참여단 교육, 입법예고안 선별·발송, 제출의견 취합·검토 및 우수 의견을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법제처에 제출하고, 법제처는 우수사례를 심층 검토하여 최종 채택된 의견을 사전 차단에 반영하고 법제국 및 부처에 통보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⁴⁾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절차]

수행주체	절 차	상세 내용
위탁기관	① 국민참여단 모집	공문 발송, 사업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하여 선착순으로 모집
	② 입법예고안 선별	입법예고안 중 직제 등을 제외한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발굴 가능한 어려운 용어·문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안을 선별
	③ 입법예고안 편집·송부	선정된 입법예고안을 국민참여단이 알기 쉬운 형태로 편집 후 국민참여단에 제공
국민 참여단	④ 법령안 새로 쓰기 작성 및 회신	입법예고안 중 어려운 용어·문장에 대한 의견 작성·회신
위탁기관	⑤ 검토 및 우수사례 선정	제출의견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법제처 제출
법제처	⑥ 우수사례 검토 및 사전차단 반영	선정된 우수사례를 심층 검토하여 최종 채택된 의견을 사전 차단에 반영
	⑦ 법제국·부처 통보	사전 차단을 위해 법제국·부처에 통보 후 모니터링 실시

자료: 법제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법제처는 2021년 입법예고안 568건에 대하여 국민참여단에게 9,419건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각 검토 건당 평균 2.5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총 23,80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법제처에서 사전차단 대상 용어로 채택된 건수는 207건이며, 현재 법령에 반영된 것은 124건이다.

4) 국민참여단의 회신을 및 채택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여 매월 및 연말 우수자를 선정하여 보상한다. 매월 우수자는 문화상품권 2~3만원을 수여하며, 연말 우수자는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한다.

검토 횟수는 2020년 4,291건에서 2021년 9,419건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의견 수는 2020년 24,178건에서 2021년 23,805건으로 감소하였으며, 국민참여단의 제출의견 중 법제처가 채택한 비율 및 법령에 반영된 비율은 0.5 ~ 2.4% 수준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실적]

(단위: 명, 건, %)

구 분	참여 인원 ¹⁾	입법예고안 검토		위탁기관 선정건수	법제처 채택의견 (C)	법령 반영의견 (D)	검토건당 제출건수 (B/A)	채택률 (C/B)	반영률 (D/B)
		검토횟수 ²⁾ (A)	제출의견 (B)						
2019	505	12,274 (648)	9,481	1,095	227	180	0.8	2.4	1.9
2020	150	4,291 (763)	24,178	507	163	130	5.6	0.7	0.5
2021	120 (165)	9,419 (568)	23,805	602	207	124 ³⁾	2.5	0.9	0.5

주: 1) 2021년의 경우 4월에 120명을 모집하고, 8월에 활동이 저조한 국민참여단을 교체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추가 모집하여 참여인원이 165명으로 증가

2) 검토횟수는 국민참여단에게 발송하여 국민참여단이 검토한 누적 입법예고안 건수이며, 팔호는 검토의 대상이 되는 본래 입법예고안의 건수임(검토횟수 중 중복 제거)

3) 2021년 채택의견은 현재까지 법령개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향후 증가 예상

자료: 법제처

이와 같이 국민참여단의 제출의견에 대한 채택률 및 반영률이 낮은 것은 국민참여단 제출의견 중에 수용곤란한 의견이 많아, 위탁기관에서 우수의견으로 선정되는 수 자체가 제출의견 중 약 2.5%(2021년 기준)⁵⁾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중 중복되는 의견이나 법제처에서 수용곤란한 의견⁶⁾을 제외하면 제출의견 중 채택되는 비율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법제처는 이에 대하여 동 사업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하기 때

5) 2.5% = 602건 / 23,805건

6) 예컨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 약칭을 띄어쓰기 하는 경우,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개선의견 반영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개선의견이 법령의 내용을 변경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불필요한 한자병기를 추가하는 경우 등이다.

문에 채택의견 건수 및 법령반영 건수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기 어려우며, 법령 입안 단계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입법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법령 반영률만으로 사업의 실적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국민 시각을 반영한 정비안을 마련하려는 것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발간하여 각 부처가 법령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어려운 법령 용어 사후 정비 사업을 통해 2006년 이후 상당한 용어들이 이미 개정되었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국민이 몇 개의 강의를 듣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책자를 참고하는 정도⁷⁾로는 타 법률과의 관계성 등을 고려하여 법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사업 방식으로는 일반 국민이 실효성 있는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⁸⁾

마지막으로, 관계 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의 단계에서 법제처가 ‘부처협의안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이와 차별되는 의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⁹⁾도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7) 국민참여단의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탁기관 검토자가 신규 모집된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책자, 우수사례집 및 온라인 강의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관련 교육 참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참여단 인원수	505명	150명	120명
1차 교육	63명(대면 교육)	(교육자료 배포)	38명(영상 교육)
2차 교육	41명(대면 교육)	(교육자료 배포)	18명(영상 교육)

자료: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된 교육을 취소하고 교육자료를 배포함

주: 법제처

8)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단 의견에 대한 전문가의 개별 피드백 제공 등 국민참여단이 보다 효율성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부처협의안 검토는 모든 법령안을 대상으로 전문용어 및 외래어가 법령에 들어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면, 국민참여단의 입법예고안 검토는 국민 생활과 연관이 있는 법령안만을 선별하여 검토하며 어려운 용어뿐만 아니라 문장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검토 방향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보인다.

다만, 일반 국민들에게 입법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도 알기 쉬운 법령 검토가 법령안의 취지 및 내용에 관한 참여가 아니라 용어·문장을 정비하는 수준에서의 참여라는 점이 고려할 때 반드시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민 시각을 반영한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은 사업 방식보다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⁰⁾

둘째, 법제처에서 수행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의 경우 의뢰된 조례안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실시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자치법규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수행 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검토의 경우 조례안에 대해서도 수행되고 있으며, 알기 쉬운 법령 검토¹¹⁾의 대상이 되는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거치는 조례안 중 자치법규입안지원과에서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요청하는 조례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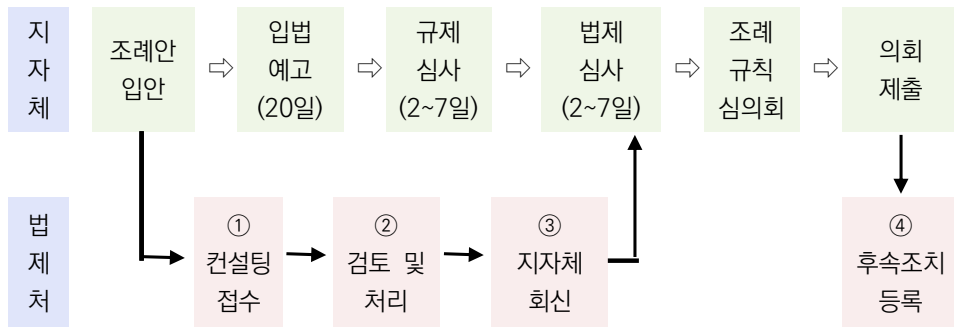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이탈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자치법규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을 요청하면, 자치법규입안지원과에서 일부 의뢰에 대하여 조례안의 알법 검토를 요청하며, 알기쉬운법령팀에서 조례안 알법 검토를 수행하고 권고안을 자치법규입안지원과에 통보한다.

10) 일반 국민들이 시행 중인 법령 등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관련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1) 조례안은 법령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어려운 법 용어를 검토하는 사업을 ‘알법 검토’라고 부르고 조례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분석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 검토’로 지칭하였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업 절차]



주: 컨설팅 접수 건 중 자치법규입안지원과에서 조례안 알법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알기쉬운 법령팀에서 조례안 알법 검토를 수행
 자료: 법제처

연도별 입법컨설팅 및 조례안 알법 검토 실적을 살펴보면, 입법컨설팅 실적은 2017년 172건에서 2021년 47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조례안 알법 검토 실적은 2017년 114건에서 2021년 61건으로 감소하여 입법컨설팅 건수 중 알법 검토를 마치는 비율은 2017년 66.3%에서 2021년 12.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알법 검토 실적]

(단위: 건,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입법컨설팅 실적(A)	172	207	280	449	474
조례안 알법 검토 실적(B)	114	154	154	90	61
알법 검토 비율(B/A)	66.3	74.4	55.0	20.0	12.9

자료: 법제처

법제처는 조례안 알법 검토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하여 자치법규입안지원과의 입법컨설팅 업무량 증가가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자치법규입안지원과에서 수행하는 입법컨설팅 안건 수가 2017년 172건에서 2021년 47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한 회신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아닌 조례안 알법 검토를 생략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면서 조례안 알법 검토 실적이

감소하였다는 것이다.¹²⁾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입법 컨설팅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알법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제처는 긴급 검토 요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수행 시 알법 검토를 거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2) 그러나 법제처는 알법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어려운 한자어, 어색한 번역 투 표현이나 문장구조 등 조례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알기 쉽게 고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 현 황

법령심사지원 사업¹⁾은 정부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각종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공포 등 입법절차의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안을 입안할 때부터 정책을 조문화하고 법리적 쟁점을 검토·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제처는 법령심사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액 3억 7,000만원 중 3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법령심사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령심사지원	370	370	-	370	337	-	33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정부가 국회에 연초 제출한 2021년도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은 48.6%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법제처는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을 제고하여 입법추진의 효율성과 법안 심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입법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국회법」 제5조의3²⁾에 따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032-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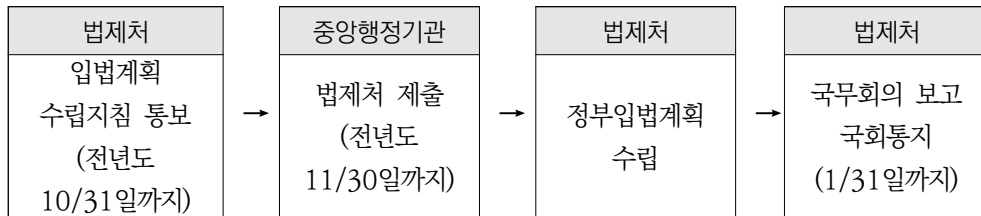
2) 「국회법」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①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부입법계획 수립 절차]



자료: 법제처

그러나 최근 5년간 정부가 연초 제출한 법률안 제출계획 이행률을 살펴보면, 2017년 53.5%에서 2020년 61.3%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의 경우 48.6%로 12.7%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간의 평균 이행률도 53.7%에 불과하여 연초 법률안 제출계획 대비 절반 가까이의 법률안이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초 법률안 제출계획 대비 국회제출 현황]

(단위: 건, %)

연도	연초 계획	연초 계획 대비 국회제출건수	이행률
2017	258	138	53.5
2018	347	182	52.4
2019	214	117	54.7
2020	186	114	61.3
2021	210	102	48.6
합 계	1,215	653	53.7

자료: 법제처

물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3)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추진

3)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수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제처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입법계획 추가 및 철회 건수가 연초 제출한 법률안 제출계획 1,409건 대비 1,151건으로 수정률이 81.7%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입법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동 제도의 도입 취지 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

[최근 5년간 연초 법률안 제출계획 대비 추가 및 철회 현황]

(단위: 건)

연도	연초 계획	입법계획 추가	입법계획 철회	수정 현황
2017	258	211	153	316
2018	347	64	172	239
2019	214	95	103	206
2020 ¹⁾	380	52	120	312
2021	210	60	121	149
합 계	1,409	482	669	1,222

주: 1) 제21대국회 개원 후 국회에 통지한 법률안 제출계획 기준

자료: 법제처

더욱이 소관 부처별로 2021년 연초 제출한 법률안 제출계획 대비 국회 제출현황을 살펴보면, 법률안 제출계획을 1건도 이행하지 않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인사혁신처, 국가인권위원회로 4개 부처이며, 보건복지부가 7건 중 1건(14.3%), 문화체육관광부가 6건 중 1건(16.7%)으로 28개 부처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법률안 제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14건 미이행)와 행정안전부(13건 미이행)로 나타나, 일부 부처의 경우 법률안 제출계획의 수립이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관 부처별 2021년도 연초 법률안 제출계획 대비 국회 제출 현황]

(단위: 건, %)

소관 부처	법률안 제출계획(A)	국회 제출 (B)	이행률	A-B
감사원	1	1	100.0	0
기획재정부	21	18	85.7	3
교육부	4	2	50.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4	44.4	5
외교부	1	0	0.0	1
통일부	1	1	100.0	0
법무부	27	16	59.3	11
국방부	12	4	33.3	8
행정안전부	32	19	59.4	13
문화체육관광부	6	1	16.7	5
농림축산식품부	20	6	30.0	14
산업통상자원부	4	0	0.0	4
보건복지부	7	1	14.3	6
환경부	6	2	33.3	4
고용노동부	5	3	60.0	2
여성가족부	2	1	50.0	1
국토교통부	3	1	33.3	2
해양수산부	12	5	41.7	7
국가보훈처	4	2	50.0	2
인사혁신처	1	0	0.0	1
식품의약품안전처	5	3	60.0	2
방송통신위원회	2	1	50.0	1
공정거래위원회	6	4	66.7	2
금융위원회	11	4	36.4	7
국민권익위원회	4	1	25.0	3
원자력안전위원회	2	1	50.0	1
국가인권위원회	1	0	0.0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1	100.0	0
합 계	210	102	48.6	108

자료: 법제처

「국회법」 제5조의3의 ‘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조항은 정부입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안의 국회 제출이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하여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제처는 동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를 전액 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 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0	0	0	3	3	0	0	100.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32억 2,000만원이며, 이 중 60.1%인 139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39억 4,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3억 3,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1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0	0	23,220	13,946	3,944	5,330	60.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산은 88억 9,200만원, 부채는 5백만원으로 순자산은 88억 8,7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60억 6,100만원, 일반유형자산 22억 5,000만원, 무형자산 5억 8,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직개편일('21.1.21.) 대비 68억 3,600만원 증가하였다. 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등 관련 선급금 60억 3,900만원 증가 및 홈페이지 구축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 3억 5,5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직개편일 대비 100.0%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1 조직개편일(B)	증 감	
			A-B	(A-B)/B
자 산	8,892	2,056	6,836	332.5
Ⅰ. 유동자산	6,061	15	6,046	40,306.7
Ⅱ. 투자자산	0	0	0	0.0
Ⅲ. 일반유형자산	2,250	1,816	434	23.9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580	225	355	157.8
Ⅵ. 기타비유동자산	0	0	0	0.0
부 채	5	0	5	0.0
Ⅰ. 유동부채	5	0	5	0.0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0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8,887	2,056	6,831	332.2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비용은 프로그램순원가 10억 200백만원, 관리운영비 62억 4,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300만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4억 4,100만원, 기타경비 18억,600만원이 발생한 것이며, 비배분수익은 잡이익 3백만원이 발생한 것이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는 72억 4,600만원이다.

[2021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회계연도
Ⅰ. 프로그램순원가	1,002
Ⅱ. 관리운영비	6,247
Ⅲ. 비배분비용	0
Ⅳ. 비배분수익	3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7,246
Ⅵ. 비교환수익 등	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7,246

*2021(A) : 조직개편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0억 5,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88억 8,700만원이다. 재원의 조달은 국고수입 139억 4,600만원, 기타 재원조달 1억 3,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재원의이전은 국고이전지출 3백만원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회계연도
Ⅰ. 기초순자산	2,056
Ⅱ. 재정운영결과	7,246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4,077
Ⅳ. 조정항목	0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8,887

*2021(A) : 조직개편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1회계연도 소관 예비비 집행액은 139억 4,600만원으로 전액 일반 예비비로 집행되었다. 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축 등을 위한 정보화 사업 예산,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수사 활동에 대한 수사활동비,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수사지원’, ‘수사일반’ 사업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5개 세부사업(수사지원 사업, 수사일반 사업, 기관운영 인건비(총액) 사업,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사업,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은 채용 지연으로 인하여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여 동 사업들에 배정된 예비비 118억 7,000만원 중 68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49억 7,700만원은 불용하여 집행률이 58.1%로 나타났다. 이는 검사 및 수사관 등의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집행 가능 규모 이상으로 예비비를 배정받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스템 구축 방식과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이견으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 추진 시에는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채용 지연에 따른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

가. 현 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 21일 출범하여, 공수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등 232억 2,00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았다.

공수처 소관 세출 사업은 4개 단위사업 및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예산현액 232억 2,000만원 중 139억 4,600만원(60.1%)이 집행되고, 39억 4,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3억 3,3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1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예산액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1001-300)	-	11,350	11,350	7,053	62.1	3,944	353
수사지원(1011-301)	-	189	189	74	39.2	-	115
수사일반(1011-302)	-	1,343	1,343	751	55.9	-	592
기관운영 인건비(총액) (7001-100)	-	7,322	7,322	3,783	51.7	-	3,539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	1,199	1,199	810	67.6	-	389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01)	-	1,817	1,817	1,475	81.2	-	342
합 계	-	23,220	23,220	13,946	60.1	3,944	5,330

주: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소관 세부사업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가장 낮은 사업은 수사지원 사업(39.2%)이며 집행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81.2%)으로 나타나, 6개 세부사업 모두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나. 분석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5개 세부사업 집행률은 58.1%로, 이는 검사·수사관 등의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집행 가능 규모 이상으로 예비비를 배정받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수사지원 사업, 수사일반 사업, 기관운영 인건비(총액) 사업,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사업,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서 ①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② 기관 출범 이후 진행된 채용으로 편성 대비 집행기간 차이로 인한 불용액 발생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출 사업 집행 부진 사유]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 부진 사유
수사지원	189	74	115	-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 기관 출범 이후 진행된 채용으로 편성 대비 집행기간 차이로 인한 불용액 발생
수사일반	1,343	751	592	
기관운영 인건비(총액)	7,322	3,783	3,539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1,199	810	389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1,817	1,475	342	
합 계	11,870	6,893	4,977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직무상 독립성·자율성을 지닌 독립 수사기관으로, 검사 25명(처·차장 포함), 수사관 40명, 행정직 20명이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수처는 동 인원을 2021년 1월 21일 출범 후에 전입, 파견, 선발 등의 과정을 거쳐 1~2개월 내에 충원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각 구성원에 대한 봉급으로 10~11개월분을 배정받았으며,

봉급 배정액 총액은 53억 2,694만원으로 공수처는 이 중 28억 8,913만원(54.2%)을 집행하였다. 이와 같은 근무기간 기준(10~11개월)은 봉급 이외의 수당 산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봉급 배정액 및 집행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산출 내역	배정액	집행액
		합계	5,326,943	2,889,127
검 사 · 수 사 관	처장	1명*10,991,167원*11개월	120,903	1,006,236
	차장	1명*10,875,333원*11개월	119,629	
	검사	평균 7,154,118원*23명*10개월	1,645,447	
	파견수사관	5급 (파견) 1명*6,566,836원*11개월	72,235	995,127
		6급 (파견) 2명*4,040,868원*11개월	88,899	
		7급 (파견) 7명*3,549,121원*11개월	273,282	
	수사처수사관	4급 6명*8,276,152원*10개월	496,569	
		5급 8명*6,566,836원*10개월	525,347	
		6급 10명*4,040,868원*10개월	404,087	
		7급 6명*3,549,121원*10개월	212,947	
일 반 직 원	인권감찰관	(고위 나급) 1명*10,425,575원*10개월	104,256	887,764
	기획조정관	(고위 나급) 1명*10,425,575원*11개월	114,681	
	파견자 4급	4급 (파견) 3명*8,729,789원*11개월	288,083	
	수사처 직원	4급 2명*8,729,789원*11개월	192,055	
		5급 4명*6,721,197원*11개월	295,733	
		6급 4명*4,025,401원*11개월	177,118	
		7급 3명*3,587,061원*11개월	118,373	
		연구사 1명*3,698,240원*11개월	40,681	
		전문경력관 나군 1명*3,328,873원*11개월	36,618	

주: 1. 기관운영 인건비(총액) 사업의 보수(110-01) 비목으로 편성된 '봉급' 내역임

2. 조직 규모가 작은 기관 특성상, 개인정보 우려로 직렬별 봉급 합산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직위·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공수처 직원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4월까지 50%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9월까지도 70% 수준으로 충원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위·직급별 정·현원 현황(월말기준)]

(단위: 명)

구 분		정원	현원								
			1월	2~3월	4월	5월	6월	7월	8~9월	10월	11~12월
처 장		1	1	1	1	1	1	1	1	1	1
차 장		1	1	1	1	1	1	1	1	1	1
공수처 검사		23	-	-	13	13	13	13	13	21	21
공수처 수사관		40	10	10	10	28	28	28	25	36	36
파견자	5급	-	1	1	1	1	1	1	1	1	-
	6급	-	2	2	2	2	2	1	1	-	-
	7급	-	7	7	7	7	7	6	3	1	1
내부 인원	4급	2	-	-	-	-	-	-	-	-	-
	4·5급	4	-	-	-	-	-	-	-	-	-
	5급	13	-	-	-	5	5	5	5	7	7
	6급	18	-	-	-	8	8	9	9	16	16
	7급	3	-	-	-	5	5	6	6	11	12
인권감찰관(고위 나급)		1	-	-	-	-	-	-	-	-	-
기획조정관(고위 나급)		1	1	1	1	1	1	1	1	1	1
일반 직원		18	12	16	16	16	17	18	18	18	18
파견자	4급	-	1	1	1	1	1	1	1	1	1
	4·5급	-	2	2	2	2	2	2	2	2	2
내부 인원	3·4급	1	-	-	-	-	-	-	-	-	-
	4급	2	1	1	1	1	1	2	2	2	2
	4·5급	2	-	-	-	-	-	-	-	-	-
	5급	4	2	2	2	2	2	2	2	2	2
	6급	4	1	2	2	2	3	3	4	4	4
	7급	3	4	7	7	7	7	7	6	6	6
	연구사	1	1	1	1	1	1	1	1	1	1
	전문경력관 나군	1	-	-	-	-	-	-	-	-	-
총 현원			25	29	42	60	61	62	59	78	78
정원 대비 현원(%)			29. 4	34. 1	49. 4	70. 6	71. 8	72. 9	69. 4	91. 8	91.8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를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4개월 정도이며, 수사관의 경우는 통상 3개월 정도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인건비에 대하여 예비비 배정을 요청할 때, 기준 기간을 10~11개월로 잡은 것은 공수처 출범 직후부터 1개월 이내에 모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채용절차 및 통상 소요기간인 3~4개월을 고려할 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채용절차 및 통상 소요기간]

임용공고	지원현황 작성 등	서류 전형	신원 조사	평판 조회	면접 시험	인사 위원회	인사 검증	합격자 임명
10일 이상	4주	1~2일	4~5주	1주	1~2일	1일	4주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채용절차 및 통상 소요기간]

임용공고	지원현황 작성 등	서류 전형	평판 조회	면접 시험	채용 점검	신원 조사	합격자 임명
10일 이상	4주	1~2일	1주	1~2일	1일	3~4주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채용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정하게 고려하지 않고 집행 가능 규모 이상으로 소요액을 산출하여 기관운영 인건비(총액)를 포함한 5개 세부사업¹⁾에서 50억 상당을 불용한 것은 2021년에 처음 출범하여 적정한 예산규모를 편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수처는 기관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채용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²⁾

1) 수사지원 사업, 수사일반 사업, 기관운영 인건비(총액) 사업,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사업,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이다.

2) 공수처는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공수처 직원 정원 85명 중 현원은 71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83.5%로 오히려 2021년도 연말보다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정원 23명 중 현원 20명, 수사관 정원 40명 중 현원 30명으로 대부분의 결원(13명)이 검사 또는 수사관에서 발생하였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구축 관련 타 기관과의 연계 필요

가. 현 황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을 통해 사건관리, 수사, 공소제기·유지 등 수사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수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101억 7,300만원 중 60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39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6,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 예산액	예비비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	11,350	0	11,350	7,053	3,944	353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	10,253	△80	10,173	6,012	3,901	260

주: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 분석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스템 구축 방식과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이견으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 추진 시에는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001-300의 내역사업

KICS는 법원·법무부·검찰·경찰·해경 등 형사사법기관들의 문서작성을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으로, 2010년 7월에 최초로 개통하여 운영 중이다. 현재 검찰, 법원 등 기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기관별로 KICS 서버를 운영하는 한편, 기관 간 정보 연계를 위하여 법무부 산하에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을 설치하여 공통시스템 서버의 설치·운영 및 각 기관 간 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도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소관 사건의 전산 처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수처 KICS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고, 2021년 7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6월 7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KICS 구축 사업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4개월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021년도 1월 출범하여 예비비 배정을 받는 시점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간을 단축시켜 2021년 12월에 공수처 KICS 구축을 완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어 계약 체결이 7월 15일로 지연되고,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다른 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공통망 연결 방식에 대한 이견²⁾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³⁾가 개최⁴⁾되는 등 공수처 KICS의 내·외부 연계 구축의 경우 사업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사업자 측에서 11월 4일 납기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시스템 개통이 2022년 6월로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배정받은 예비비 39억 상당이 이월되었다.

2) 공수처 KICS가 검찰, 경찰과 같이 KICS 공통망에 구축되어 기관 간 내부연계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검찰이 반대하였다.

3) 2021년 12월 28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 개정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공수처가 포함되었다.

4) 동 협의회에서 기존 KICS 공통망에 공수처 KICS가 외부연계 형태로 접속하는 방식에 최종 합의하였다.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 추진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4.27(화)	입찰의뢰	
4.29(목)~5.4(화)	사전규격공개	(긴급) 공고기간 : 6일
5.12(수)~5.28(금)	입찰공고	(긴급) 공고기간 : 17일
5.31(월)~6.11(금)	재공고	공고기간 : 12일
6.15(화)	제안서평가	온라인
~7.1(목)	기술협상	
7.15(목)	계약 체결	사업기간 : 240일(~'22.3.12.)
11.4(목)	납기연장	사업기간 : 330일(~'22.6.9.)
12.21(화)	1차 중간보고회	
'22.1.6(목)~	광주센터 장비입고	
'22.4.15(금)	2차 중간보고회	
'22.4.29(금)~	통합테스트	
'22.6.3(금)	시연회	
'22.6.7(화)	시스템 개통	
'22.6.8(수)~6.30(목)	안정화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KICS 구축이 늦어짐에 따라 사건 접수부터 처분까지 사건 처리 및 관리 업무를 수기 작업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많은 불편을 야기하였는데, 공수처는 동 시스템 외에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⁵⁾ 등을 위하여 형사사법기관 간 연계가 필요한 만큼,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공수처는 2024년부터 동 사업에 참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 현 황

정책연구비(260-02목)¹⁾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비용으로, 2021년도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중 9,1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을 불용하였다.

수사일반 사업은 공수처의 직접수사 활동을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도 예산현액 13억 4,300만원 중 7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9,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예비비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0	0	1,817	0	1,817	1,475	342
정책연구비(260-02)	0	0	300	△150	150	91	59
수사일반	0	0	1,343	0	1,343	751	592

주: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 분석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예산을 비목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비(260-02목)로 3개 과제를 진행하였는데, 공수처 CI 제작 과제²⁾,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설면적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7011-201의 세목

2) 공수처가 기관의 상징 문양으로 2016년 「정부기에 관한 공고」로 제정된 정부상징인 태극 문양을 사

기준수립 과제, 공수처법 법률 주석서 제작 과제이다.

[정책연구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집행액	계약기간	제출일
공수처 CI 제작	50	2021.4.14 ~2021.6.30	2021.9.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설면적 기준수립	21	2021.8.4 ~2021.10.15	2021.10.15
공수처법 법률 주석서 제작	20	2021.3.30 ~2021.10.15	2021.10.15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런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정책 연구비는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으로 정하고 있어 비목 선택이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CI 제작의 경우 ‘기업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인 일반용역비(210-14목)로, 공수처 시설기준 면적수립의 경우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인 일반연구비(260-01목)로 집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사일반 사업의 경우 업무용 택시 이용 대가를 일반수용비(210-01목)로 계상하고 있는데, 관련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비용은 국내여비로 집행하였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업무용 택시 이용 대가는 일반수용비(210-01목.)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용 택시 이용 대가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비목	집행액
업무용 택시 이용 대가	일반수용비(210-01목)	6,357
업무용 택시 이용 대가	국내여비(220-01목)	5,344
합 계		11,701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용하고 있었으나,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태극 문양은 독립기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CI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이다.



감사원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억 900만원이며, 7억 2,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09	609	609	727	727	0	0	100.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감사원

2021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374억 2,000만원이며, 이 중 91.9%인 1,263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8억 7,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감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1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35,833	135,833	137,420	126,318	224	10,878	91.9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감사원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기준 감사원의 자산은 2,200억 5,600만원, 부채는 12억 4,400만원으로 순자산은 2,188억 1,3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0억 2,500만원, 일반유형자산 2,126억 8,200만원, 무형자산 59억 7,8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3억 7,1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403억 2,100만원(22.4%) 증가하였다. 이는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등 자산 감소사유에도 불구하고 자산 재평가주기 도래에 따른 토지·건물 재평가, 1별관 재건축에 따른 건설중언자산 증가 등의 자산 증가분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부채는 유동부채 1,000만원, 장기충당부채 12억 3,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2억 1,900만원(21.4%) 증가하였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무보조원 등(84명)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의 증가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감사원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20,056	179,735	40,321	22.4
Ⅰ. 유동자산	1,025	1,586	△561	△35.4
Ⅱ. 일반유형자산	212,682	169,805	42,877	25.3
Ⅲ. 무형자산	5,978	7,668	△1,690	-22.0
Ⅳ. 기타비유동자산	371	676	△305	△45.1
부 채	1,244	1,025	219	21.4
Ⅰ. 유동부채	10	10	0	0
Ⅱ. 장기충당부채	1,233	1,014	219	21.6
순 자 산	218,813	178,710	40,103	22.4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2021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274억 4,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충원가 1,402억 1,900

만원, 비배분비용이 1,100만원이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억 2,900만원, 비배분수익 123억 5,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89억 100만원(6.5%) 감소한 1,274억 4,9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가 37억 9,800만원 증가한 반면, 여비교통비 11억 9,000만원, 외주용역비 8억 2,800만원 감소하였고, 자산재평가 등으로 비배분수익이 12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1회계연도 감사원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139,790	136,411	3,379	2.5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11	-	11	-
IV. 비배분수익	12,351	61	12,290	20,148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27,449	136,350	△8,901	△6.5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27,449	136,350	△8,901	△6.5

자료: 감사원

감사원의 2021년도 기초순자산은 1,787억 1,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188억 1,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401억 300만원(22.4%)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274억 4,9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이 1,428억 7,500만원 발생하였고, 기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조정항목이 246억 7,600만원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세출결산액) 1,263억 1,800만원, 공무원 연금 등 국가부담액 172억 8,100만원 등 재원의 조달 1,436억 200만원과 재원의 이전 △7억 2,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유형자산(토지) 재평가이익 246억 7,6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감사원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178,710	173,707	5,003	2.9
Ⅱ. 재정운영결과	127,449	136,350	△8,901	△6.5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42,875	139,568	3,307	2.4
Ⅳ. 조정항목	24,676	1,785	22,891	1,282.4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218,813	178,710	40,103	22.4

자료: 감사원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국제교류협력강화, ② 감사활동 경비 등이 있고, 증액된 사업으로 적극행정지원 사업이 있다.

국제교류협력강화는 'ASOSAI-EUROSAI 공동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의 그간의 집행실적과 2021년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1백만원 감액(766백만원→755백만원) 되었고, 감사활동경비는 감사활동경비에 포함된 '적극행정지원' 사업의 경우 다른 주요사업의 예산 편성방식을 참고할 때 감사활동과 구별되는 특정사업의 경우 이를 주요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등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 348백만원이 감액(20,510백만원→20,162백만원)되었다.

또한, 적극행정지원은 위 감사활동경비에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예산 348백만원이 증액(0→348백만원)되었다.

국회가 「2021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감사원 관련 사항은 없었다.

감사원은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에 적극 동참하면서 감사환경 변화 및 감사 프로세스 개선 등에 따라 감사활동 관련 경비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하고, 절감 재원은 신규사업을 위한 소요재원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적극행정을 사전적으로 지원하고자 2019년에 도입된 사전컨설팅 제도는 총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 활용이 저조해 보이므로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모범 공직자 해외연찬 사업은 모범 공직자로 선정된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적정 수준의 포상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포상을 받지 못한 모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 지급을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심의 청구인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재심의 청구인의 재심의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적극행정 지원 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

적극행정 지원 사업¹⁾은 ① 사전컨설팅 제도, ② 적극행정 면책제도, ③ 모범사례 포상 제도 ④ 재심의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고 감사 수감자의 권익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액 3억 4,800만원 중 2억 2,700만원을 집행(65.2%)하고 1억 2,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적극행정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적극행정 지원	348	348	348	227	65.2	-	12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감사원

동 사업은 국회 예산심사 시 기존 ‘감사활동경비(1131-303)’ 사업에서 적극행정 지원 관련 예산을 별도의 세부사업(1131-304)으로 분리하여 신설되었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1-304

1-1.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모범사례 포상이라는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운영해왔으나, 두 제도 모두 사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체감도가 낮고 감사불안도 여전하다는 판단 하에 적극행정 지원수단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일선 행정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풍이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인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2019년 1월에 동 제도를 시행하였다.²⁾

나. 분석의견

적극행정을 사전적으로 지원하고자 2019년에 도입된 사전컨설팅 제도는 총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 활용이 저조해 보이므로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자체감사기구³⁾가 사전에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는 제도로 「감사원법」 제30조의2⁴⁾ 및 제49조⁵⁾를 근거로 한다.

2) 적극행정 지원 사업 중 ‘모범사례 발굴 및 사전컨설팅 처리’를 위해 2021년에 편성된 예산은 5,832만원이며, 이 중 5,213만원을 집행(89.4%)하였다.

3) 동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자체감사기구에서 운영 중이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 제도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검토를 요구하면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는 제도로, 2014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감사원에서 2018년 7월 각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안이 중대·복잡하거나 제도·규정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에서도 직접 판단하기 어려워 문제 해결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사원은 사전컨설팅제도를 도입하여 자체감사기구에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 감사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감사원에서 직접 사안을 검토해 의견을 회신해주고자 하였다.

4) 「감사원법」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원 감사대상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하며, 감사원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과를 회신한다. 공직자는 사전컨설팅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하며, 감사원·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사업개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자체감사기구가 사전에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는 제도
근거	① 「감사원법」 제30조의2: 자체감사기구 활동 지원 규정 ② 「감사원법」 제49조: 회계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권한
신청주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신청대상	수요기관(부서)이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원 감사대상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다만, 사적 이해관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배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2항)
결과회신	신청사항을 검토하여(중요사안은 감사위원회를 거쳐 결과 확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감사위원회 논의 시 60일) 결과 회신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감사원법」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① 국가의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감사원에 보내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1. 국가의 회계 관계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2. 국가의 현금, 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부기(簿記)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3.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배제·제한하는 등의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4. 자체감사 업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 ②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회계사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상의 문점에 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경우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답변하여야 한다.

구 분	세부 내용										
효력	공직자는 사전컨설팅 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감사원·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절차	<table border="1"> <tr> <td>① 신청 및 접수</td><td>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td></tr> <tr> <td>② 검토 및 조사</td><td>서면검토 및 조사/ 중앙행정기관·법제처 의견조회</td></tr> <tr> <td>③ 감사부서 의견 조회</td><td>- 院감사부서 의견조회 - 院간부 회람</td></tr> <tr> <td>④ 통보</td><td>사전컨설팅 의견서 통보</td></tr> <tr> <td>⑤ 이행관리</td><td>이행결과 제출 및 공개문 게재</td></tr> </table>	① 신청 및 접수	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② 검토 및 조사	서면검토 및 조사/ 중앙행정기관·법제처 의견조회	③ 감사부서 의견 조회	- 院감사부서 의견조회 - 院간부 회람	④ 통보	사전컨설팅 의견서 통보	⑤ 이행관리	이행결과 제출 및 공개문 게재
① 신청 및 접수	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② 검토 및 조사	서면검토 및 조사/ 중앙행정기관·법제처 의견조회										
③ 감사부서 의견 조회	- 院감사부서 의견조회 - 院간부 회람										
④ 통보	사전컨설팅 의견서 통보										
⑤ 이행관리	이행결과 제출 및 공개문 게재										

자료: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지원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유치원시설 임대 수의계약 관련 사안,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사안, 코로나19 특별 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사안, 도시철도역사 내 약국 개설신고 수리 사안 등에서 사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사후 책임추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컨설팅 주요 사례]

연번	질의내용 및 사전컨설팅 결과
1	(유치원시설 임대 수의계약 관련) A처는 공무원연금공단 시설내 유치원이 설립자 사망으로 폐원 위기에 처하자 운영 유지를 위해 학부모가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시설임대 가능한지 질의 (회신)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위 조합이 유일하여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시설 임대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회신
2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A부는 중대본 권고에 따라 '20.2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단 중인데, 참여노인의 생계난 완화를 위해 지침 변경을 통해 활동비(3월분 1,467억 원)를 선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회신) 지침 개정을 통해 3월분 활동비 선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

연번	질의내용 및 사전컨설팅 결과
3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A부에서 계약전력 자료를 대체 지표로 활용하여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先 감면, 後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회신) 우선 감면 필요성과 사후정산 방법을 고려, 가능한 것으로 검토
4	(도시철도역사 내 약국 개설신고 수리) A시가 도시철도역사에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기초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이 없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사전컨설팅을 신청 (회신) 약국 개설등록 신청이 약국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약국 개설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도시철도역사에 건축물대장이 없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
5	(댐건설사업 시행자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A부는 댐사업시행자가 대체도로를 설치한 후 무상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기준도로)의 범위에 대해 질의 (회신) 기준도로가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후 실시계획 승인 시점까지 공용폐지 없이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되어 왔다면, 댐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인 대체도로를 설치한 후 기준도로는 실시계획 승인 당시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상관없이 댐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된다는 의견 제시

자료: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의 연도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총 접수 건수 101건 중 39건이 인용되었고, 2020년은 총 접수 건수 84건 중 46건이 인용되었으며, 2021년은 총 접수 건수 74건 중 38건이 인용되어, 제도 도입 이후로 지속적으로 총 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

6)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원은 ‘인용’, ‘기각’, ‘반려’, ‘취하’, ‘의견제시’로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인용’이란 신청기관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기각’은 신청기관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고, ‘취하’는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의미하며, ‘의견제시’는 인용 혹은 기각이 아닌 별도의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이다.

[연도별 사전컨설팅 제도 실적]

(단위: 건)

연도	총 접수	완료					검토 중
		인용	기각	반려	취하	의견제시	
2019	101	39	18	25	19	-	-
2020	84	46	6	26	6	-	-
2021	74	38	5	6	18	5	2
2022.7.25.	28	12	2	4	2	-	8
계	287	135	31	61	45	5	10

주: 1. 2022년도는 7월 25일 기준

2. 사전컨설팅 결과 '인용'은 신청기관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기각'은 신청기관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취하'는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의견제시'는 인용 혹은 기각이 아닌 별도의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를 의미

자료: 감사원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각 기관에서 자체 처리하는 사전컨설팅 건수가 증가하고, 행정안전부 및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로부터 신청받아 처리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건수 또한 증가함에 따라 총 접수 건수가 감소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20년부터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 방역 등 긴급처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5일 이내 처리(평균 2.2일)하는 '패스트트랙' 제도와 신규 컨설팅사항을 발굴하고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4월부터는 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도 사전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다. 다만, 패스트트랙 제도의 경우 2020년도 12건의 실적 이후로 2021년 8건, 2022년 1건으로 활용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및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제도 실적]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패스트트랙	12건	8건	1건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2개 기관/ 9건 검토, 1건 접수	7개 기관/ 32건 검토, 8건 접수	-

자료: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기존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모범사례 포상 제도의 사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책임추궁에 대한 우려 해소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전컨설팅 접수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모범 공직자 등에 대한 적정 수준의 포상 체계 마련 등 필요

가. 현황

모범사례 포상 제도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모범 공직자와 모범부서·기관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제도로, 1982년부터 시행한 모범 공직자 및 모범기관 발굴 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2018년 7월 ‘모범사례 발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 이후 감사원에서 발굴한 모범사례를 유형화하여 자체감사기구에 배포하였고, 자체 감사기구로부터 모범사례 후보를 추천받아 관련 감사를 통해 점검한 후 포상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모범 공직자 해외연찬 사업은 모범 공직자로 선정된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적정 수준의 포상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포상을 받지 못한 모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 지급을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4조의2제1항을 근거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감사 시 모범 공직자 및 부서·기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모범 공직자 및 부서·기관(이하 ‘모범 공직자 등’) 선정대상은 행정능률 향상 또는 예산 절감 방안 등을 제안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자로서, 모범 공직자 등으로 선정되면 감사원장 또는 기관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하고 해당 모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연찬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모범 공직자 등 선정현황을 보면, 2017년 모범 부서·기관 3개 및 모범 공직자 3명, 2018년 모범 부서·기관 13개 및 모범 공직자 5명, 2019년 모범 부서·기관 14개 및 모범 공직자 5명, 2020년 모범 부서·기관 17개 및 모범 공직자 7명, 2021년 모범 부서·기관 11개 및 모범 공직자 9명이다.

[연도별 모범 공직자 등 선정현황]

(단위: 개, 명)

연도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부서·기관	공직자	부서·기관	공직자	부서·기관	공직자	부서·기관	공직자
2017	3	3	1	0	2	3	0	0
2018	13	5	4	1	6	2	3	2
2019	14	5	5	4	5	1	4	0
2020	17	7	5	2	5	3	7	2
2021	11	9	4	3	4	5	3	1

자료: 감사원

2019년도 이전에는 모범 공직자 등에게 감사원장 또는 기관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하고 해외연찬을 실시하였으나, 2020년 및 2021년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현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미실시하였다.

[연도별 모범 공직자 등 인센티브 제공 현황]

연도	모범공직자 등 인센티브 제공 현황
2017	감사원장 또는 기관장 표창, 모범직원 등 10명 해외연찬
2018	감사원장 또는 기관장 표창, 모범직원 등 14명 해외연찬
2019	감사원장 또는 기관장 표창, 모범직원 등 13명 해외연찬
2020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연찬 미실시
2021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연찬 미실시

자료: 감사원

이에 따라 2020년 이후로 모범 공직자는 표창 외에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2021년도 모범 공직자 해외연찬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액 8,700만원 중 집행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 공직자 해외연찬 예산 집행내역]

2021년도 예산액	산출내역	집행액
87백만원	18명 × 4.83백만원	없음

자료: 감사원

이와 같이 감사원이 모범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해외연찬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여부가 불확실하고 모범 공직자로 선발된 공직자들의 선호가 다양하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⁷⁾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감사원은 모범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적정 수준의 포상체계를 설계⁸⁾⁹⁾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포상을 받지 못한 모범 공직자에 대한 포상을 빠르게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21.11.

8) 감사원은 2017년~2021년까지 선정한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모범사례 포상에 관한 인센티브 선호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현행 해외연찬 제도 유지, ② 포상금, ③ 인사가점 등 인사상 혜택, ④ 특별승급(또는 특별상여금) 중 선호하는 인센티브를 조사한 결과, 2017년~2019년에 선정되어 해외연찬을 이미 경험한 공직자 집단(34명)에서는 해외연찬(55.6%), 특별승급(44.4%) 순으로 선호하였고, 2020년~2021년에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해외연찬을 경험하지 못한 공직자 집단(54명)에서는 해외연찬(41.2%), 특별승급(29.4%), 인사가점(17.6%), 포상금(11.8%) 순으로 선호하였다.

9) 감사원은 모범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적정 수준을 포상체계 마련을 위하여, 감사원규칙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을 2022년 7월 19일 제정 및 시행하였다. 동 법령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에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한 근거 법령을 포함하고 있다.

1-3.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6조¹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¹¹⁾에 의거하여 재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심의제도는 감사원의 변상판정이나 처분요구 및 통보 등(이하 ‘처분요구등’)을 받은 자,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처분요구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변상판정에 대해서는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요구등에 대해서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각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재심의 청구인의 재심의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법」 제38조제3항¹²⁾에 따르면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10) 「감사원법」

제36조(재심의 청구) ①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권고·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11) 「감사원법」 제36조(재심의 청구), 제37조(재심의 청구의 방법),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제39조(직권 재심의), 제40조(재심의의 효력)

12) 「감사원법」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③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심의 청구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2개월 이내 처리비율이 2021년 8.7%, 5년 평균 10.7%이고 연도별 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짧게는 213일, 길게는 328일로 5년 평균 271일인 상황이며, 특히 2021년도의 경우 처리건수 46건 중에 처리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가 24건(52.2%)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심의 청구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 일)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재심의 대상 처분요구건수		1,577	1,066	1,151	731	1,511	6,036
접수건수		72	29	54	37	49	241
처리건수		94 (100.0)	51 (100.0)	32 (100.0)	48 (100.0)	46 (100.0)	271 (100.0)
처 리 기 간	2개월 이내 (건)	7 (7.4)	7 (13.7)	6 (18.8)	5 (10.4)	4 (8.7)	29 (10.7)
	2개월~1년 이내 (건)	51 (54.3)	26 (51.0)	17 (53.1)	36 (75.0)	18 (39.1)	148 (54.6)
	1년 초과 (건)	36 (38.3)	18 (35.3)	9 (28.1)	7 (14.6)	24 (52.2)	94 (34.7)
건당 평균처리기간		328	287	231	213	294	271

주: 2020년 10월 「감사원법」 개정으로 권고·통보사항도 재심의 청구대상에 새로 포함

자료: 감사원

재심의의 특성상 신중한 처리를 위해서는 법정기간이 도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2021년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있었다는 점¹³⁾을 감안하더라도 원칙적인 재심의 처리기간 준수율이 8.7%에 그치고 있고 평균 처리기간이 약 300일에 달한다는 것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적극적인 재심의 처리를 위해 「감사원법」에서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재심의 처리 지연의 원인은 인력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감사원법」 규정에 따른 한계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법」

13) 감사원은 재심의 처리의 경우 청구인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나, 코로나19의 확산을 계기로 현장조사를 자제함에 따라 원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입장이다.

제38조제3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 법정기간(2개월)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언제까지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처리기간이 1년을 경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므로, 감사원이 재심의 처리를 신속하게 수행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법에는 감사원이 2개월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 및 예상 처리가능 시기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또는 재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절차 등이 없어 재심의 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등 청구인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은 권리 및 알권리 실현에 한계가 있다.

한편, 「국회법」 제127조의2¹⁴⁾에 따르면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경우에 감사원이 특별한 사유로 3개월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국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연장 시 처리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에 대한 재심의 청구와 국회의 감사 요구는 대상 및 목적을 달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감사원이 재심의 처리기간을 연장 시 사안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감사원이 재량으로 예상 처리기간을 통지하는 방안 등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재심의의 적정 처리 및 충실한 심리가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재심의 청구인의 재심의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4)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881억 9,400만원으로, 7,896억 5,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8%인 7,881억 2,600만원을 수납하고, 15억 2,900만원은 미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29,402	629,402	629,402	436,190	434,680	1,510	0	99.7
등기특별회계	358,792	358,792	358,792	353,464	353,446	19	0	100.0
합계	988,194	988,194	988,194	789,655	788,126	1,529	0	99.8

자료: 대법원

2021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921억 7,400만원으로, 이 중 1조 9,332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246억 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43억 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718,024	1,718,024	1,723,903	1,653,500	16,754	53,650	95.9
등기특별회계	358,792	358,792	368,271	279,761	7,858	80,652	76.0
합계	2,076,816	2,076,816	2,092,174	1,933,260	24,612	134,302	92.4

자료: 대법원

나.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현액은 1,453억 1,500만원이며, 1,247억 8,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0%인 1,235억 9,700만원을 수납하고, 11억 9,0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45,315	145,315	145,315	124,787	123,597	1,190	0	99.0

자료: 대법원

2021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468억 1,100만원이며, 이 중 84.2%인 1,235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48억 2,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3억 2,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45,315	145,315	146,811	123,597	4,825	10,325	84.2

자료: 대법원

다.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대법원의 자산은 8조 7,496억 7,300만원, 부채는 594억 500만원으로 순자산은 8조 6,902억 6,8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212억 2,300만원, 일반유형자산 8조 5,427억 5,300만원, 무형자산 389억 9,3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467억 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조 7,241억 3,400만원(24.5%) 증가하였다. 이는 무형자산이 28억 2,7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이 1조 6,688억 4,6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412억 1,000만원, 유동자산이 169억 500만원 증가한데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279억 4,100만원, 장기차입부채 232억 400만원, 장기충당부채 2억 6,0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80억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70억 8,000만원(10.6%) 감소하였다. 이는 기타비유동부채가 80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차입부채가 109억 2,500만원, 유동부채가 41억 5,300만원, 장기충당부채가 200만원 감소한데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대법원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8,749,673	7,025,539	1,724,134	24.5
Ⅰ. 유동자산	121,223	104,318	16,905	16.2
Ⅱ. 투자자산	0	0	0	0.0
Ⅲ. 일반유형자산	8,542,753	6,873,907	1,668,846	24.3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38,993	41,820	△2,827	△6.8
Ⅵ. 기타비유동자산	46,704	5,494	41,210	750.1
부 채	59,405	66,485	△7,080	△10.6
Ⅰ. 유동부채	27,941	32,094	△4,153	△12.9
Ⅱ. 장기차입부채	23,204	34,129	△10,925	△32.0
Ⅲ. 장기충당부채	260	262	△2	△0.8
Ⅳ. 기타비유동부채	8,000	0	8,000	100
순 자 산	8,690,268	6,959,054	1,731,214	24.9
Ⅰ. 기본순자산	3,931,501	3,931,501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856,227	894,458	△38,231	△4.3
Ⅲ. 순자산 조정	3,902,539	2,133,095	1,769,444	83.0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조 6,543억 5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6,558억 5,600만원, 관리운영비 1조 6,875억 9,500만원, 비배분비용 30억 8,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71억 3,500만원, 비배분수익 6,006억 9,100만원, 비교환수익 등 844억 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결과(프로그램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비교환수익)는 1조 6,543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29억 5,500만원(14.0%)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사법정보화운영 프로그램 추가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1,738억 1,200만원 증가하고, 관리운영비가 590억 2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대법원은 총 3개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재판활동지원프로그램(2,282억 8,200만원)과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2,880억 1,500만원), 사법정보화운영

프로그램(1,324억 2,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조 3,715억 2,300만원과 경비 3,160억 7,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 30억 8,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배분수익은 재화및용역제공수익 5,562억 9,900만원, 이자수익 2억 3,500만원, 자산처분이익 35억 4,900만원, 기타수익 406억 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환수익 등은 제재금수익 4억 3,500만원, 기타재원조달및이전 839억 7,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대법원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648,722	474,910	173,812	36.6
가. 프로그램 총원가	655,856	481,768	174,088	36.1
나. 프로그램 수익	7,135	6,857	277	4.0
Ⅱ. 관리운영비	1,687,595	1,628,593	59,002	3.6
Ⅲ. 비배분비용	3,085	306	2,779	908.2
Ⅳ. 비배분수익	600,691	560,454	40,237	7.2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738,710	1,543,355	195,355	12.7
Ⅵ. 비교환수익 등	84,406	92,006	△7,600	△8.3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654,305	1,451,350	202,955	14.0

자료: 대법원

대법원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6조 9,590억 5,4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8조 6,902억 6,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조 7,312억 1,400만원(24.9%)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조 6,543억 5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1조 7,694억 4,4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조 6,160억 7,500만원 발생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비교환수익,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2조 3,263억 4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7,102억 2,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

은 자산재평가이익 1조 7,694억 4,4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6,959,054	6,798,394	160,660	2.4
Ⅱ. 재정운영결과	1,654,305	1,451,350	202,955	14.0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616,075	1,544,280	71,795	4.6
Ⅳ. 조정항목	1,769,444	67,730	1,701,714	2,512.5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8,690,268	6,959,054	1,731,214	24.9

자료: 대법원

라. 재정 구조

2021회계연도 대법원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등기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82억원 전출되었다.

[2021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일반회계	
세입	4,347(6,294)
세출	16,535(17,239)

등기특별회계	
세입	3,534(3,588)
세출	2,798(3,683)

전출 182억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운용규모	1,236(1,468)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소관)	
-----------------------	--

주: 1. 총계기준

2. ()내 수치는 예산현액

자료: 대법원

대법원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② 재판절차비용지원, ③ 전문재판운영, ④ 일반 인건비, ⑤ 교육원 기본경비, ⑥ 교육원운영지원, ⑦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등이 있다.

세출예산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은 상임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2억 8,500만원이 감액(117억 4,800만원→114억 6,300만원)되었고, 재판절차비용지원 사업은 상임위 및 예결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1억원이 감액(362억 5,100만원→361억 5,100만원)되었으며, 전문재판운영 사업은 상임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1억 900만원이 감액(48억 1,000만원→47억 100만원)되었다. 그리고 일반 인건비 사업은 상임위 및 예결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160억원이 감액(1조 1,950억 6,400만원→1조 1,790억 6,400만원)되었고, 교육원 기본경비 사업은 상임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2,200만원이 감액(16억 9,400만원→16억 7,200만원)되었으며, 교육원운영지원 사업은 상임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2억 4,000만원이 감액(32억 4,500만원→30억 500만원)되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계획안의 사법서비스향상 사업은 상임위 및 예결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1억 5,400만원 감액(468억 4,100만원→466억 8,700만원)되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법원의 후견적 기능강화 사업 등이 있다. “대법원은 이용예상인원과 대상 법원의 여유공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면접교섭센터 예산액을 편성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면접교섭센터 사업과 상호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대법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①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② 국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원, ③ 재판이 중심이 되는 독립되고 민주적인 법원, ④ 국민이 다가가기 쉬운 법원, ⑤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가 되는 법원 ⑥ 미래를 준비하는 법원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가족관계등록자료정비사업소 건물 임차료와 기계약 장비 임차료에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2022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무실 임차료를 2021년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 이월한 것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향후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여수등기소 신축 사업 추진시 관련 법령 검토 미흡으로 큰 폭의 예산전용을 통해 토지매입비를 집행하였으므로 대법원은 향후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대법원은 일반용역비(210-14비목)로 집행하여야 할 영상자료 제작비를 일반수용비(210-01비목)로 집행하였으므로 예산을 비목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임차료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연례적 불용

가. 현 황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사업¹⁾은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부 등·초본 열람·발급,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대법원은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188억 600만원 중 179억 400만원(95.2%)을 집행하고, 9억 2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가족등록업무 전산화(정보화)	18,806	18,806	0	0	18,806	17,904	95.2	0	902
임차료(210-07)	4,499	4,499	0	0	4,499	3,916	87.0	0	583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가족관계등록자료정비사업소 건물 임차료와 기계·장비 임차료에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법원은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 임차료와 기계·장비 임차료, 신규 장비 임차료 등을 임차료(210-07비목)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심상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332-303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2017~2021년) 임차료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건물 임차료와 기계약 장비 임차료에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물임차료 예산은 매년 동일한 예산(1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2,200만원~3,500만원이 불용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사업 임차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세목 조정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내역
2017	5,139	△9	5,127	4,700	416	○ 건물임차료 156 중 35 ○ 기계약(12~16년) 4,780 중 305(6.4%) ○ 신규장비 낙찰차액 76
2018	3,658	△50	3,608	3,340	268	○ 건물임차료 156 중 26 ○ 기계약장비(13~17년) 및 신규장비 3,452 중 239
2019	4,297	0	4,297	3,823	474	○ 건물임차료 156 중 29 ○ 기계약(15~18년) 3,386 중 345(10.2%) ○ 신규장비 낙찰차액 100
2020	4,806	0	4,806	4,259	547	○ 건물임차료 156 중 23 ○ 기계약(15~19년) 4,650 중 524(11.3%)
2021	4,499	0	4,499	3,916	583	○ 건물임차료 156 중 22 ○ 기계약(16~21년) 3,803 중 472(12.4%) ○ 신규장비 낙찰차액 89

자료: 대법원, 각년도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장비사업의 경우 낙찰금액이 아닌 발주금액을 기준으로 5개년 예산을 나누어 편성하고 있고, 만약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매년 금리 및 요율²⁾의 변동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음연도 건물임차료는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기존 장비 임차료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존 계약을 근거로 예산을

2)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HW 및 SW 신규 임차료의 경우 임차기간에 따라 평균 임차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데 임차기간이 5년인 경우 3개월 선납(변동금리)을 기준으로 월 임차료율 1.8%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정 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3년간(2019~2021년) 기계약 장비 임차료 예산 대비 불용률이 10% 이상으로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자료정비사업소 건물 임차료와 기계약 장비 임차료를 적정하게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 현 황

미래등기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¹⁾은 종이기반의 등기업무프로세스 및 기존 등기정보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여 부실등기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신력 기반의 국가등기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법원은 미래등기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169억 6,600만원 중 129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38억 7,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5,3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미래등기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미래등기시스템구축	13,084	13,084	3,882	0	16,966	12,936	3,878	153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동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3,0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동 시스템 구축 완료 시 가까운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첨부서류 발급을 위한 타 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류제출이 완료되며, 모든 등기신청서류의 전자화 및 영구보관을 통해 부실등기로 인한 분쟁이 감소되고 종이 없는 등기소 구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미래등기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총사업비	3,068억원
사업기간	• 2020~2024년 구축, 2025~2029년 유지보수
추진경과	• 2014년: 등기업무 BPR/ISP • 2018년: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20년: 미래등기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 • 2021년: 미래등기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2022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무실 임차료를 2021년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 이월한 것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향후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법원은 미래등기추진단 사무실 임차료 4개월 분 2억 4,000만원(4개월×60백만원)을 2020년에 이월하여 2021년에 집행한 데 이어 2021년에도 2022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였다. 그런데 사무실 임차료의 경우에는 이월하여 집행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020~2021년 미래등기추진단 사무실 임차료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0	720	720	0	0	720	291	240	189
2021	720	720	240	0	960	715	240	5
2022	480	480	240	0	720	-	-	-

자료: 대법원

이에 대해 대법원은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입예산 조정 협의로 인하여 2020년 7월이 되어서야 시스템 구축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미래등기추진단 사무실 임차계약 역시 2020년 7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²⁾에 따라

4개월분의 사무실 임차료를 사고이월 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이월 사유는 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②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 ④ 기본경비 등으로 동 사업의 사무실 임차료는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동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연도에 집행하여야 하는 주요사업비의 사무실 임차료의 경우 해당연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가. 현 황

등기소 신증축 사업¹⁾은 등기소를 신·증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도시 지역의 등기소를 통·폐합하여 광역등기소를 신축함으로써 인력감축, 예산절감, 등기업무 전문화로 인한 업무능률 향상 및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업이다. 대법원은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293억 2,900만원 중 227억 7,200만원(77.6%)을 집행하고, 36억 2,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9억 2,8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등기소 신증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등기소 신증축	23,356	23,356	5,597	376	29,329	22,772	77.6	3,629	2,928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여수등기소 신축 사업 추진시 관련 법령 검토 미흡으로 큰 폭의 예산전용을 통해 토지매입비를 집행하였으므로 대법원은 향후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법원은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여수등기소 신축 사업을 2021년부터 신규로 추진하였다. 여수등기소 신축 사업은 노후·분산된 여수등기소(45년 경과)와 여천등기소(32년 경과), 2개의 소규모 등기소를 통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등기특별회계 1252-411

비 77억 4,000만원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여수등기소 신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비(건설보상비)를 예산액 5억 6,500만원 대비 487.6%(27억 5,500만원) 전용 증액하여 33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다. 대법원이 예산을 전용 증액하여 집행한 이유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1년 이내 완납해야 하는 토지매입비를 3년 분납을 전제로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대법원은 관련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2021회계연도 여수등기소 신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내내역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여수등기소 신축	763	763	0	2,755	3,518	3,496	99.4	0	25
건설보상비 (410-00)	565	565	0	2,755	3,320	3,320	10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2021년 등기소 신증축 사업 중 여수등기소 전용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에서		금액	감액 내역	~으로		증액 내역
세부사업	비목			세부사업	비목	
등기소 신증축	공사비 (420-03)	2,509	수원광역등기소 공사비, 감리비	좌동	건설보상비 (410-00)	여수등기소 건설보상비
	감리비 (420-04)	246				
	합계	2,755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축부지 선정 및 부지매입이 지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집행을 관리 측면에서 다소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기간(3년) 등을 고려하여 3년 분납을 전제로 토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받으나 신축 여수등기소 부지는 특별법 성격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로 「동법 시행령」²⁾,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9조³⁾는 분양택지대금 납부기한을 1년 이내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처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⁴⁾과 「동법 시행령」⁵⁾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매각대금을 전액 한꺼번에 내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여 등기소를 신축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명세
 2.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3. 분양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5.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 3)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9조(분양대금의 수납방법) ① 택지분양대금은 “별표”에 의한 기간내에 수납한다.
 「별표」 분양택지대금 납부기한, 주거단독용지(공공용지), 12개월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가. 현 황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¹⁾은 재판운영에 소요되는 간접경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원활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법원은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427억 8,600만원 중 406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8,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0억 4,700만원은 불용하였다.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²⁾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과 알권리 강화, 대국민 소통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법원은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의 2021년도 계획현액 467억 4,200만원 중 383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80억 5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 및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계획)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재판일반경비지원	42,770	42,770	16	0	42,786	40,654	95.0	85	2,047
사법서비스 향상	46,687	46,687	55	0	46,742	38,399	82.2	337	8,00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대법원은 일반용역비(210-14비목)로 집행하여야 할 영상자료 제작비를 일반수용비(210-01비목)로 집행하였으므로 예산을 비목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심선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43-404

2)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61-304

대법원은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에서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제작 명목으로 일반수용비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법서비스향상 사업에서 대법원 홍보를 위한 드론촬영 및 영상 제작 1,000만원, 2021년 국민참여재판 홍보영상 제작 2,400만원, 총 3,4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영상자료 제작비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021년 영상자료 제작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역	집행비목	집행액
재판일반경비지원	알면 힘이되는 판례 동영상	일반수용비 (210-01)	38
사법서비스향상	대법원 홍보를 위한 드론촬영 및 영상제작(10), 2021년 국민참여재판 홍보영상 제작(24)		34

자료: 대법원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해서는 안되고, 영상자료 제작은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영상자료 제작이 필요한 경우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용역비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 집행지침]

비목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일반수용비 (210-01)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소송 및 법률자문 비용, 위원회 참석비, 업무용택시 이용요금 등 규정 - 자산취득비, 공사비,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안됨
일반용역비 (210-14)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용,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가. 현 황

등기업무 전산화(정보화) 사업¹⁾은 등기업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법원은 등기업무 전산화(정보화)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446억 6,800만원 중 419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3억 8,200만원은 불용하였다.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²⁾은 등기과·소 건물 유지보수, 노후 등기장비 교체 및 민원실 환경개선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법원은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268억 9,800만원 중 244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5,1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등기업무 전산화(정보화) 사업 및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등기업무 전산화(정보화)	44,668	44,668	0	0	44,668	41,935	351	2,382
공공요금및제세 (210-02)	7,954	7,954	0	0	7,954	6,345	0	1,609
등기업무 운영지원	26,702	26,702	0	196	26,898	24,447	0	2,45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193	3,193	0	323	3,516	3,379	0	13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등기특별회계 1334-305

2) 코드: 등기특별회계 7032-311

나. 분석의견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으로 집행해야 할 세종시 등기전산정보센터 전기요금을 프로그램이 다른 등기업무 전산화(정보화) 사업에서 집행한 이후 일부를 8월 25일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으로 과목정정한 다음 재차 10월 14일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서 전기요금을 집행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은 향후 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법원은 2021년부터 세종시에 운영 중인 등기전산정보센터 전기요금(공공요금및제세)을 6월 18일(1,600만원), 7월 15일(2,800만원), 8월 13일(4,100만원), 10월 14일(3,100만원), 총 4회에 걸쳐 사법정보화운영 프로그램 내 등기업무전산화(정보화) 세부사업에서 집행한 이후 8월 28일, 12월 17일, 12월 21일, 총 3회에 걸쳐 사법행정운영지원 프로그램 내 등기업무 운영지원 세부사업으로 과목정정하였다. 그런데 과목정정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월 15일 집행 건을 8월 28일 과목정정한 이후 10월 14일 10월 청구분 전기요금을 재차 등기업무전산화 사업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배정 및 집행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고금 관리법」 제30조³⁾는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7조⁴⁾는 월별 자금계획서에는 세출예산에 정하는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세항(단위사업)의 구분을 명백히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월별 자금계획 작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적절히 배정되도록 하고, 배정된 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1회계연도 세종시 등기전산정보센터 전기요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3) 「국고금 관리법」 제30조(자금계획)

-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7조(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월별 자금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서: 수입예산에 정하는 관·항·목의 구분
2. 지출계획서: 세출예산에 정하는 장·관·항·세항의 구분

프로 그램	세부 사업	일자	집행내역	집행액	프로 그램	세부 사업	일자	집행내역	집행액
사법 정보화 운영	등기 업무 전산화	6.18	등기전산정보센터 (세종)전기요금(6월)	16	사법 행정 운영 지원	등기 업무 운영 지원	-	-	-
		7.15	등기전산정보센터 (세종)전기요금(7월)	28			-	-	-
		8.13	등기전산정보센터 (세종)전기요금(8월)	41			-	-	-
		8.25	과목정정(등기전산정 보센터(세종) 전기요금(7월))	-28			8.25	좌동	28
		-	-	-			9.9	등기전산정보센터 (세종)전기요금(9월)	41
		10.1 4	등기전산정보센터 (세종)전기요금 (10월)	31			-	-	-
		-	-	-			11.1 7	등기전산정보센터 (세종)전기요금(11월)	32
		-	-	-			12.1 5	등기전산정보센터 (세종)전기요금(12월)	41
		12.1 7	과목정정(등기전산정 보센터(세종) 전기요금(6월))	-16			12.1 7	좌동	16
		12.2 1	과목정정(대법원등기 정보센터(세종) 전기요금, 8월))	-41			12.2 1	좌동	41
		12.2 1	과목정정(대법원등기 정보센터(세종) 전기요금 10월))	-31			12.2 1	좌동	31
합계				0	합계				231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헌법재판소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100만원이며, 9,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를 모두 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1	41	41	96	96	0	0	100.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2021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26억 200만원이며, 이 중 92.8%인 488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 9,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2,602	52,602	52,602	48,801	9	3,792	92.8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한편, 헌법재판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헌법재판소의 자산은 2,105억 3,500만원, 부채는 40억 5,300만원으로 순자산은 2,064억 8,2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4억 7,600만원, 일반유형자산 2,047억 2,400만원, 무형자산 53억 2,9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1억 6,400만원(1.5%)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유형자산의 증가 16억 1,500만원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4억 4,600만원, 장기차입부채 26억 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억 8,300만원(4.4%) 감소하였다. 이는 유동성금융리스부채의 감소 등에 따른 유동부채 6,4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10,535	207,371	3,164	1.5
Ⅰ. 유동자산	476	15	461	3,073.3
Ⅱ. 투자자산	0	0	0	0.0
Ⅲ. 일반유형자산	204,724	203,109	1,615	0.8
Ⅳ. 무형자산	5,329	3,801	1,528	40.2
Ⅴ. 기타비유동자산	6	446	△440	△98.7
부 채	4,053	4,236	△183	△4.4
Ⅰ. 유동부채	1,446	1,510	△64	△4.2
Ⅱ. 장기차입부채	2,607	2,726	△119	△4.4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206,482	203,135	3,347	1.6
Ⅰ. 기본순자산	93,090	93,090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3,168	16,123	△19,291	△119.6
Ⅲ. 순자산 조정	116,560	93,921	22,639	24.1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21년도 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는 726억 1,800만원이다. 비용은 프로그램순원가 727억 1,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9,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24억 6,800만원(44.8%) 증가한 726억 1,8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225억 5,100만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	72,715	50,164	22,551	45.0
II. 관리운영비	0	0	0	0.0
III. 비배분비용	0	0	0	0.0
IV. 비배분수익	96	14	82	585.7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72,618	50,150	22,468	44.8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72,618	50,150	22,468	44.8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2021년도 기초순자산은 2,031억 3,5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064억 8,200만원으로 기초 대비 33억 4,700만원(1.6%) 증가하였는데, 이는 토지 재평가로 인한 조정항목 226억 3,800만원에 주로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203,135	192,049	11,086	5.8
II. 재정운영결과	72,618	50,150	22,468	44.8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3,327	61,266	△7,939	△13.0
IV. 조정항목	22,638	△30	22,668	75,560.0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206,482	203,135	3,347	1.6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인건비 ② 본부기본경비, ③ 본부운영지원, ④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⑤ 해외연수, ⑥ 국제교류 사업이 있다.

인건비는 3억원이 감액(315억 8,000만원 → 312억 8,000만원)되었고, 본부기본경비는 국외업무여비 등에서 2,000만원(56억 6,200만원 → 56억 4,200만원), 본부운영지원은 헌법재판소 전시관 운영 사업 등에서 1,800만원(41억 1,100만원 → 40억 9,300만원),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은 헌법재판연구활동 사업 등에서 700만원(18억 7,000만원 → 18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다.

그리고 해외연수는 실무공무원 단기 국외훈련 사업에서 1,700만원(5억 3,900만원 → 5억 2,200만원), 국제교류에서는 베니스위원회 참석 사업 등에서 2,700만원(5억 8,100만원 → 5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다.

헌법재판소는 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②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행정서비스 제고, ③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제도·업무인프라 개선, ④ 국제협력 내실화 등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 처리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목표치를 전년 대비 하향하여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성과지표 측정방식에서 과거 미처리 사건에 대한 처리실적을 제외하고 있는데 정확한 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서는 과거 미처리 사건에 대한 처리실적도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성과지표 도전성과 타당성 확보 노력 필요

가. 현 황

헌법재판소 예산은 헌법재판소운영 프로그램¹⁾ 1개로만 구성되고, 동 프로그램은 8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운영 프로그램의 2021년도 예산현액 526억 200만원 중 488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7억 9,2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헌법재판소운영 프로그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헌법재판소운영	52,602	52,602	0	±21	52,602	48,801	9	3,792
인건비	31,280	31,280	0	0	31,280	29,167	0	2,113
본부기본경비	5,642	5,642	0	△21	5,621	4,962	0	659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710	710	0	21	731	673	0	58
국선대리인보수등	127	127	0	0	127	106	0	21
재판활동운영지원	586	586	0	0	586	544	9	33
본부운영지원	4,093	4,093	0	0	4,093	3,720	0	373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863	1,863	0	0	1,863	1,819	0	44
해외연수	522	522	0	0	522	455	0	67
국제교류	554	554	0	0	554	297	0	257
재판자료확충	416	416	0	0	416	357	0	59
헌법재판정보화 (정보화)	6,498	6,498	0	0	6,498	6,421	0	77
전자도서관운영 (정보화)	286	286	0	0	286	280	0	6
헌법재판소예비금	25	25	0	0	25	0	0	2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000

나. 분석의견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 처리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목표치를 전년 대비 하향하여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성과지표 측정방식에서 과거 미처리 사건에 대한 처리실적을 제외하고 있는데 정확한 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서는 과거 미처리 사건에 대한 처리실적도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부터 헌법재판소운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를 심판사건처리율(처리사건/접수사건×100) 1개로만 설정²⁾하여 사업 성과 달성도를 측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성과지표인 심판사건 처리율 목표치를 2020년 100.0%에서 2021년 95.0%, 2022년 94.0%로 매년 하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부터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당해연도 처리사건/(누적 미제 사건+당해연도 접수사건)}에서 누적 미제사건을 뺀 (당해연도 처리사건/당해연도 접수사건)으로 변경하였는데 헌법재판소운영 프로그램의 정확한 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서는 누적 미제사건에 대한 처리실적도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헌법재판소운영 프로그램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현황]

(단위: %)

성과지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심판사건 처리율	목표	72.8	100.0	95.0	94.0	최근 4년간(2017~2020) 평균 심판사건처리율인 95% 이상을 처리하는 것으로 설정	처리사건/ 접수사건 × 100
	실적	69.4	93.9	92.7	-		
	달성도	95.3	93.9	97.6	-		

주: 2020년부터 측정산식 변경

자료: 헌법재판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성과목표 하향과 관련하여 대폭 증가한 접수 건수를 감안하여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해 최근 몇 년 간의 평균 심판사건 처리율을 목표치로 설정하였다는 입장이고, 성과지표 측정방식과 관련하여 기존산식은 과거 연도 미처리 사건을 당해연도 접수사건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각 해당연도의 접수사건 대비 처리사건 실적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변경하였다고

2) 2021년까지는 심판사건처리율, 정보시스템 활용 만족도(정보화) 등 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설명한다.

정부에서 제출한 성과계획서(총괄편)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수준의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 그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운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 과거 평균치를 목표치로 설정하기 보다는 도전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중기적으로는 과거 미처리 사건에 대한 성과지표의 설정을 검토하여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2년 8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061-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471-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